특집

오래된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잊혀질 권리'

❶ 오래된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피해 현황
❷ 정보의 웰다잉을 향한 시도: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국제 동향
❸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시론적 고찰

PAC

오래된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피해 현황[1)]

구본권
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부장대우)
한양대 언론학 박사과정 수료

Ⅰ. 들어가는 말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정보화 기술이 진전됨에 따라 편리함 못지않게 과거에 문제되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언론 피해가 생겨나고 있다. 오래된 기사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손쉽게 찾아지고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현상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수십 년 전의 신문 기사 등 과거에는 찾기 힘든 정보가 순식간에 찾아지면서 정보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도와 대중의 관심도에 따라 서서히 개인과 사회의 집단적 기억 속에서 잊혀져갔던 언론의 보도가 좀처럼 망각되지 않고 있다.

인간 기억의 한계와 관심의 부단한 변화에 따라서 한 번 보도된 기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심과 기억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하지만 인터넷은 한 번 보도된 기사의 유효 기간과 도달 범위를 '무한대' 로 만들었다. 누구나 손쉽게 아무 때나 과거의 기사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재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은 검색 한 번으로 어디 있는지 알 길 없던 정보를 손쉽게 찾아주지만, 감추고 싶은 일도 단번에 끄집어내는 '마법의 도구' 다. 웹 검색의 기능은 갈수록 강력해져 키워드 하나로 찾아낼 수 있는 정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편리하고 강력해진 인터넷의 정보 검색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그 효력이 사라지고 감소되던 언론 보도기사의 유통 체계와 영향력의 구조를 변화시켰다. 이런 변화는 기사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과 유통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에 만들어진 신문과 방송 등 보도매체의 기사로 인한 피해 구제와 반론권 보장 등에 관한 법적 수단과 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현재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업체에 접수되는 과거 기사로 인한 피해 유형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와 기준 등을 사례를 기반으로 다루고,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1) 본 논문은 2007년 9월 11일 필자가 발표한 한국언론재단 주최의 '묵은 기사 인터넷 유통과 언론피해 구제 방안' 의 "인터넷상 과거 기사로 인한 언론 피해 현상과 대책"(구본권)을 기초로 하고, 2008년 〈한국방송학보〉 제22-3호에 실린 "인터넷상의 지속적 기사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 : '잊혀질 권리'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재진 · 구본권)에서 다룬 내용을 기반으로 했음을 밝힌다. 과거 기사의 인터넷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다루는 주제의 특성상 논문에서 인터넷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과거 기사가 사례로 제시돼, 일부 개인적 정보가 드러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현존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적 차원의 접근으로 이해되기 바란다.

Ⅱ. 과거 기사의 유통 실태와 피해 현상

1. 과거 기사 유통으로 인한 피해 구제 요청[2]

보도될 당시에 문제가 없던 사실에 기반한 기사이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인터넷으로 기사가 검색되고 유통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례 1] 포털에서 내 이름을 검색했더니, 오래 전에 저지른 절도 범죄 기사가 검색됐다. 자녀가 커서 인터넷에서 내 이름을 검색할 때 이를 알게 될까 봐 걱정돼 불안에 떨고 있다. 다 처벌받고 끝난 일인데, 제발 삭제해 달라. (ㅇ씨)

[사례 2] 군에서 아들이 자살했는데, 신문에 '군대에서 의문의 죽음' 기사가 실렸다. 아들 이름이 익명으로 실렸지만, 기사를 볼 때마다 아픈 기억이 되살아난다. 기사를 없애 달라. (ㅂ씨)

[사례 3] 2002년 다단계회사의 불법판매와 관련해 구속되었다가 풀려났는데 내 이름을 검색하면 그때 기사가 계속 검색되어서, 가수 활동에 지장이 많다. 기사를 빼줄 수 없는가. (ㅇ씨)

[사례 4] 간통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여성탤런트다.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고소인의 소 취하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관련 기사를 삭제해 달라. (ㄱ씨)

[사례 5] 가수 OOO다.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여러 해 전 간통과 폭행으로 구속돼 처벌받은 적이 있다. 사춘기의 자녀들이 상처를 입을까 걱정되니, 관련 기사를 삭제해 달라. (ㅈ씨)

[사례 6] 우리 회사가 상품 판매 포장을 잘못 표기해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를 경쟁업체가 마케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업활동에 지장이 많고 오래전 일인데 삭제해 줄 수 없나. (ㅈ씨)

과거 기사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는 요구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손쉽게 접근가능해지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국내에서는 1995년께부터 주요 신문사들이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인터넷으로 뉴스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신문이나 방송이 아닌 인터넷으로만 보도하는 '인터넷 언론' 도 다수다.[3]

2. 과거기사의 디지털화 및 인터넷 유통 상황

주요 신문사의 기사가 인터넷으로 서비스되기 시작한 시점인 1995년 이후의 기사만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게 아니다. 정보화 진전에 따라서 그동안 아날로그 형태로만 존재했던 각종 데이터베이스가 지속적으로 디지털 포맷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갈수록 개선되는 인터넷 검색엔진은 점점 더 많은 정보를 필요에 맞게 찾아준다.

과거 기사의 데이터베이스화는 크게 3가지 형태로 진행되어 온라인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공익 목적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이나 국사편찬위원회가 사료 보존 및 접근 차원에서 구축한 과거 신문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각 신문사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 검색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 포털이 구축한 과거 기사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3가지 데이터베이스는 수록한 신문의 종류와 발행 시기, 검색 방법, 접근성과 유무료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

2) 이 사례들은 '묵은 기사 인터넷 유통과 언론피해 구제 방안' 토론회 발표 내용에 소개된 내용들이다.

3) 1995년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이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다.

"보도될 당시에 문제가 없던 사실에 기반한 기사이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인터넷으로 기사가 검색되고 유통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다."

(1) 공익 목적의 과거 기사 데이터베이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사편찬위원회와 함께 과거에 발행된 주요 신문 대부분을 디지털 포맷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4]

1896년 발간이 시작된 〈독립신문〉을 비롯해 1963년 종간된 〈국민보〉에 이르기까지 현재는 더 이상 발간되지 않고 있는 26개 신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누구나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옛날 신문을 디지털화한 방식에 따라서 검색 편의는 차이가 있다. 황성신문, 협성회회보, 매일신문은 기사 본문 검색이 가능하고,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매일신보는 색인(키워드)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그 밖의 신문들은 국사편찬위원회가 구축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인 한국역사정보 통합시스템에 포함된 정보로 본문 검색이나 키워드 검색이 불가능하다. 날짜별로 신문을 검색해 제목을 검색할 수 있으며, 기사 본문에 접근하려면 제목을 통해 기사를 찾은 뒤 PDF 파일을 열어서 열람해야 한다.

미디어가온은 1960년대부터 1989년까지 발간된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의 기사를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당시의 기사는 날짜별 신문지면(PDF 파일) 형태로만 서비스되고 있으며, 검색에 제한이 있다. 날짜별 찾아가기를 통해서 해당 신문의 지면을 일일이 열어서 접근할 수 있지만, 제목이나 본문, 키워드를 통한 검색은 불가능하다.

각 신문사의 제작 공정이 전산화되면서 기사 정보가 디지털 파일로 저장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의 기사들은 본문, 제목, 작성자, 주제별 등 다양한 형태로 검색이 가능하다. 제공되는 매체도 종합일간지에서 지역신문, 경제지 등의 전문지를 포함하며 범위가 크게 늘었다. 미디어가온은 1990년 이후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이 방식으로 2011년 5월 28일 현재 64개 매체의 2109만 2759건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5]

하지만 미디어가온 과거 기사 검색서비스로 모든 과거의 기사가 한 곳에서 검색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신문사들이 과거 기사를 공공 기사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기를 거부할 경우, 해당 신문사의 기사는 제공되지 않는다.

(2) 언론사 자체 구축 데이터베이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 검색서비스에 자사 기사를 제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이들 신문사는 특정 시점 이전의 기사에 대한 검색과 열람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과금 형태는 시간별, 건별로 이루어진다.[6]

조선일보는 발간 시기에 따라서 과거 기사가 제공

4)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 검색 서비스인 미디어가온(www.mediagaon.or.kr)에서는 과거 신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제공 : 독립신문(영문판 포함), 협성회회보, 매일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매일신보
* 한국역사정보 통합시스템 제공(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 대공보, 공립신보, 해조신문, 대동공보, 신한민보, 신한국보, 대한민보, 권업신문, 국민보, 독립신문_상해, 시대일보, 선봉, 단산시보, 중외일보, 태평양주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 한민, 북미시보

5) 2011년 5월 28일 현재 미디어가온 홈페이지 공지사항

6) 조선일보 기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
중앙일보 PDF 페이지 http://pdf.joinsmsn.com/joongang/

되는 방식에 차이가 난다. 1920년부터 1940년까지는 기사의 텍스트만 제공되는 방식이며, 1945년부터 1989년까지는 PDF 형태로 서비스된다. 1990년 이후 현재까지 발간된 신문은 텍스트와 PDF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서비스가 된다. 중앙일보는 1965년 발행분부터 PDF 형태로 날짜별, 기사 제목과 본문별로 검색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3) 포털의 옛날 신문 서비스

NHN이 운영하는 검색포털 네이버가 운영하는 과거 신문 보기 서비스인 뉴스 라이브러리는 여느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사용과 검색이 편리한 게 특징이다.[7] 2009년 4월 30일부터 서비스되기 시작한 네이버 옛날 신문 보기는 1920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동아일보를 비롯해 경향신문(1946년 창간)과 매일경제신문(1966년 창간)에 대해 1999년까지 80년 치의 신문 전체 분량을 제공한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PDF 지면 형태와 더불어 한자가 한글로 변환되어서 텍스트로도 서비스된다. 한 개 면 단위로 디지털화가 이뤄진 PDF 포맷이 아니라, 글자 한자 한자마다 고유값을 지닌 XML 포맷으로 디지털화가 이뤄져 다양한 형태로 검색과 가공이 편리한 게 특징이다. 특히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는 하루 방문자가 1700만여 명인 네이버 사이트에서 검색 결과 안에 포함되어 노출되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베이스들과 비교할 수 없이 편리한 접근성과 파급력을 지닌다.[8]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포털 서비스 검색 결과에 포함됨으로써, 특정 신문사나 언론진흥재단의 신문 통합 검색서비스를 방문하지 않고도 과거 기사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 뿐 아니라, 구글, 네이버 등 포털의 검색엔진은 신문사의 과거 기사는 물론, 오래된 기사를 옮겨놓은 블로그와 같은 사용자의 개인적 공간에 있는 기사도 손쉽게 검색해준다. 사용자의 개인적 공간에 있는 과거 기사는 포털이나 언론사에 삭제나 수정을 요청해도 거의 반영되기 힘든 특성이 있다.

Ⅲ. 과거 기사 유통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

디지털화가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뉴스는 매스미디어라는 광범한 전파력이 있었지만 그 영향력이 주로 보도 시점에 국한되었다. 대부분의 기사는 보도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애초의 기사에 접근하기도 어려웠고, 세월과 더불어 아날로그 형태의 신문이나 스크랩도 훼손되거나 망실되어갔다. 마이크로필름이나 영인본 형태로 만들어져 별도로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지나간 기사에 대한 접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언론사에 보고된 과거기사 삭제 요청 사례들을 통해 나타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과거기사로 인한 피해의 유형을 정리해본다.

1. 과거 기사 유통 환경의 변화

인터넷은 보도된 기사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없애버림으로써, 아무리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기사라 하더라도 그 유통 기한과 범위를 무한대로 확

7)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dna.naver.com

8)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고엽제' 라는 단어를 입력해 검색할 경우, 통합검색 카테고리에서 뉴스 라이브러리는 고엽제가 1967년 5월 4일 경향신문 4면에서 처음 국내에 보도되었음을 알려준다. 검색된 경향신문 기사 제목은 "北爆擴大(북폭확대)에 맞서 越南北部(월남북부) 地上戰(지상전) 격화" 이다.

"언론 보도 기사가 작성될 당시에 고려되었던 기사의 잠재적 도달 범위가 인터넷 환경에서 무한대로 확대됨으로 인해, 기사에서 언급된 당사자나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나 전혀 고려하지 못한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대시켰다. 전통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에서의 보도는 특정한 지역과 시간의 수용자에게 전달될 것을 염두에 두고 생산되어 왔다. 대학신문이나 군 단위의 신문은 해당 지역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면에 보도된 것이라 해도 그 지역 밖의 사람들도 관심을 둘 만한 중요하거나 흥미로운 일이 아니면 해당 매체의 통상적인 전달 범위를 넘어서서 유통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리 한정된 지역의 독자를 대상으로 발간되는 신문이라 할지라도 일단 인터넷에 올라가는 순간 전세계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도달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

인터넷 보급 초창기이던 1990년대에는 전국 단위의 종합일간지 등 정도만이 인터넷 서비스에 나설 정도로 신문 기사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은 얼마간 투자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비용이 낮아지고 자동화된 프로그램들이 많아져 아무리 소규모 매체라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다.

검색엔진 또한 점점 성능이 개선되어감에 따라 과거 기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10여년 전에는 찾아내지 못했던 과거 기사도 검색엔진 성능 개선에 따라 검색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는 주로 디지털화된 기사 본문만을 검색엔진이 찾아오지만, 일부 개선된 검색엔진은 PDF로 작성된 문서의 본문까지도 검색해낼 수 있으며 이러한 성능 개선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파일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던 오래된 기사 역시 인터넷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디지털 변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네이버의 뉴스라이브러리는 1920년부터 1999년까지 3개 신문의 지면을 모두 디지털로 변환했으며 2011년 안으로 한겨레신문의 기사도 추가할 계획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국사편찬위원회가 구축한 종간된 신문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보듯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사가 잊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된 시점의 인쇄물까지 검색엔진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언론사에 접수되는 오래된 기사의 검색 노출 관련 피해 호소 중 가장 흔한 사례들은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에 관련된 것들이다. 특히, 언론 보도 기사가 작성될 당시에 고려되었던 기사의 잠재적 도달 범위가 인터넷 환경에서 무한대로 확대됨으로 인해, 기사에서 언급된 당사자나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나 전혀 고려하지 못한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2. 보도 기준이 다른 과거 기사의 현재적 유통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는 불변적 형태를 띠고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기사의 대상과 형식이 달라진다. 문제는 과거의 기준으로 작성된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서 현재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적법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사라진 과거의 기사, 현재의 기준으로 보자면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적인 기사가 부적절하게 현재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손쉽게 검색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과거 기사의 사례[9]다.

9) 본고에서 인용한 사례는 인격권 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과 가주소로 변경하였다.

[사례 7] 일가족 식중독 둘 죽고 둘 중태 [동아일보, 1963년 5월 16일 7면]

[부산발] 지난 15일 0시반쯤 이곳 부산진구 부전 1동 810 정영훈(63)씨 집에 세들어 사는 김형준(34)씨 가족 4명이 식중독으로 장남 세환(6)군과 장녀 세영(8)양은 절명. 김씨와 부인 조현정(30)씨는 부산의대병원에 입원 가료중이나 16일 상오 현재 생명이 위독하다. 김씨는 부인 조씨의 생일날(지난 14일) 저녁 범일동 시장에서 생선 물곰 한 마리를 사서 국을 끓여먹고 중독되었다.

[사례 8] '가전제품 상습절도' [한국일보, 1991년 1월 13일 22면]

서울시경 특수대는 12일 김성환씨(35 · 전과4범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826) 등 2명을 상습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영길씨(26)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7일 상오 10시께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576 강민기씨(30) 집의 잠긴 문을 절단기로 끊고 들어가 안방에 있던 VTR 1대를 훔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8백여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훔친 혐의다.

[사례 7]은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무작위로 특정일(1963년 5월 16일)의 한 신문 사회면을 조회한 결과이고, [사례 8]은 한국진흥언론재단 기사데이터베이스 미디어가온에서 '절도&구속'으로 검색한 결과 표출된 수많은 기사 중 특정일(1991년 1월 13일)의 한 기사다. 50여 년 전 기사나 20여 년 전 기사나 보도 대상의 개인정보 노출에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예로 든 두 기사는 전 과거 신문기사의 사생활 침해 수준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1963년의 단순 식중독 사고 기사에서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가족 전원의 실명과 나이, 주소와 거주 형태까지 드러나 있다. 사고와 전혀 관계가 없는 집주인의 실명과 나이, 주소까지 노출돼 있다. 1991년의 단순 절도 기사도 비슷한 수준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다. 피의자의 실명과 나이, 거주지 및 전과 누범사실을 비롯해 피해자의 실명과 주소, 나이까지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이런 기사에 접근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용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두 사이트 모두 로그인 절차 없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위의 사례와 같은 개인정보 노출이 특정 신문, 특정 사안에만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다. 이런 보도 관행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이르는 동안 법원의 잇단 판례를 통해서 범죄 보도에 관한 익명화의 기준이 확립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10] 이런 관행은 1999년 1월 대법원이 이른바 '산업스파이 오보 사건' 판결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 관행이 개선되고 사건 당사자의 실명 보도에 관한 기준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11]

이후 범죄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익명과 실명 보도 기준에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잣대로 한 새로운 기준이 도입돼 운영됐다. 공인이 아니거나 공공성의 사안이 높지 않은 사건, 사고, 판결을 보도할 때 언론은 익명 보도를 통해 사건이나 판결의 구체적 내용이 아닌 이 사건과 판결이 갖는 공공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만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의 보편화로 인해 이런 잣대가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수많은 기사들이 인터넷에 노출되고 검색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3. 과거 기사 수정의 현실적 문제

10) 대법원 1998년 7월 14일 판결 96다17257 판결 요지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해 반드시 범인이나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 범인이나 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공공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2000년 10월 11일 판결 2000가합4673 판결 요지 "피의자의 실명이나 신상정보와 같은 개인적 사항을 노출시킨 경우에는 이를 밝히는 게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있어 지대한 정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익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1) 이재진 (2006). 언론보도와 인격권. 서울: 한나래.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손쉽게 검색되는 한 유명가수와 관련된 기사는 현재의 과거 기사 검색 서비스가 갖고 있는 문제를 복합적으로 보여준다.[12]

[사례 9] 가수 진성훈 피소 간통혐의로 [경향신문, 1975년 1월 29일 7면]

서울서부서는 29일 모건설회사 사장부인 김**씨(47 서울 **********)와 74년도 모방송국 신인가수상을 받은 가수 진성훈씨(본명 조종훈 21)를 간통혐의로 구속했다.

김 여인은 2남2녀의 어머니로 지난 74년 5월부터 지난 27일 사이 10여 차례 자기보다 26살이나 나이가 적은 조씨와 놀아났는데 돈이 많은 김 여인은 조씨와 만날 때마다 80만~100만원씩의 용돈을 주기도 했다는 것.

이 사건 기사는 네이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3개 신문(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에 모두 실려 있다. 하지만, 언론사에 따라서 기사의 서비스 상태가 다르다. 경향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서는 [사례 9]와 같이 해당 사건 관련자의 실명과 주소가 지워진 채 서비스되고 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기사들에서 두 신문과 달리, 사건 당사자의 실명과 주소를 지우지 않은 채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이 기사는 2011년 초만 해도 기사가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 서비스되었으나, 이후 관련자의 요청에 따라서 두 신문사에서 실명과 주소를 가리게 되었다. 기사 관련자가 네이버에 대해 기사에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해 네이버가 3곳 신문사에 이를 전달했지만, 2곳의 신문은 이를 수용한 반면 1곳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사건 당사자의 이름이 2명 나오는데, 1명은 실명이 가려졌지만 다른 1명은 그대로 노출된다. 동일한 사안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이지만 피해 구제 요청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은 실명과 주소가 가려졌고, 그렇지 않은 관련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다.

경향신문과 매일경제신문은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사에서 개인정보를 지웠지만, 이를 지우기 전의 결과를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 등 개인적 인터넷 공간에 옮겨놓은 경우가 많아 이 기사에서 다뤄진 단어를 검색할 경우 개인정보를 지우기 전의 기사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Ⅳ. 과거 기사 수정

동일한 기사에 대한 피해 호소가 이처럼 언론사마다 다르게 처리되는 것은 이에 관한 법률이나 언론 내부의 합의가 전혀 없는 데서 비롯한다. 이에 관한 자체적 기준을 설정한 일부 언론사도 있지만, 이 역시 구속력을 지닌 수준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이 기준을 광범하고 철저하게 적용하기도 힘들고, 시대적 상황,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 사안에 대해 고유의 잣대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1. 언론사별 과거 기사 수정 기준

현재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나 언론진흥재단의 옛날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과거 기사가 수정, 삭제되는 경우에 있어 이를 서비스하는 네이버나 언론진흥재단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없다. 해당 기사를 보도하고 그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언론사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른다.[13]

12) 이 기사는 로그인 없이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해당 날짜나 본문 안의 단어를 입력하면 나타나는 결과이며, 본고에서는 유명가수의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13) 네이버 및 언론진흥재단 담당자 인터뷰

네이버는 뉴스라이브러리를 위해 지면 스캐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화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경우만을 삭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과거 신문 그대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기사와 관련한 삭제,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언론사에 전달해 언론사의 결정에 따라 서비스한다. 동일한 기사에 대해서도 언론사별로 기준이 다르면, 뉴스라이브러리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구조다. 언론진흥재단도 마찬가지 방침을 갖고 있으나, 언론진흥재단이 서비스하고 있는 종간된 옛날 신문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관련된 기사 수정, 삭제 요구가 접수된 바 없다고 이 재단의 관계자는 밝혔다.[14] 현재 과거 기사로 인한 수정, 삭제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한 법률이 없고 이로 인한 소송도 발생한 바 없기 때문에 언론계의 논의 자체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면을 통해 소개해온 한겨레신문이 공개적으로 이에 관한 잣대를 밝히기도 했다.[15] 시민편집인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겨레신문의 독자권익위원회는 2006년 3월 31일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 "당사자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임의로 신문기사가 수정·삭제되어서는 안된다.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역사의 기록물로서 신문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 실행하라"고 한겨레 편집국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겨레 편집국은 △최종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경우 △무혐의가 밝혀진 경우 △오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에 당사자의 요청과 증빙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기사를 수정·삭제하기로 정했다고 지면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동일한 기사에 대한 피해 호소가 이처럼 언론사마다 다르게 처리되는 것은 이에 관한 법률이나 언론 내부의 합의가 전혀 없는 데서 비롯한다. 이에 관한 자체적 기준을 설정한 일부 언론사도 있지만, 이 역시 구속력을 지닌 수준은 아니다."

1920년도에 발행된 옛날 신문을 서비스하고 있는 동아일보도 과거 기사의 수정·삭제와 관련한 내부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16]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나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기사를 작성한 기자나 유관 부서가 그 요청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를 기록해 내부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기사 삭제 요청과 처리 사유 등 결재의 과정은 전자기록 형태로 보존돼 편집국 구성원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형태로 유지된다. 동아일보는 과거 기사의 수정이나 삭제에 대한 특정한 기준을 만들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각 기사마다 고유한 특성 때문에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고, 대신 그 과정이 가능한 한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보 등 과거의 기사를 수정하게 될 경우에도 최대한 원본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보로 드러나 기사를 고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애초의 오보 기사를 삭제하거나 덮어씌우는 형태로 기사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기사를 남겨두고 그

14) 언론진흥재단이 서비스하고 있는 옛날 신문이 수십 년 전에 종간된 이유로 기사와 관련한 이해당사자가 생존해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네이버의 뉴스라이브러리와 달리 포털을 통해서 손쉽게 접근되는 구조가 아니라, 재단의 검색 화면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어 일반인의 접근성이 낮은 점도 배경으로 추정된다. PDF 지면의 글자 하나하나가 고유 좌표값을 지닌 XML로 구성된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와 달리, 통째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진 언론진흥재단의 옛날신문은 특정 기사나 글자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다.

15) 〈한겨레신문〉 2006년 4월 4일자 30면 칼럼 '편집국에서 독자에게', 〈한겨레신문〉 2007년 6월 4일 1면 "디지털시대 또 다른 그늘 지워지지 않는 기록들", 5면 "아들이 커서 인터넷에서 보면 어떡해요"

16) 동아일보 관계자와의 인터뷰.

아래에 수정된 내용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는 게 동아일보의 과거 기사 수정 원칙이다.

2. 과거 기사 수정 요구와 논리

인터넷을 통해 과거 기사가 유통되어 심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삭제와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사가 보도될 당시엔 오늘날과 같이 기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무한대로 전파될 수 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누구나 곧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실명과 주소 등 상세한 개인정보가 보도되던 관행 역시 달라져 더 이상 현재의 보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이를 따르지 않은 과거 기사가 인터넷에서 유통될 경우 개인적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게 피해호소 쪽의 요청이다.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기사가 더 이상 공적인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기사에서 다뤄진 대상만 인터넷을 통해 지나친 프라이버시 침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수정하는 게 적합하다는 주장도 있다.

형법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법적 처벌을 마치거나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재판의 실효와 복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은 전과자도 정상적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입법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17] 사면과 복권이 이뤄진 과거의 범죄나 처벌 사실은 각종 국가 기록에서 이를 삭제하고, 국가기관도 이런 과거 기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18] 사면과 복권을 통해서 과거의 범죄 기록을 삭제하더라도 인터넷에서는 과거의 수사와 재판 기사가 검색되어 나타난다. 인터넷으로 인해, 사면과 복권도 과거에 비해 제한적 효과만을 거둘 수 있게 됐다.

또한 우리 헌법은 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벌을 받았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19] 법률에 의한 이중처벌 금지가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한 번의 실수나 범죄가 지워지지 않고 거듭해서 사회적 처벌을 받는 경우도 인터넷에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오래 전 기사나 정보가 검색되고 당사자나 주변인들이 올린 다양한 정보와 결합해서 개인에 대한 치밀한 프로파일이 만들어지는 이른바 '신상털기'가 일어나는 현실이고 이는 인기와 평판에 민감한 연예인이나 청소년 등을 자살과 같은 극단적 결정에 이르게도 한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컴퓨팅 단말기의 보급이 늘어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인해서 인터넷 정보의 전파 속도와 범위가 커져 그 영향력도 증가했다. 각 기업들이 입사나 채용에 앞서 대상자에 관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는 것은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판 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20]

헌법이나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춰보고, 인터넷 정보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환경에서 오래 전 기사에 과도하게 노출된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수정해달라는 요구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론사의 처지에서는 처리가 쉽지 않다.

---

1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전과기록과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18)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10조는 범죄 경력과 수사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누설하지 않도록 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9)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이중처벌 금지를 밝혀놓았다.

20) 〈한겨레신문〉 2010년 8월 20일 기사 "직원 뽑을 때 '과거 엿보기' 일쑤"

3. 과거 기사 수정에 대한 언론사 논리

보도에 관련된 당사자의 요청만이 아니라, 사생활의 보호를 밝힌 헌법 정신이나 형 실효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의 입법 목적 등을 감안하면 언론사가 과거 기사로 인한 피해 호소에 대한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서는 것이 요구되지만, 언론사가 부닥친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언론사가 과거 기사 수정이나 삭제에 부정적인 것은 신문이 그 자체로 역사의 기록이라는 특성과 관련이 깊다. 대량으로 발행 배포되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친 신문 기사를 추후에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잡한 문제로 이어진다.

개인들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가 노출된 문제보다 한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쉬운 문제로 보이는 '명백한 오보' 를 예로 들어, 과거 기사에 대한 수정이 가져오는 문제를 살펴보자.

1986년 11월 16일 조선일보는 1면에 4단 기사로 '김일성 암살설' 을 보도하는 등 일부 신문은 호외까지 내면서 오보 경쟁을 벌였다. 2011년 5월 20일에도 연합뉴스가 '북한 김정은 단독 방중' 오보를 해, 서울발 뉴스로 전세계에 오보가 타전되는 사례가 있었다. 제한된 정보 속에서 속보 경쟁을 하는 언론에서 중요하게 보도한 기사가 오보로 밝혀지는 경우는 드문 사례가 아니다.

인터넷에서 대형 오보를 낸 이후의 처리 상황은 과거 기사 삭제 처리와 관련해 주요한 참고 사례가 된다. 문화일보는 2001년 5월 20일 1면 5단 머릿기사로 '북 김정은 오전 전격 방중'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이는 오보로 밝혀지고 김정일 방중이었음이 드러났다. 문화일보는 오보로 밝혀지자 이 기사를 인터넷에서 삭제했다. 포털이나 검색엔진에서 해당 기사를 검색하면 문화일보의 기사가 검색되지만, "언론사 요청으로 삭제되었다"라는 알림이 나타난다. 문화일보 사이트에서는 삭제해서 검색되지 않지만, 구글 검색의 '저장된 페이지' 나 이 기사를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옮겨놓은 페이지에서는 과거의 오보가 그대로 나타난다. 또한 문화일보 사이트에서도 지면보기 PDF 서비스를 선택하면 5월 20일치 1면 기사를 볼 수 있다. PDF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할 경우, 해당일의 지면이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신문사가 인터넷 기사는 삭제했지만, 지면의 형태로는 남겨둔 것이다. 오보에 대한 처리 방법에서 다른 신문들도 비슷하다. 인터넷 기사는 수정하거나 삭제하지만, 해당일에 지면으로 발간된 내용을 손대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

신문사 스스로 명백한 오보를 한 경우에도 이를 삭제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보도될 당시 문제가 없는 사실보도인 것을 추후에 당사자의 기사 수정 · 삭제 요청을 수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관행상 수용되기 어렵다. 특히 인쇄매체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일단 발행되면 수정되거나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인터넷에서라도 지면의 추후 수정은 어려운 문제다. 지면으로 발행된 기사를 추후에 누군가의 요청이나 사정에 의해서 변경 또는 삭제하기 시작할 경우 언론 전체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매우 크다.

"오보도 역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대형 오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문에서 삭제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과 성격에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앞서의 1986년 김일성 오보 사건의 경우, 이 보도로 인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함부로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역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보도로 영향을 받은 주식시장을 비롯해 연관된 수많은 사회 현상에 대해 오보가 없었던 것처럼 손을 댈 수도 없다.

[사례 9]는 과거 기사 수정 · 삭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한 눈에 보여준다. 앞서의 다른 사례들과 달리 기사의 일부분이 가려진 이 사례는 과거 기사 삭제의 대상과 범위, 기준, 요청 주체, 기록의 보존, 실효성 등에 관

"신문사 스스로 명백한 오보를 한 경우에도 이를 삭제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보도될 당시 문제가 없는 사실 보도인 것을 추후에 당사자의 기사 수정 · 삭제 요청을 수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관행상 수용되기 어렵다."

해 다양한 논점을 만들어낸다.

이해관계자나 보도 대상자 여럿이 관련되어 있는 기사에서 요청을 기준으로 삭제할 경우 이는 권력이나 자본을 보유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소지가 높다. 신문사들이 과거 기사에 대해 특정 조건 아래에서 삭제나 수정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할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물적, 지적 자원을 보유한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사람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되자 외국에서는 이를 조사해 삭제를 대행해주는 유료 서비스가 이미 등장한 상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한 임시조처 요청이 주로 기업과 정치인 등에 의해 활용돼 이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인터넷 글을 감추는 수단으로 쓰이는 현실과 유사하게 될 수 있다.[21]

[사례 9]에서 보듯 쌍방이 관련된 기사에서 한쪽은 다양한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는 데 비해 기사 수정을 요청한 쪽의 정보는 가려져 있다. 관련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거 기사를 수정할 경우 생겨나는 문제다.

실명과 거주지 노출 등 기사에서 밝히는 보도 대상자의 개인적 정보와 관련된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도 논란을 부르는 문제다. 앞선 사례들은 현재 시점과 보도 기준에서 보자면 기사가 갖는 공적 의미에 비해 개인적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된 사례이지만, 보도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기사들이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합의 잣대를 과거에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1970년대 유신헌법 시절이나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시절에 수사당국이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해 덮어씌운 반란 및 반국가 범죄 혐의는 훗날 조작과 허위로 밝혀졌다. 그렇다고 현재의 잣대로 과거에 반국가 범죄 모의자로 다뤄진 기사를 수정해 오늘날의 잣대인 민주화운동으로 고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동성애나 간통 등 사회적 합의로 인해 법률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 특정 시점에 문제가 되어서 기사화된 것을 현재 시점의 잣대로 수정할 수 없는 문제다.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나 수정 요청은 오보나 개인정보의 노출에 국한된 게 아니다. 사건 사고 기사만이 아니라, 신문이나 잡지에는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결혼과 결별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다룬 기사가 실린다. 유명인이 적극적으로 노출한 사생활과 스스로 노출을 꺼리는 사생활에 대해서 미디어가 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 기사화 여부, 또는 기사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22]

미디어에 긍정적으로 노출되어 광고나 사업 등 언론을 통한 홍보 효과를 누렸던 사람이 자신이 부정적으로 다뤄진 기사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수용되지 않는 요구이지만, 일부 매체에서는 광고 등 대가를 매개로 수용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오보를 포함한 날마다의 기사는 모두 당시의 소중한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개인들의 피해호소를 이유로 이를 수정할 경우, 역사 왜

21) 〈한겨레신문〉 2008년 10월 23일 2면 "기업 · 정치인, 포털 임시삭제 '비판글 재갈' 악용"

22) 한 유명 기업인은 재혼을 했으나, 인터넷에서 이 기업인 이름을 검색하면 첫 번째 결혼생활과 관련한 기사와 사진이 노출됐다. 단란한 가정으로 묘사된 지난날의 기사와 사진은 관련자들에게 부담이 됐고, 이 기업인은 일부 매체에 협조를 부탁해 기사와 사진을 인터넷에서 삭제했다.

곡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이를 수 있다.

4. 과거 기사 수정의 기술적, 법률적 한계

오보에 대한 신문사의 처리 과정과 [사례 9]에서 나타난 것처럼 신문사에 따라서 과거 기사에 대한 수정 요구를 반영하는 수준이 다르고 이는 결과적으로 실효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비록 상당수의 언론사와 포털로부터 협조를 얻어내 과거 기사에 대한 수정을 하더라도 인터넷 어딘가에 그 정보가 남아 있으면 수정 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일단 신문으로 인쇄되어 널리 배포된 신문은 이후 시점부터 그 안의 기사에 대해 이미 신문사의 영향력을 떠난 것이 된다. 같은 기사가 인터넷에서 서비스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기사를 수정해서 서비스할 수 있지만, 종이신문은 사정이 다르다. 신문 PDF 서비스에서는 그것이 대형 오보라 하더라도 특정 기사를 삭제하고 서비스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설령 특정 기사나 인터넷에서도, PDF 서비스에서도 삭제 또는 수정한 상태로 서비스하더라도 이는 인터넷 사용자에 의해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 PDF 마저 삭제한 기사라 해도 누군가는 해당일에 발행된 종이신문에 접근해 이를 촬영한 사진이나 텍스트를 바꿔서 언론사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할 수 있다. 개인의 블로그나 카페는 물론이고 국내 법률이 미치지 못하는 국외 인터넷 서비스에 익명으로 게시하고 그 링크를 알려 국내 사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인터넷 기사 유통을 상정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법률 또한 과거기사의 지속 유통으로 인한 문제에 전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조처인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은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의 청구 적용 시한을 언론 보도를 안 지 3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언론 보도가 있은 지 6개월이 지난 경우는 사실과 어긋난 보도라 할지라도 정정보도 청구나 반론보도의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23]

"인터넷 기사 유통을 상정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법률 또한 과거기사의 지속 유통으로 인한 문제에 전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내용은 같지만 게재 형태가 다른, 종이로 발간된 신문과 인터넷에 게재돼 있는 정보를 같은 기준으로 다룰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내용은 같지만 게재 형태가 다른, 종이로 발간된 신문과 인터넷에 게재돼 있는 정보를 같은 기준으로 다룰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 언론중재 관련 조항은 모두 제한적 도달범위를 지닌 과거의 신문이나 방송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실효성이 거의 사라지는 상황이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신문으로 발간된 것은 언론중재법을 적용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현실이 갖는 모순이다.

Ⅴ. '잊혀질 권리' 의 도입과 과거 기사 처리

시대에 따라서 보도 기준이 달라지고 기사의 유통기한이 제한적일 것이라 여겼던 상황에서 작성된 기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인터넷에서 무한 유통되

2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정보도 청구의 조건

면서 편리함 못지않게 예기치 못한 관련자들의 피해 호소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은 일찍이 언론이 직면하지 않은 심층적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다. 삭제되지 않고 유통되는 기사 등 인터넷에서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인한 문제는 소셜네트워크 시대가 되면서 그 위험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국내만이 아니라 주요 국가 각국에서도 동시에 문제가 되며 '잊혀질 권리'의 도입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이 사면과 복권, 형의 실효를 통한 기록의 삭제 등 사회적으로 망각과 새 출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법률을 통한 공동체의 합의를 근본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의 심층적 특성으로 인해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 여부를 단지 언론 관계법령에서 규율하기 힘든 점도 있다. 관계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접근하기에 앞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종이 신문으로 발행되던 과거 기사가 어떤 존재적 특성과 유효성을 갖는지에 대한 광범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 빅터 마이어-쇤버거(Victor Mayer-Schönberger)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인류 역사상 기억과 망각의 기본적 구조가 역전되었기 때문에 망각을 인간이 의도적 장치를 통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4] 마이어-쇤버거는 정보의 디지털화, 전지구적 네트워크, 값싼 디지털 저장장치로 인해 인류의 인지 구조에서 망각이 기본이던 것이 기억이 기본으로 되었다고 주장하며, 각종 정보에 유통기한인 만료일을 설정함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망각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이는 현 단계에서는 현실성이 낮은 제안이지만, 과거의 일간신문이나 주간지가 각각 일간, 주간 단위의 실질적 유통기한을 전제로 제작, 보급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번 생성된 정보가 무한 유통되는 것을 통제하려면 의도적인 유통기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지난 2006년 처음으로 보고되기 시작한 과거 기사가 인터넷에서 지속 유통됨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문제는 앞으로 다양한 피해 호소 사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점점 더 많은 과거 데이터베이스가 디지털화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확산과 결합하면 과거보다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과거 제한된 시간과 공간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유통되던 신문과 방송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던 각종 언론 관계법령과 언론계 내부의 제작원칙을 놓고 이러한 디지털 기사 유통의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게 우선이 될 것이다.

24) Victor Mayer-Schönberger (2009). Delete. Princeton University Press

정보의 웰다잉을 향한 시도

–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국제 동향

홍명신
인하대 사회교육과 계약제 대우강사

Ⅰ. 서론

기원전 1000년의 인간 평균 수명은 오늘날의 청소년 연령에 해당되는 18세에 불과했다. 인류의 역사에서 장수, 영원한 삶은 오랫동안 종교적이거나 신화적인 영역에 머물렀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 수명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웰빙(well-being)은 과학, 의료, 복지 등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화두가 되었다. 그리고 잘 사는 것의 완성은 잘 죽는 것(well-dying)이라는 논리로 이어졌다. 죽음은 한 생명이 자신의 삶을 맺는 마지막 순간이므로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은 죽음뿐만 아니라 삶에 관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에이징 붐을 주도하는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마지막 순간까지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관, 장례음악, 묘비, 교통수단까지 꼼꼼하게 예약한 덕분에 미국의 장례 사업 규모는 7000억 달러를 훌쩍 뛰어 넘을 전망이다(Hilt & Lipschultz, 2005). 여기에 계획적인 사람들은 사후에 공개될 유언은 물론 생전에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사전의료지시서[1]까지 따로 작성하느라 분주하다. 스스로 의사표현을 정확히 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자신의 치료 범위와 수준을 미리 정해두어 더 존엄하게 더 자연스럽게 생물학적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제 웰다잉 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과 관련된 정보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오늘날 개인, 기업, 공공기관이 만들어내고 축적한 정보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증가되었다. 쉽게 망각하는 인간과는 달리 무한 기억을 표방하는 디지털 기억의 시스템은 예기치 못했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한 당면한 문제 해결을 향한 절박함과 법제적 논의의 필요성이 '잊혀질 권리'를 무르익게 하고 있다.

지금 국제사회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대응은 국가에 따라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존의 법리를 이용해 잊혀질 권리를 꾸준히 성숙시켜온 나라도 있고, 잊혀질 권리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나라도 있다. 잊혀질 권리를 반드

1) 사전지시의료서(living will) 또는 사전의료의향서라고도 한다. 환자 스스로의 판단능력이 명료한 상태에서 작성되며 중병으로 의식상태가 불명료해져 의사표현이 불가능해질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임종의료(臨終醫療)의 내용을 기록해서 의료진에게 지시하는 서류나 기록을 의미한다. 환자가 원하는 진료 및 진료의 자율성을 유지 · 확보해 주기 위한 조치로서, 자신이 받게 될 치료 내용에 대한 소원, 소망을 기록으로 남긴다.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의 의사 결정, (법적)대리인의 지명, 완화의료 요청, 심폐소생술의 거절, 원하지 않는 치료행위의 거절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지시할 수 있다(김건열, 2011).

시 추진해야할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잊혀질 권리의 섣부른 적용이 역사 왜곡과 국경을 넘은 언론 검열의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고 우려하는 법조인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잊혀질 권리의 입법을 추진하는 대열에 섰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잊혀질 권리를 향한 거대한 흐름의 어디쯤에 서 있는 것일까?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배양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 의 정의, 배경,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잊혀질 권리의 대두 배경 및 정의

1. 잊혀질 권리의 대두 배경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잊혀질 권리는 매우 새로운 개념일 수도 있고 수십 년에 걸쳐 논란을 빚어온 해묵은 논란이 디지털 버전으로 거듭난 것일 수도 있다. 통시적인 자세로 잊혀질 권리의 뿌리를 좇아가면 1888년 토마스 쿨리 판사의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alone)' 판결 시점이 될 수도 있고, 1930년대 영국의 공상 과학소설이 될 수도 있으며, 1960년대 EC의 정보보호논의를 제기한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현재 미디어, 국제기구, 정부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잊혀질 권리 논의는 컴퓨터가 매개한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함께 성장해왔다는 점이다. 잊혀질 권리가 21세기의 현안이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했다.

(1) 공유와 참여의 인터넷 확산

1960년대 초 미 국방부의 ARPA(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구상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인터넷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공유' 다. 그나마 웹1.0 시기에는 정보의 액세스(access)에 방점을 두고 소수의 정보제공자가 중심이 되는 단방향적인 공유에 머물렀다. 그러나 웹 2.0이 도래하면서 참여, 공유, 개방은 핵심적인 키워드로 떠올랐다.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정보생성과 소비의 역할을 동시에 맡는 능동적인 프로슈머가 되었다. ITU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수는 20.8억 명이고 그 중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 라 칭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약 15.1억 명에 달한다. 페이스북의 가입자 수는 6억 명이며 트위터는 1.7억 명 수준이다. 전 세계 리트윗의 50%가 트윗이 생성된 지 1시간 안에 유통되고 한국에서는 불과 30분 안에 확산된다(방송통신위원회, 2011).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 사진, 동영상을 스스럼없이 게시하고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사이버 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공유를 역으로 해석하면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소유, 전파, 복제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대규모로 사적인 영역이 사이버 공간의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낸 기억의 새로운 규범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완벽한 사회적 기억을 규범화했고 망각을 예외로 만들어 버렸다. 디지털 시대 망각의 미덕을 주장하는 빅토르 메이어-숀버거(Mayer-Schonberger, 2009)는 디지털화, 저장의 저렴함, 손쉬운 검색, 글로벌 범위가 '삭제' 불가능한 현실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첫째, 디지털화는 처리, 저장, 검색을 분리하던 아날로그 시대와는 달리 모든 정보를 이진법적 신호로 표준화해서 저장했다. 저장된 정보는 비디오, 문자, 그 어떤 종류로 재현되어도 원본과 차이가 없다. 그러

한 표준화는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 · 유포시킨다. 아날로그 정보는 정보의 유형에 따른 고유의 공유 및 배포 방식이 있었지만, 디지털 정보는 하나의 디지털 기기(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영역을 넘나들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정보는 사회적 기억을 규모면에서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둘째, 저장의 저렴함이다. 최초의 상업적 컴퓨터인 UNIVAC은 고작 1메가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었지만 100만 달러에 팔렸다. 1950년대에는 1메가바이트를 저장하려면 7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지만, 2008년에는 1메가바이트의 정보 저장비용이 100분의 1로 줄어들었다. 2009년 구글은 1인당 무료 저장 공간을 7.3기가바이트로 키웠으며 '어떤 메시지도 절대 지울 필요가 없는 무료 저장 공간' 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정보 저장 비용의 급격한 감소는 무한 기억을 21세기의 트렌드로 자리잡게 했다.

셋째, 손쉬운 검색이다. 디지털 컴퓨터 1세대 연구자들은 컴퓨터의 파일 시스템을 개발할 때 도서관 도서 목록방식을 참조했다. 이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해당 기록과 결합되어 있는 정보의 열과 행을 검색하도록 구조화함으로써 메타 데이터를 쉽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를 순식간에 검색하는 길이 열리면서 인간은 끝없는 비트의 바다에 허우적거리지 않고 강력하게 인간의 기억을 확장하게 되었으며 개인 정보 또한 검색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넷째, 글로벌 범위는 개인의 공간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다. 이용자들은 물리적으로 자신이 위치한 장소를 넘어 정보에 접근하게 해준다.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지털 정보는 가치 있는 정보가 되고 글로벌 네트워크에 접속되지 않은 정보는 쉽게

"아날로그 정보는 정보의 유형에 따른 고유의 공유 및 배포 방식이 있었지만, 디지털 정보는 하나의 디지털 기기(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영역을 넘나들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정보는 사회적 기억을 규모면에서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잊혀진다. 전통적인 형식의 정보 통제 하에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문화를 생성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지구촌의 차원에서 공동 소유할 수 있게 했다.

(3) 디지털 도지에(Digital Dossiers)[2]를 생성한 민 · 관 · 언론의 데이터베이스

과거 공동체는 소규모의 친밀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개인 정보는 친구, 가족, 이웃의 기억 속에 존재하면서 가십이나 이야기로 회자되었다. 오늘날에는 디지털 도지에가 된다. 기업의 컴퓨터에는 개인 정보가 쌓여 있다. 우리가 무엇에 지출하고 직업이 무엇이며, 소득이 얼마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종교, 인종, 정치적 견해, 건강 문제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있다. 미국의 윌란드 서비스사는 2억 1천 500만 명 이상의 개인 정보를 100개의 정보 항목에 따라 구분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상업적인 영역의 정보는 정부쪽으로 흘러들어가 더 큰 시너지를 만들고 있다(Solove, 2004)

특히 매스 미디어의 데이터베이스는 과거 기사의 부활을 가져왔다. 인터넷 이전의 정보 유통은 제한적 · 한시적이었다. 특정 정보에 대해 아는 사람만 아는 시대였고 언론의 기사는 미디어에 따라 고유한 유통기한이 있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자연히 잊혀졌

2) 도지에(Dossiers)는 원래 관련 서류 일체를 나타내는 말이다. 다니엘 솔러브는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베이스가 그 사람과 신상과 관련된 모든 서류철의 더미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디지털 도지에' 로 표현했다.

"인터넷은 개인이 감추고 싶은 과거를 현재화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고 말았다. 매스 미디어에 한번 보도된 사소한 사안이나 언론이 부적절한 기준으로 보도한 기사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과거의 잘못으로 당시 법 절차에 따라 응분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관련자가 영원히 해당 사실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디지털 도지에로 남아 있게 되었다."

다. 하지만 언론 기사의 데이터베이스는 한 번 보도된 기사의 유통과 유효기간을 거의 '무한대' 로 만들었다. 누구나 쉽게 아무 때나 과거의 기사에 접근할 수 있고 또한 이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이재진 · 구본권, 2008). 인터넷은 개인이 감추고 싶은 과거를 현재화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고 말았다. 매스 미디어에 한번 보도된 사소한 사안이나 언론이 부적절한 기준으로 보도한 기사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과거의 잘못으로 당시 법 절차에 따라 응분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관련자가 영원히 해당 사실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디지털 도지에로 남아 있게 되었다. 따라서 특정 기사를 언론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거나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4) 생산은 쉽고 삭제는 어려운 온라인 딜레마

디지털 공간에서 정보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비용은 무료에 가깝지만 정보를 완전하게 삭제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강장묵, 2011). 검색엔진에서 이름만 치면 쏟아져 나오는 개인 신상정보를 없애려면 인터넷 업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보는 개인의 것이지만 정보의 삭제 권한은 기업에 있기 때문이다. 가입한 사이트 계정에서 탈퇴한다고 해도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예컨대 페이스북에서 탈퇴해도 친구들 페이지에 남긴 댓글은 남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보 삭제와 관련한 또 하나의 이슈는 정보주체가 사망했을 때 발생한다. 더 이상 관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보주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자(死者)의 디지털 정보는 모호한 상태로 남게 된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디지털 기억의 지속은 사자의 사생활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서 영원히 보존시킬 것이지 아니면 지울 것인지, 삭제한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또한 우리가 만든 사이버 상의 자아를 유기체와 달리 불멸의 존재로 인정해야 것인지, 인간처럼 죽음을 맞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준다. 어떻게 기억되는가 못지 않게 어떻게 잊을 것인가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2. 잊혀질 권리의 정의

'잊혀질 권리' 라는 낭만적인 명칭의 원문을 찾아보면 영어권에서는 '잊혀질 권리' 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the right to be forgotten' 또는 '망각의 권리(the right to oblivion)' , '삭제할 권리(the right to delete)' 등이 혼재되어 쓰이고 있다. 불어권에서는 잊기, 망각이라는 뜻의 'oubli' 를 사용하여 '망각의 권리(Droit a l' Oubli)' 로 표기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 잊혀질 권리' , '디지털 잊혀질 권리' 등으로 나타내어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이슈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서 정의된 잊혀질 권리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와너(Warner, 2005)는 잊혀질 권리를 '기록의 보유에 관한 법적 규제' 로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Conley(2010)는 '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영구적인 저장소로부터 특정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 라고 규정했다. 개인에 관한 기록들은 실제적으로 디지털 정체성의 일부분이며, 개인은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통제되기 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 결정권의 핵심적 부분이며 개인에게 자신의 역사를 통제하고 그 역사 속에 숨을 수 있는 능력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타운 로스쿨의 프란츠 웨로 교수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에 남겨둔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고 정보를 지우는 것이 가능한 권리' 라고 언술했으며 유럽에서 프라이버시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고 했다(Werro, 2009). 존 핸들(Hendel, 2011)은 잊혀질 권리를 발전 과정에 있는 권리로 분류하고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해 데이터 추적을 제거하고 구글 같은 회사에 자신의 검색 결과물들을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허락되는 권리' 라고 해석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10)는 잊혀질 권리를 '해당 데이터가 더 이상 합법적인 목적으로 필요치 않을 때에는 데이터를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삭제하는 개인의 권리' 라고 했다. 그러한 권리는 개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처리될 때, 개인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저장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발휘된다. 2011년 11월에 EU는 잊혀질 권리를 '개인이 데이터가 수집되었을 때의 용도로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때는 완전히 삭제할 수 권리' 로 규정했다. SNS 사이트에서 파일을 지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사진 같은 개인적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European Union, 2011).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잊혀질 권리는 'SNS 이용자가 본인의 게시물이나 콘텐츠에 대해서 원하는 경우 파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제3자 제공, 취급위탁 각각을 상세히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동 사항의 이용자 인지를 오히려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SNS사업자가 게시물이나 콘텐츠에 대해서 보유기간을 설정하고 외부 공개 차단 기능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회원 탈퇴 시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진 · 구본권(2008)은 신문 과거 기사의 지속적 유통으로 인한 피해에 주목했다. 이들은 잊혀질 권리를 '인터넷 이용으로... 일부의 사람에 대한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나게 될 경우 더 이상 사회의 공공적이지 않은 사안의 기사에 언급된 관련자가 인터넷 검색에서 제외되는 것' 으로 그렸다. 아울러 현행 언론중재법에 과거 기사의 수정과 삭제를 명시하여 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개념을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매스미디어가 보유한 과거 기사 및 정보의 무한 유통' 이나 'SNS 이용자가 자신의 게시물이나 콘텐츠를 유통, 저장, 삭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면 잊혀질 권리는 디지털 기억이 야기한 새로운 문제로서 법적 권리로 개념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개념에 해당된다.

조금 더 거시적으로 '개인 데이터의 보존, 보유, 삭제' 의 권리나 프라이버시권의 확대로 본다면 1960년대 이래로 유럽에서 논의되어온 정보 보호 논의의 일환이며, 19세기 후반 이래로 발달해온 프라이버시권, 인격권 등이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더불어 디지털 프라이버시(digital privacy) 개념으로 진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제기된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소송의 대부분은 프라이버시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현시점에서 잊혀질 권리는 '정보의 생성, 저장, 유통의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유통기한을 정하고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라고 정의할 수 있다.

Ⅲ. 잊혀질 권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

국제기구는 데이터 보유가 가져오는 역기능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권의 차원에서 잊혀질 권리를 주로 논의해왔고 각국이 관련 입법을 할 때 준거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Warner, 2005). 본고에서는 국제기구의 흐름과 함께 동일한 서양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잊혀질 권리에 대해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동향을 고찰해 보았다

1. UN, OECD

OECD는 1984년 6월 29일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경을 넘는 개인 데이터 유통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최초의 다국적 기관의 공정한 정보 활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OECD 가이드라인의 본문에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지만, 보조 자료에는 '데이터가 어떤 목적에 따라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할 수 있다면 그 데이터들을 파괴(삭제)하거나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도록 익명의 형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 데이터에 관심이 없어졌을 때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되면 도난, 승인되지 않는 복제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라고 기술했다.

1990년 12월 14일 유엔 총회는 전산화된 개인 정보 파일에 관한 UN 가이드라인(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Concerning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을 채택했다. 데이터 보유와 관련된 원칙 3항에는 '파일이 제공되는 목적과 그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성립되었을 때 일정 정도의 공지를 해야 하고 (개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개인과 관련된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개인 데이터의 (유효)기간은 명시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서는 아니 된다'. 이처럼 오늘날의 잊혀질 권리의 뼈대를 형성하는 데이터 보유의 제한 뿐 아니라 공지의 의무, 보유기간, 수집 목적, 데이터 주제에 따른 정보 이용의 제한 등이 명시되어 있다(Warner, 2005).

2. 유럽

위키리크스는 유럽을 전초기지로 삼고 이른바 '비밀 없는 시대(no-secrets age)' 를 열었지만, EU와 유럽 각국은 거대한 인터넷 기억에 대응할 주요 카드로 잊혀질 권리를 만지작거리고 있다(Hendel, 2011).

먼저 EU 차원의 움직임을 보면, 유럽에서 잊혀질 권리가 논의되는 가장 큰 근거는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이 사적인 삶, 가족, 가정,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을 보장한 유럽인권조약 제8조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EU의 기본권 제7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와너(Warner, 2005)에 따르면 유럽의 자료 보유 또는 보존의 원칙의 기원은 1968년에 채택된 인권과 현대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EC 권고 509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 기술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위험' 을 언급했으며 지방 정부의 데이터 프로세싱에 대한 이러한 초창기 주장이 있은 다음, 특별한 목적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유럽위원회는 1973년에 데이터 보호법에 관련된 제안서를 만들었다. 유럽의 데이터 보호법은 프라이버시권에 기초하고 있는데 EC Direct 95/46/EC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 특히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해야 하며 경제 사회적 진보, 무역의 팽창, 개인의 웰빙에 기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러한 논의가 계속 진화하여 EU는 작년 11월에 데이터 보호 목표를 상정하면서 테크놀로지의 급격한

발달과 세계화는 개인 데이터 보호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새로운 서비스 즉 SNS, 클라우드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명확화하고 구체화하는 개인정보보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필요한 요인으로 첫째, 새로운 기술(SNS,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 원칙 적용의 명확화 및 구체화, 둘째, EU 회원국 간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에 대한 통일성 제고, 셋째, EU 내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절차 간소화, 넷째, 개별 국가의 법집행 효율성 제고 등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입법과정에서 ① 개인정보의 수집주체 및 수집목적의 명확화 ② 개인정보 파기시한 등을 통한 잊혀질 권리 보장 ③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이용자 통지제도 확대 ④ EU 외 개인정보 이전은 해당국이 EU와 유사한 보호수준을 가질 때만 가능하도록 함 ⑤ 수사 및 사법당국에 의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⑥ SNS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쉽게 인지하도록 현행 개인정보 활용 동의 내용의 간소화 방안 등이 중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EU의 움직임 속에서 유럽 각국은 현실적으로 터져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법제를 이용해 전반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최근 서방 국가들 가운데 온라인 통제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의 하나다. 논란 속에서 아도피(HADOPI)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올 초 '테러리즘, 소아 성애(paedophilia), 잊혀질 권리와 같은 주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라는 말해 잊혀질 권리를 정치적 의제로 부각시켰다. 5월에 프랑스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도 인터넷 공조와 함께 규제를 강조했다(Williams, 2011). 프랑스에서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업체와 이동통신 회사들이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에 대해 보관기한을 설정

"EU는 작년 11월에 데이터 보호 목표를 상정하면서 테크놀로지의 급격한 발달과 세계화는 개인 데이터 보호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새로운 서비스 즉 SNS, 클라우드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명확화하고 구체화하는 개인정보보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 시일이 지나면 그 기록을 삭제하도록 하는 권리'로 간주된다. 무죄추정권과 관련된 개념으로 무분별하게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올려온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범죄 혐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구본권, 2011).

유럽에서는 단지 프라이버시권이 아니라 인격권으로 규정되는데 언론과 사인 간의 갈등은 유럽 개별국가의 법정에 서기 전에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2004년 독일의 캐롤린 폰 하노버는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잡지사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사진은 순수하게 사적인 특성과 관련된 일상생활을 촬영한 것으로서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법정은 고소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정치인이나 악명 높은 공인이 아닌 고소인의 사진은 더 이상 보도가치가 없으므로 해당 사진의 출판 통제권을 그녀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C. von Hannover v. Germany, 2004; Werro, 2009).

한편 스위스에서는 프라이버시권 뿐만 아니라 인격권(die Personlickeitsrechte)의 일부로 잊혀질 권리를 다루고 있다. 1980년대에 스위스TV는 1939년에 사형당한 범죄자의 삶과 처벌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정부 공식기록, 판결문, 생존자의 기억에 토대해서 제작했다. 그런데 고인의 아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달라며 스위스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해당 다큐멘터리가 소송인의 프라이버시를 극도로 침해했다고 보고 소송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큰 틀에서 보면 범죄도 잊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형사 기소 중인 사람을 보도할 수 있지만, 그 권리는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언론과 공중은 더 이상 공식적인 기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범죄자가 공중의 무기한적인 흥미의 대상으로 남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스위스 연방법원에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소송이 이어졌다. 법원은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범죄기록과 관련된 이름이 기사화되거나 저서에 언급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정보의 보도가치가 살아있을 때에 한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렇다고 잊혀질 권리가 항상 유효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이나 기록이 오늘날의 공중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Werro, 2009).

최근에는 독일, 스위스, 체코 등지에서 구글 스트리트 뷰(street view)에 대한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에서 이처럼 광범위하게 디지털 잊혀질 권리를 지지하는 것은 모든 데이터의 처리는 합법적이어야 하며 개인의 동의 없는 디지털 감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Hendel, 2011).

3. 미국

요사이 미국 언론은 트위터를 통해 다른 여성들에게 알몸 사진을 보낸 민주당 앤소니 위너 의원의 소식이 미디어를 점령하고 있다. 연이어 위너 의원이 연방하원회관 체육관에서 찍은 선정적인 사진까지 공개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위너 의원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은밀하게 전송한 사진 탓에 곧 의원직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여배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케네스 아델만과 픽토피아닷컴(pictopia.com)에게 50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이트가 공개한 12,000장의 캘리포니아 해안 사진 가운데 자신의 말리부 자택이 상세하게 노출되어 있어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해당 항공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이 소송으로 인해 사진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해당 사이트를 찾는 역효과가 일어났다. 온라인에서 조용히 잊히고자 했던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더 많이 기억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바람에 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라는 용어까지 만들어졌다.

이처럼 미국에서도 디지털 기억은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잊혀질 권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유보적이다.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인터넷과 프라이버시권 모두 미국이 요람의 역할을 했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수세기동안 프라이버시에 관한 관심을 피어오르게 했다. 그러나 철학자 토마스 내이젤의 지적처럼 '지난 20-30년 동안 미국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깨지기 쉬운 관습'으로 자리 잡고 말았다(Solove, 2008).

여기에 미국이 처한 정치적, 경제적 요인도 일조했다. 정치적으로는 2002년 9 · 11 테러 발생 이후로 미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테러와의 전쟁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른바 소프트 시큐러티 방침(soft security measures)에 따라 위험인물과 관련 네트워크를 관찰하기 위해 첨단 네트워크를 활용한다(Acquisti, A., Gritzalis, S., Lambrinoudakis, C. & Capitani di Vimercati, S., 2008). 지난 9년 동안 미국 정보기관은 무려 33개의 건물을 일급비밀을 위한 정보작전을 위해 확보했다. 51개의 연방 기관들이

테러리스트 네트워크의 돈의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NSA는 매일 17억 개의 이메일과 전화 통화를 스크린하며 단서를 찾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세계 SNS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대부분 미국기업이라는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위키피디아,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유튜브, 트위터, 링크드인의 본사는 모두 미국에 있다. 심지어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는 "지금 다시 페이스북을 만든다면 소수의 친구에게만 허용하는 개인정보를 '모두에게 공개'를 기본으로 설계할 것"이라며 프라이버시 시대의 종언을 주장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를 미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지할 경우, 미국의 첨단기업들은 국내외에서 대규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미국에서도 인간의 기억의 범위를 거스른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그 해법을 들여다보면,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 못지 않게 개인의 디지털 절제[3]나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4], 현대 테크놀로지의 거부할 수 없는 실재에 대한 문화 적응 등이 제시되고 있다(Mayer-Schonberger, 2009). 기술적인 도구, 법적 규제, 사회 규범, 시장의 압력이 여타의 법과 함께 조화롭게 작동할 때 개인의 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을 촉진될 수 있다고 보고 잊혀질 권리는 그 중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분석한다(Conley, 2010).

한편, 잊혀질 권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고 판단한 민간 벤처 기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웹2.0 자살기계(suicidemachine.org)나 세푸쿠(seppukoo.com)는 과도한 사이버 정체성을 죽이고 현실세계의 실제 자아를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설립됐다. 회원이 가입한 SNS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삭제를 요청하면 그동안 올린 개인 정보가 모두 지워지고 계정도 없애준다. 라이프인슈어드닷컴(www.lifeensured.com)서비스는 모든 세대의 '생을 마감하는 계획'을 표방하는 온라인 장의사다. 회원의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생전에 지시한대로 SNS의 각종 정보를 삭제해준다(Martinet, 2011).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페이스북은 해당 사이트의 아이피(IP)를 차단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트위터 · 마이스페이스 등은 방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디지털 기억은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잊혀질 권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유보적이다.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4. 국경을 넘은 잊혀질 권리의 현실: 제틀 마이어 살인 사건을 둘러싼 독일, 영국, 미국의 대응

인터넷의 특성상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사안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한다. 한 국가에서는 허용되는 권리가 다른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유명 배우 발터 제들마이어의 살인 사건을 둘러싼 잊혀질 권리 논란이다.

1990년 독일에서 60세의 발터 제들마이어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처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성적 정체성이 타블로이드신문에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범인으로

3) 기본적으로 개개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디지털 메모리의 존재가 끊어질 수 있다. 적어도 스스로 업로드한 기록에 대한 이해와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저작권이 있는 음악, 영화, 게임, 전자책의 디지털 권리를 인정하고 미디어 기기가 부적절하게 허용된 콘텐츠의 작동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를 의미한다.

지목된 볼프강 베를레와 만프레트 라우버 형제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생활하다 2007년, 2008년에 차례로 출소했다. 이들은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또 다른 지문을 근거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리고 2009년 위키피디아 재단에 발터 제틀마이어 관련 항목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독일 법정은 2008년 이들의 손을 들어줬고, 위키피디아 독일어판에서 이들의 이름을 삭제되었다. 그러나 미국에 소재한 위키피디아 재단은 미국 수정헌법 1조를 들어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래서 지금도 위키피디아 영어판에는 이들이 발터 제들마이어의 살인범이었다는 내용과 위키피디아와의 송사까지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독일 법정은 범죄자도 인격권이 있다는 관점에서 이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미국 언론과 법조계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실 정보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공표되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나라의 국내법이 어떻든 간에 외국의 압력에 의해 미국의 출판물이 검열받을 수는 없다' . 또는 '역사의 고결함이 위태롭게 되었다. 만약 모든 출판물이 글로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적인 검열을 따라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읽는 것을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위키피디아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는 입장을 견지했다 (Arthur, 2009).

이 사건은 세계 유수 언론들에 의해 독일의 프라이버시법과 미국의 표현의 자유가 격돌한 사건으로 보도되었으며 잊혀질 권리의 논의에서도 종종 등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에 대한 보도방식도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미국에 소재한 뉴욕타임즈는 범죄자의 실명을 공개했다. 영국에 소재한 가디언은 영국도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가디언은 독일판도 발행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 형제의 실명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소송을 대리한 알렉산더 스톱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여 이들의 의견을 기사에 반영했다.

이 사건은 잊혀질 권리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시각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역사의 기록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확인시켜 주었다. 발터 제들마이어 사건은 잊혀질 권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적 문제를 넘어 외교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충분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령 국내법에서 이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환경에서 반쪽의 권리로 전락할 수 있는 현실을 말해 준다.

Ⅳ. 결론

최근 구글의 에릭 슈밋 회장은 "손가락 하나만 까닥하면 세상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을 (구글의) 클라우드가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PC에 쌓여 있던 자료나 소프트웨어가 대형 데이터 센터로 자리를 옮겨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에만 인터넷을 통해 꺼내 쓰는 서비스인 클라우딩 컴퓨팅이 상용화된다는 얘기다. 이용자는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각종 기기로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지만, 전 과정이 마치 하늘의 구름 속에서 숨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 속에서 일어나고 거대한 정보가 집중된다면 그 편리성과 속도감 못지 않게 국제사회의 잊혀질 권리 논의도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에게 있어서 망각은 쉽지만, 기억은 어려운 과업이다. 당연히 영원한 기억의 시대는 분명 낯선 도전이다. 그 낯선 도전에 앞에서 국제사회는 프라이버시권, 인격권, (지적)재산권, 통신비밀법, 명예훼손법 등 다양한 기존 법리를 이용하여 잊혀질 권리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그리고 개인의 정보가 온라인에서 범람하면서 잊혀질 권리는 정보시대의 주요한 인권으로

"개인의 정보가 온라인에서 범람하면서 잊혀질 권리는 정보시대의 주요한 인권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국제사회는 프라이버시권, 인격권, (지적)재산권, 통신비밀법, 명예훼손법 등 다양한 기존 법리를 이용하여 잊혀질 권리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지구촌에서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두 개의 큰 흐름은 정보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유럽과 글로벌 인터넷 잊혀질 권리보다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에 무게비중을 실은 미국으로 대별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입법 추진하고 있는 잊혀질 권리는 유럽의 전통을 반영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 권리를 SNS에 한정하여 추진할 예정이어서 당면한 SNS 현안에 한해 유럽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럽의 방향성을 채택한다면 독일, 스위스의 경우처럼 살인범, 무장 강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의 언론 관련 기록조차도 삭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 있어 이를 근거로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 기사가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면 해당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근거는 비워져 있는 상태다. 그러한 공백들은 잊혀질 권리의 입법 취지를 퇴색시키고 하나의 상징적인 조치로 기록되게 할 것이다.

향후 전통적 미디어의 현실까지 고려하여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잊혀질 권리의 방향성을 잡고 해법을 내놓을 때 정보의 웰다잉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장묵 (2011. 5. 18). SNS에서 '내 정보'를 지키려면?. 『시사저널』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167 (검색일 2001. 5. 25).
- 구본권 (2010. 1. 12). '나를 잊어줘' … 온라인에 노출된 사생활 흔적 지워라.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it/398376.html (검색일 2011. 5. 7).
- 김건열 (2011). 『존엄사 II : 죽음의 바른 길을 성경에 묻다』. 서울: 최신의학사.
- 방송통신위원회 (2011). 소셜 플랫폼 기반의 소통창의 신뢰네트워크 사회구현 전략. 서울: 방송통신위원회.
- 이재진 · 구본권 (2008). 인터넷상의 지속적 기사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 잊혀질 권리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2(3), 172–212.
- Acquisti, A., Gritzalis, S., Lambrinoudakis, C. & Capitani di Vimercati, S. (2008). *Digital Privacy: Theory, Technologies and Practices*. New York: Auerbach Publications.
- Arther C. (2009. 11. 13). Wikipedia sued by German Killers in Privacy Claim, Guardian http://www.guardian.co.uk/technology/2009/nov/13/wikipedia–sued–privacy–claim (검색일: 2011. 5. 30)
- C. von Hannover v. Germany (2004. 4. 26). ECHR, Rec. 2004–VI 40EHRR 1.
- Conley, C. (2010). "The Right to Delete". AAAI Spring Symposium Series. presentations. 53–58.
- Mayer–Schonberger, V. (2009). *Delete: 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uropean Commission (2010. 4. 11).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 Comprehensive Approa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 Com(2010)609 final. Brussels.
- European Union (2011. 11. 4). Data Protection Reform MEMO/10/542 Brussels.
- Hendel, J. (2011. 2. 3). In Europe, a Right to Be Forgotten Trumps the Memory of the Internet. The Atlantic
- http://www.theatlantic.com/technology/archive/2011/02/in–europe–a–right–to–be–forgotten–trumps–the–memory–of–the–internet/70643/ (검색일 2011. 5. 31).
- Hilt, M. L. & Lipschultz, J. H. (2005). *Mass Media, an Aging Population and the Baby Boomers*. 홍명신 역(2008). 『늙어가는 미국: 미디어, 노인, 베이비붐』.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Martinet, D. (2011. 4. 8). If You Die Tomorrow, Who Will Bury Your Data Six Feet Under?, all things digital. http://allthingsd.com/20110408/if–you–die–tomorrow–who–will–bury–your–data–six–feet–under/ (검색일 2011. 6. 5).
- Solove, D. J. (2004). *The Digital Person: Technology and Privacy in The Information Ag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Solove, D. J. (2008). *Understanding Privac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Warner, J. (2005). The Right to Oblivion: Data Retention from Canada to Europe in Three Backward Steps. *University of Ottawa Law & Technology Journal*, 75, 75–104.
- Werro, F. (2009). The Right to inform v. the Right to be Forgotten: A Transatlantic Clash, Center for Transnational Legal Studies Colloquium. *Georgetown University, Research Paper*, 2, 285–300.
- Williams, C. (2011. 1. 13). Sarko to use G8 presidency to promote net regulation, *The Register*
- http://www.theregister.co.uk/2011/01/13/sarkozy_g8_net_reguation/ (검색일 2011. 6. 4).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시론적 고찰

지성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

Ⅰ. 서론

인터넷은 프로토콜(TCP/IP)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고 정보 전달을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한다. 도입 초기 인터넷은 분권적인 미디어로 기능하였으나, 인터넷 기술 및 산업의 발전으로 상업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소수의 사업자 중심으로 자본화·대형화가 이루어지면서[1] 현재에는 매스미디어적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광고주협회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2010년 미디어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Naver의 경우 영향력 부문에서 KBS와 MBC에 이은 3위를 차지하여 지상파 방송사인 SBS(4위) 및 주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5위) 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 부문에 있어서도 Naver(3위), Daum(6위), Nate(10위) 등의 대형 포털 사이트가 SBS(4위), YTN(5위), 조선일보(7위), 중앙일보(8위), 매일경제(9위) 등 주요 방송사 및 일간신문을 앞서고 있으며, 특히 18세~29세 평가 집단에서는 Naver가 신뢰도 1위를 차지하는 등 인터넷이 매스 미디어로 기능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미디어 부문에서는 인터넷(26.2%)이 TV(65.6%)에 이어 2위를 차지하여 신문(3위, 3.8%) 및 라디오(4위, 2.7%)에 비하여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 열독 사이트 부문에서도 Naver, Daum, Nate, Yahoo 등 대형 포털 사이트가 1~4위를 차지하여 조선일보(5위) 등 주요 일간 신문사가 운영하고 있는 뉴스 사이트를 크게 앞서는 등 인터넷이 TV를 제외한 전통적인 매스 미디어의 지위를 대체해 나가고 있으며 그 성격 또한 단순한 개인 커뮤니케이션 매체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중송신의 기능을 담당하는 매체로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발전에 따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인류가 누리게 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공간은 현실적으로 해결해

1) 인터넷 마케팅 전문업체인 코리안클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4월 기준, 도메인별 웹사이트 하루 평균 순방문자 수는 Naver 약 3,110만명(1위), Daum 약 2,400만명(2위), Nate 약 2,400만명(3위), Cyworld 약 2,120만명(4위) 수준으로 상위 5위까지 포털 사이트가 석권하고 있다. 6~10위의 사이트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 Auction(10위)을 제외하고는 국내 일간신문이 운영하고 있는 뉴스 사이트(중앙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한국경제일보)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업계 1위 포털 사이트인 Naver가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뉴스 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결과의 반사적 효과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야 할 많은 과제들을 부과하고 있다. 즉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통로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의 출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법제적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2)]

이러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의 문제이다. 즉 인터넷에 자발적으로 공개한 사생활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 영원히 보존할 것인가, 지울 것인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사이버상의 또 다른 자아는 유기체와 달리 불멸의 존재인가, 아니면 탄생처럼 죽음도 맞아야 할 것인가? 트위터 ·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고 구글이 최근 이들 사이트를 검색 결과에 포함시켜 '실시간 검색' 시대를 열게 된 것이,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3)]

최근 인기 스포츠채널 아나운서의 자살을 계기로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퍼다 나르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사람들이 송씨가 남긴 글을 퍼나르고 그 과정에서 미니홈피 등에 악성 댓글을 달았던 것이 송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에서다.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고 검색엔진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온라인상에서 특정 인물의 각종 정보를 찾는 것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으며, 과거의 언론기사를 바탕으로 하는 무차별적 '신상털기'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연예인 같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언제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본인이 원할 경우 온라인상의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개인의 자기관련정보통제권에 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네덜란드 출신의 운영자들이 개설한 '웹2.0 자살기계' (suicidemachine.org)는 사회관계망 사이트에 올린 글과 사진을 모두 지워버리고 계정 자체를 없애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일본어로 '할복' 을 뜻하는 '세푸쿠' (seppukoo.com)도 온라인 계정의 삭제를 도와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근거하여 향후 언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사 내지 정보를 개인이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잊혀질 권리' 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물론 '잊혀질 권리' 의 청구대상은 언론기관 뿐만이 아니라 개인 또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등 다양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논의를 언론기관에 한정하기로 한다. 또한 법이론적으로도 '잊혀질 권리' 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지면상 '기본권 충돌' 과 '개인정보보호' 의 관점으로 논의를 집중하기로 한다.

Ⅱ. 기본권 충돌이론의 관점에서 본 '잊혀질 권리'

1. 기본권 충돌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기본권 충돌의 의의

2) 인터넷의 발전과 법적 문제점에 관해서는 Leutheusser-Schnarrenberger, Sabine (1996). "Urheberrechts am Scheideweg?-von der politischen Verantwortung für Urheber". ZUM 40, S. 631ff.(S.631~636); von Bonin, Andreas/Köster, Oliver (1997). "Internet im Lichte neuer Gesetze". ZUM 41, S. 821ff.(S. 821~829); Müller-Hengstenberg, Claus D. (1999). "überfordert die IT Technologie die Rechtssysteme?". ZUM 43, S. 214ff.(S. 214~222); Schippan, Martin (2003). "Urheberrecht goes digital-Das Gesetz zur Regelung des Urheberrechts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ZUM 47, S. 378ff.(S. 378~389); Wagner, Axel-Michael (2004). "Quo vadis, Urheberrecht?", ZUM 48, S. 723ff.(S. 723-733) 등을 참조.

3) 한겨레, 2011. 1. 5, 19면.

기본권의 충돌(상충)(Grundrechtskollision)이라 함은 "상이한 기본권 주체가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로 인하여 서로 충돌하는 각자의 기본권을 주장 · 행사하기 위해 국가에 대하여 각기 자기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 흡연권과 혐연권 또는 건강권[4]
- 교원의 수업거부와 교육받을 권리
-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5]와 보도된 당사자의 명예의 보호 또는 반론권[6]
- 이익단체들의 시위와 인근 상점의 영업의 자유(재산권)
- 인공임신중절(낙태)과 태아의 생명권
- 공해산업 기업주의 직업의 자유 또는 재산권과 환경권
-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7]

등의 경우들처럼 개별적인 경우에 두 개 또는 다수의 기본권들이 서로의 이해를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본권의 충돌(상충)에 대한 처리 문제

종래에는 기본권이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만 적용되고 사인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사적 자치의 영역이나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기본권의 문제로 간주되지 않았다.

따라서 종래에는 기본권의 충돌(상충)문제는 형법 · 민법 등 단행 법률의 불법행위의 문제로만 다루어졌다. 가령 언론기관의 보도의 내용으로 인하여 보도된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당해 방송의 내용이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여부에 따라 합법, 또는 위법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민법상으로도 방송행위가 민법상의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여기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던 것이다.

종래에는 기본권의 충돌(상충)문제는 형법 · 민법 등 단행 법률의 불법행위의 문제로만 다루어졌다. 그러나 주관적 공권과 객관적 법질서라는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이 인정되면서 종래에는 기본권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기본권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법질서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통일적 질서이며, 기본권이 단순히 '개인이 국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주관적 공권)' 으로서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헌법의 핵심가치로서 모든 국가활동의 기준 내지 지침(객관적 법질서)' 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이 인정되면서 종래에는 기본권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기본권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상 기본권의 충돌(상충)의 문제는 새로운 현상이라기보다는 종래 단행법적으로 다루어졌던 문제를 헌법적 시각에서 재평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기본권의 충돌(상충)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는 충돌하는 기본권들이 모두 조화될 수 있도록 입법이 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기본권의 제한' 의 문제가 된다.

4) 헌재결 2004.8.26. 2003헌마457
5) 헌재결 1991.7.22. 89헌가106
6) 헌재결 1991.9.16. 89헌마165
7) 대판 1988.10.11. 85다카29

(3) 기본권 충돌(상충)의 요건

기본권 충돌의 문제는 ① 복수 주체 간, ② 기본권의 보호범위 내 경우, ③ 국가에 대하여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4) 기본권 충돌과의 구별개념

(가) 부진정[不眞正, (類似, 擬似)] 충돌

기본권의 부진정(유사, 의사) 충돌이라 함은 외견상 기본권의 충돌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처음부터 기본권의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이다. 가령, 타인의 재산을 절취한 절도범과 재산권자 사이에는 이 재산을 절취한 범죄자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타인의 재산을 절취하는 행위는 행복추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절도범의 기본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단순히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재산권 침해)한 것이며, 기본권 충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기본권과 공익(법익의 충돌과 기본권의 충돌)

기본권과 기본권이 아닌 법익인 헌법상 보호되는 공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충돌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시켜 논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공익도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조건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본권과 공익의 관계도 기본권 상호간의 관계와 본질적으로 같으므로, 기본권과 공익이 충돌하는 경우도 기본권의 충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기본권과 공익의 충돌은 바로 기본권 제한의 문제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권과 공익의 충돌은 기본권의 충돌문제로 볼 수 없다.

기본권이 가치적으로 다른 법익과 충돌하는 경우는 '법익의 충돌' 이라고 보아야 한다. 법익의 충돌은 기본권은 아니지만 법률상의 가치 · 권리 · 이익 등과도 충돌할 수 있고, 헌법상 보장된 다른 가치나 이익들과도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법익의 충돌' 이라고 보아야 한다. '법익의 충돌' 은 기본권의 충돌보다 넓은 개념이며, 기본권 충돌은 법익의 충돌의 한 유형이다.

(5) 기본권 충돌의 유형

(가) 명시적 충돌

기본권의 명시적 충돌이라 함은 당사자인 기본권 주체들이 각기 자신의 기본권을 국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나) 묵시적 충돌

기본권의 묵시적 충돌이라 함은 기본권 주체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국가가 입법, 행정, 재판 등을 함에 있어 판단이나 결정에서의 고려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6) 기본권 충돌의 문제 해결이론

(가) 독일에서의 논의

(ㄱ) 입법형성의 자유이론(입법자 역할론)

입법형성의 자유이론에 의하면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을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자인 의회가 입법

형성의 자유에 근거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이론에 대해서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는 성질상 헌법해석의 문제이므로 입법자에게만 기본권 충돌에 대한 해결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며, 구체적인 경우에 헌법상의 기본권 충돌현상을 모두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

(ㄴ) 기본권의 서열이론(기본권 등급론)

기본권 서열이론(기본권 등급이론)에 의하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들 사이에는 가치적인 중요도에서 서열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기본권들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충돌하는 기본권들 중 서열이 높은 기본권을 우선하여 보호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들을 모두 등급화(서열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ㄷ) 이익(법익)형량이론

이익형량의 원칙에 의하면 기본권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기본권 상호간에 일정한 위계질서가 있다(기본권 서열이론 또는 기본권 등급이론)고 전제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이론에 의하면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는 상위기본권과 하위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와 동위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상위기본권과 하위기본권이 충돌할 때에는 상위기본권이 우선한다.[8] 둘째, 동위(同位)의 기본권이 충돌할 때에는 인격적 가치가 있는 기본권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본권보다 우선하며, 자유권과 평등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자유권이 평등권보다 우선시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이론에 의하면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들의 우열관계를 모두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여 모든 기본권을 서열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만일 우월한 이익만이 보장되며, 열위의 기본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ㄹ) 규범조화적 해결이론(실제적 조화의 이론, 형평성중시론)[9]

이익(법익)형량이론에 의하면 우위에 있는 기본권만을 보호하고 열위에 있는 어느 하나의 기본권은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규범조화적 해결원칙은 위와 같은 이익(법익)형량원칙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제시된 이론이다.

---

8) 가령 임산부가 인격발현을 위하여 낙태한 경우 태아의 생명권은 임산부의 인격발현권보다 우선하며, 母가 종교적 교리에 의하여 子에 대한 수혈을 거부한 결과 子가 사망한 경우 子의 생명권은 母의 종교의 자유보다 우선한다.

9) 허영교수는 "규범조화적 해석방법"이라고 표현하며, 장영수 교수는 "실제적 조화의 원칙"이라고 한다.

10) BVerfGE 30, 173ff.(1971); 소설가 Klaus Mann은 1936년 메피스토라는 소설을 작성했는데, 이 소설에서 주인공인 Handrik은 자신의 소신을 저버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 나치시대에 예술가로서의 입신양면에만 힘을 쓰는 인물로 묘사되었다. 이 소설 주인공의 모델은 나치시대의 Gustav라는 연극인 겸 연출가였다. 이 소설을 읽는 독자라면 소설의 주인공이 실존인물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은 부정적인 인물로 다루어져 실제로 명예훼손적인 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후손들이 1964년 명예훼손을 이유로 출판금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Klaus Mann은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오는 명예권의 문제와 예술의 자유와의 갈등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규범조화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결정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하위법원이 객관적 가치질서인 헌법규정을 잘못 해석한 경우,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하위법원의 견해를 수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예술의 자유에 대해 연방헌법이 특별히 법률유보를 두고 있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한계 없이 행사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본 사건에서 예술의 자유와 명예권이 상호 상충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출판을 허가할 것인가, 아니면 금지시킬 것인가의 양자택일만 존재한다. 이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상충하는 기본권의 입장들을 비교하여 이익형량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권들 간의 위계질서가 존재할 수 있는데, 본 사건에서 명예권(인격권)이 예술의 자유보다 앞선다고 보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오는 명예권의 문제와 예술의 자유와의 갈등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규범조화적 방법' 중 '과잉금지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명재진 (1998). 예술의 자유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의 변화. 「판례월보」, 328, 64~68면 참조.

국내에서는 주로 이익(법익) 형량이론과 규범조화적 해결이론에 의하여 기본권의 충돌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국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기본권 충돌시에 '법익형량의 이론', '기본권 서열이론', '규범조화적 방법' 등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 이론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문학작품에서 특정 개인의 구체적 사생활을 언급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와 예술의 자유가 상충한 경우(Mephisto 판결)[10]와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과거범죄 경력을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가 상충한 경우(Lebach 판결[11])에 기본권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원칙으로서, 헌법의 통일성에 입각하여 규범조화의 방법으로 기본권 충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 중 일부를 양자택일하여 어느 하나의 기본권은 보호하고 다른 기본권은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고 한다. 오히려 헌법의 통일성의 원리에 따라 충돌하는 모든 기본권들을 가능한 한 모두 보호하는 조화점을 찾아 최적화(Optimierung)하여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기본권의 충돌이 있을 경우 ① 충돌하는 기본권들에 비례적으로 제한을 가하여 모든 기본권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비례적 제한의 원칙 또는 법익형량의 원칙), ② 모든 기본권들을 양립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대안을 모색하고(대안모색의 원칙), ③ 대안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후퇴시키되, 이때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과잉금지의 원칙)는 것이다. 이렇게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규범조화적 해결이론에 의하면 ① 비례적 제한의 원칙, ② 대안모색의 원칙, ③ 과잉금지의 원칙이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수설의 입장 역시 규범조화적 해결원칙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다.

(나) 국내에서의 논의

국내에서는 주로 이익(법익) 형량이론과 규범조화적 해결이론에 의하여 기본권의 충돌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먼저 권영성 교수는 첫째, 충돌하는 기본권간에 가치의 서열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형량(법익형량), 둘째, 기본권 간의 가치의 서열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본권 모두에 공평하게 제한, 셋째, 이러한 공평한 제한을 통해서도 해결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권의 효력을 모두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기본권 충돌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허영교수는 기본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첫째, 이익형량의 방법, 둘째, 상충하는 기본권들의 양립을 위한 최소한의 제약, 셋째, 상충하는 기본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의 제시, 넷째, 극단적인 최후수단의 억제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한다.

11) BVerfGE 35, 202ff.(1973), 방송사가 과거 범죄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 방영하려고 한 사건. 이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제1단계에서 방송의 자유와 인격권 중 어느 한 쪽의 헌법가치도 추상적인 차원에서 우위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구체적 형량의 제2단계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시사보도에 대하여 보도의 자유의 우위를 주장한 뒤에 마지막 제3단계에서 ① 텔레비전 방송의 반복성, ② 시사적 정보이익의 부족, ③ 중대한 범죄이면서도, ④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해하는 경우에만 보도가 금지된다고 결정하였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김수철 (2000). "放送에 의한 犯罪報道와 人格權 : 獨逸聯邦憲法裁判所 第1法廷 1973年 6月 5日 判決." 「사법행정」, 469, 9~16면, 오동석 (2005). "법원의 검열, 영화 '그때 그 사람들' 가처분 결정(2005.1.31선고 2005카합 106)." 「사법감시」, 24, 16~19면 참조

12) 대판 1988.10.11. 85다카29(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다) 국내 헌법재판소 결정의 경향

국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기본권 충돌시에 '법익형량의 이론', '기본권 서열이론', '규범조화적 방법' 등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먼저 대법원에서는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12] 법익형량의 이론을 원용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하는 사건[13]에서 '기본권 서열이론'을 원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흡연권과 혐연권은 흡연이라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과 사생활의 자유(제17조)와 생명권을 바탕으로 하는 혐연권이 충돌하는 문제로서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 그런데 흡연권은 위와 같이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는 바로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 헌법의 한 특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모든 권리의 출발점이 동시에 그 구심점을 이루는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아니할 수 없고, 이는 각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거나 "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은 이 법에 규정한 정정보도청구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목적이 정당한 것인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단 또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인격권과의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는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에 규범조화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14]

2. 기본권 충돌해결의 관점에서 본 '잊허질 권리' (언론의 자유, 또는 알권리와 인격권의 충돌의 문제)

위에서도 살핀 바와 같이 기본권의 충돌이란 서로 상이한 기본권 주체가 서로 각기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국가에 대하여 주장하는 경우이다. '잊혀질 권리'를 둘러싸고는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의 측면과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의 충돌의 문제로 다룰 수 있다고 본다.[15]

기존에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13) 헌재결 2004.8.26. 2000헌마457(금연구역 지정사건), 기각 · 합헌

14) 헌재결 1991.9.16. 89헌마165(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의 위헌성), 합헌

15) 학자에 따라서는 언론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충돌하는 사례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재진 · 구본권(2008). "전게논문", 172면 이하 참조.

문제의 핵심은 언론의 자유와 '잊혀질 권리'라는 인격권간의 이러한 추상적인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이론이 제시되어 있지 못하며, 판례 또한 전무한 상황이다.

자유의 충돌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기존에도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의 충돌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며, 당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으로는 가령 기본권서열이론, 대안식 해결이론, 규범조화적 해결이론, 인격영역이론 등 독일식의 충돌해결방법과 아울러 권리포기의 이론, 공익의 이론, 공적인물의 이론 등 미국식의 이론을 통하여 해결하여 왔다. 미국식의 이론 역시 이익형량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보면 독일식과 미국식의 해결방법은 '이익형량의 원칙' 내지 '규범조화적 해결방식'에 의한 것으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반론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을 다루는 사건에서 "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은 이 법에 규정한 정정보도청구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목적이 정당한 것인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단 또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인격권과의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는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16]라고 하여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의 규범조화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언론의 자유와 '잊혀질 권리'라는 인격권간의 이러한 추상적인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이론이 제시되어 있지 못하며, 판례 또한 전무한 상황이다.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무력화될 것이고, '잊혀질 권리'를 강조하여 언론사의 자료를 과도하게 삭제하는 경우에는 언론본연의 역사의 기록과 보존이라는 의미가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학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헌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미래법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Ⅲ.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의 '잊혀질 권리'

1. 정보의 개념

(1) '정보'와 '정보화', '정보국가'

현대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는 데 대응하여, 현대 국가는 '정보국가'로 부를 수 있다. '정보국가'라 함은 사이버 공간과 현실세계의 교차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사회를 기반으로 정보질서를 형성하는 국가이다.

정보의 개념에 대해 "양심 · 사상 · 의견 · 지식 등의 형성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라는 견해도 있고,[17] "의사형성의 기초자료"라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18] 또한 해외에서는 "사상 · 신조 · 의견 · 사실 · 감정 등

16) 헌재결 1991.9.16. 89헌마165(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의 위헌성), 합헌

개인의 정신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것"[19]이라거나,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인식형성의 원재료이며, 그것은 인간에 의하여 지각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20]

우리나라의 현행 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또한 동조 제2호에서는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의 의미는 잠정적으로 '공동체에서 생산 · 유통되어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 · 무형의 정신'을 말한다고 본다. 이 중 디지털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아날로그형 정보가 아니라 특히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으로 신속 · 광역성과 몰개인성을 지니면서 전파될 수 있는 정보 즉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2)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정보와 '관리의 대상'으로서의 정보

정치공동체 내에서 정보의 통제는 권력의 기초이자 자유의 조건이다. 공동체 내에서 정보를 누가 얼마만큼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당해 공동체의 권력구조와 국민의 자유를 결정하는 기본조건이 된다. 따라서 누가 어떻게 정보를 통제하느냐, 정보의 유통권에 대한 통제권의 장악주체가 누구이냐가 정보법질서의 핵심적인 이슈이다.

독일 기본법(Grunfgesetz)은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권을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은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인격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자유의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에 기하여 첫째,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특정 단체나 개인에 의하여 독점되어서는 안되며, 국민 누구나 널리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하며 유통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로써 공적 정보의 독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예방하고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 개인적 차원의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중시하여 정부나 기업이 디지털화된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의 정보를 무한대로 축적 · 처리 · 가공 ·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에게 그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에 대한 통제권을 일정 정도 부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 기본법상의 정보질서는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 달성을 위하여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 · 선언하면서 그 구현방법으로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의 자유'를 강조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적 성격의 정보'는 '정보

17) 권영성 (2009).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492면
18) 허 영 (2009).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545면
19) 佐藤幸治 (1983). 『憲法』, 東京: 靑林書院, 350면
20) Diesbach, Volke (1979). The Concept of Freedom of Information in International Guarantees of Human Rights, 「Law and State 91」, pp. 95.

정보사회에서 디지털 정보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정보간의 집적과 분석이 단기간에 가능해지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이다.

프라이버시' 를 강조하여 당해 정보주체에게 그 유통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까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위와 같이 두 가지의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매스미디어를 통한 '표현의 자유' 또는 '정보공개청구권' 은 최대한 보장하되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인에게 그 통제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론구성하고 있었다.

2. 현대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20세기 후반에 우리는 인류사회의 대변혁을 예고하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을 경험하였다.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한 통신기술의 놀라운 발달은 상상을 초월하는 디지털 정보사회의 출현을 알리는 시작이었다. 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과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실시간에 지구를 한 울타리에 묶어놓을 수 있는 놀라운 것이었다. 이 분야의 기술집적으로 인한 산업의 발달은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발전속도는 21세기에 와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으며, 이 세상을 유비쿼터스의 세상으로 변화시키는데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속도를 더 하고 있다. 그야말로 21세기 전자정보사회에서 인간의 생활양식은 이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변모해 가고 있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는 기술발달의 뒷받침 속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이미 현실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는 가장 큰 이슈가 될 만큼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정보의 오 · 남용과 과도한 정보유통으로 인한 국가와 개인의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으며 점차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보(화)사회는 정보가 핵심을 이루는 사회로서 기술의 혁신과 정보량의 증가로 인하여 정보의 위상 및 개념 자체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사회이다. 정보(화)사회에서 디지털 정보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정보간의 집적과 분석이 단기간에 가능해지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 판단 · 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를 말한다.

우리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근거는 여기에서 찾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는 원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문제로 다루어져 오다가 1890년 워렌 · 브랜다이스의 '프라이버시권' 이라는 논문[21]이 출간된 이래 독립적인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1965년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22]를 통해 수정헌법 제14조가 적용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사생활의 보호문제를 주로 법원의 판결로 인정해오다가 지난 1970년 민법 제9조를 개정하여 '사생활보호' 조항을 삽입하였다.[23]

현행법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6호에서

21) Warren, Samuel D., & Brandeis, Louis D. (1890).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vol.4*, p.193; 서주실 (1995). Warren · Brandeis의 The Right to Privacy. 「미국헌법연구」, 6, 45~84면 참조.

22) Griswold v. Connecticut, 381U.S.479 (1965)

'개인정보' 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의 정보화의 발전으로 인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홈네트워크의 보편화, 맞춤형행정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하여 교육 · 보건 · 환경 · 교통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지능화되고 정치적 · 문화적 소외자들이 전자화된 네트워크를 쉽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면서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적 계급의 해소 등 다양한 장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반면, 주변의 모든 사물 안에 컴퓨터 기능에 내장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인간의 모든 것을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빅 브라더(Big Brother)의 시대가 도래하고, 개인의 신상정보를 타인이 마음대로 도용할 수 있는 등 개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민감한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시켜야 함과 동시에 이렇게 합법 ·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들이 반대로 당해 개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증가하였다.

현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는 크게 ① 부적절한 접근과 수집, ② 부적절한 모니터링, ③ 부적절한 분석, ④ 수집목적 이외의 사용,⑤ 개인정보의 오류, ⑥ 부적절한 보관과 관리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가와 개별 기업들은 경제, 재정, 노동, 사회복지 및 건강, 학교제도, 교통과 환경, 국내 안전 등 국민의 생활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 막대한 양의 정보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몇 년 전 발생했던 옥션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정유회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각종 피싱과 해킹 사고로 이어지면서 전국민을 개인정보 유출의 공포로 몰아넣은 초유의 사건이다.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비롯한 제도 수립이 추진됐으나, 각계의 이익 대립으로 인해 마무리를 짓지 못하다가 최근 겨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정보와 병력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개정 및 제정도 추진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신용 정보 유출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용 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망법에 비해 보호 수준이 낮고, 평가업자에 대한 보안 조치 규정도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

23) 이상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성낙인 (2011). 『헌법학』. 서울: 법문사, 609면; 정재황 (2011). 『신헌법입문』. 서울: 박영사; 정종섭 (2011).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참조.

24) 상세한 사항은 박익환 · 장용근 (2005).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 「세계헌법연구」, 11권 2호 참조

25) 복제의 개념에 대해서는 Malkan, Jeffrey (2005). What is a copy?. Cardozo Art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p. 419 이하; 정상조 (2004). 창작과 표절의 기준. 「법학(서울대)」, 제44권 제1호, 107면 이하 참조.

26) 신문 등의 종이매체에 비교하여 인터넷상의 정보유통의 특징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재진 · 구본권 (2008). "전게논문". 178면 이하 참조.

언론사로서는 언론보도기사가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기사를 삭제 · 수정하는데 대한 법적 기준이 없으며, 이에 대한 유의미하고 적용 가능한 법원의 판례 역시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3.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 본 "잊허질 권리"

(1) 인터넷 공간의 개인화와 개인적 신변사의 공개화

인터넷 공간은 가장 표현촉진적이고 참여적인 시장이며 쌍방향적 의사표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매체로서 기존의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24] 기사의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즉 이전의 종이신문에 있어서는 인터넷상의 기사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고 이 기사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수고를 해야 하는 관계로 과거의 기사를 다시 검색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반면 인터넷상의 디지털화된 정보는 변색되지 않으며 관심의 영역에서 사라지지도 않는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보관과 복사과정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매우 손쉽게 누구나 복제[25]가 가능하고, 그 내용의 수정 및 조작, 저장이 매우 용이하며 원본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복제물의 생산할 수 있다. 또한 검색기능 역시 매우 신속하게 관련기사를 집적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과거의 언론기사가 나름대로 유통기한을 갖고 있었다면 현재에는 데이터베이스 기기의 성능이 허락하는 한 유통기한도, 정보로서의 가치상실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26]

페이스북 "사생활의 시대는 갔다" 이들 '사회관계망 자살 바이러스' 가 번져나가자, 좀 더 많은 회원들의 계정과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관계망 사이트의 반격이 시작됐다. 3억5000만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사회관계망 사이트 페이스북은 지난 4일부터 '웹2.0 자살기계' 의 아이피(IP)를 차단해,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페이스북은 계정 차단 이유를 자사의 서비스 규정과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말 세푸쿠 사이트도 차단했다. 하지만 페이스북과 달리 트위터 · 마이스페이스 등은 이들 계정삭제 대행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는 최근 "지금 다시 페이스북을 만든다면 소수의 친구에게만 허용하는 개인정보를 '모두에 공개' 를 기본으로 설계할 것" 이라며 "지난 몇 년간 (사생활 공개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바뀐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외신들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을 '프라이버시의 시대는 갔다' 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정보검색의 특징에 의해 과거 인쇄매체시대에는 과거의 기사로 인해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는 한시적이었으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져 가게 되는 구조였다. 반대로 현재 인터넷 시대에는 과거의 기사로 인해 보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검색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킬 수 있는 소위 '신상털기' 가 가능해지게 된다.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사이버공간에서 영구히 유통될 것이라는 의식 없이, 필명이나 아이디를 써 '익명' 이란 생각 아래 자신의 경험이나 거주지 · 학교 · 직장 · 친구에 관련된 글을 다양한 사이트에 짧게 올렸는데, 검색을 통해 이를 종합하면 자신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완성해 신원 파악을 하는 '프로파일링' 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이 받는 정신적 피해는 스스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매우 심

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론 또는 방식을 통해서도 이를 구제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론사로서는 언론보도기사가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기사를 삭제 · 수정하는데 대한 법적 기준이 없으며, 이에 대한 유의미하고 적용 가능한 법원의 판례 역시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다른 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인정보의 보호를 시도하고 있다.

(2) 개인적 차원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

미국의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에 남긴 흔적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 가 활동하고 있다. 라이프인슈어드닷컴(www.lifeensured.com)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운영진은 인터넷 인생을 마감해주는 디지털 장의사를 표방하고 있다. 운영진들은 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300달러를 내고 사후에 자신의 인터넷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유언 형태로 남긴 후 회원의 사망신고가 행정안전망을 통해 접수되면 회원이 생전에 요청한 대로 인터넷에서의 모든 흔적을 대신 삭제하는 대행업무를 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친구나 친지들에게 e메일을 통해 당사자가 유언으로 해당글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고지할 수도 있고,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둔 사진을 삭제해주고 친구들 페이지에 남긴 댓글까지도 일일이 찾아 지워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경우는 아직은 사망시에 한정된다는 점, 자신의 사이트는 스스로 폐쇄하거나 정보를 삭제할 수 있지만 타인의 사이트에 게재된 댓글이나 사진 등은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자발적인 삭제를 전제로 하고 있어 법적 의미에서 보면 강제력은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더욱이 정보를 삭제하기를 요청한 상대방이 언론기관인 경우에는 언론의 본질적 속성상 당사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를 삭제해주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지난 2009년 독일에선 범죄자들이 위키피디아를 상대로 자신들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다. 올해 초 스페인에선 소송을 진행 중인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쓰인 뉴스기사의 링크를 삭제해달라고 구글에 요청하기도 했다.

(3) 국가적 · 법적 차원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right to be forgotten (잊혀질 권리)' 를 법제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유럽평의회(EC)는 지난 2010. 4. 11 유럽평의회의 명의로 유럽의회, 평의회, 경제 · 사회이사회와 종교이사회에 보내는 "유럽연합 내에서의 정보보호에 대한 포괄적 접근(A comprehensive approa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이라는 결정문[27]을 통해 EU 각국이 '잊혀질 권리' 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27) COM(2010) 609, 2010.4.11, Brussels.

28)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10.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OJ L281, 23.11.1995, p. 31). See the Study on the economic benefits of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London Economics, July 2010 (http://ec.europa.eu/justice/policies/privacy/docs/studies/final_report_pets_16_07_10_en.pdf), p.14 참조.

29) EC, "A comprehensive approa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 COM(2010) 609, 2010.4.11, Brussels.

30) 기사원문에서는 '권고' 아니라 '경고(warning)' 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아마도 레딩(Reding)의 권고가 매우 강력한 것이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Telegraph, 2011.3.17, (http://www.telegraph.co.uk/technology/internet/8388033/Online-right-to-be-forgotten-confirmed-by-EU.html)

유럽의회(EC)는 이 결정문에서 그동안 EU각국은 지난 1995년 정보보호지침(1995 Data Protection Directive)[28]이래로 '기본권과 개인의 자유의 보호(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individuals)' 특히 '정보보호에 관한 기본권(fundamental right to data protection)과 아울러 내국시장에서의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의 확보(achievement of the internal market – the free flow of personal data)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정책을 표방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위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으로써 정보보호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한다.

이 결정문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현재 기술이 개인들에게 그들의 행동과 성향을 쉽게 공유하게 하고 그것을 공개적이고 전 세계적으로(publicly and globally) 전례 없는 규모로(unprecedented scale)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결정문에서는 장차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통하여 자신의 정보가 다른 누군가의 하드웨어에 저장되게 되어 더욱 큰 침해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므로 정보보호기관, 사업자, 개인 등에 대해 1995년 정보보호지침에서와는 다소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 법적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29]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규제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켜 '잊혀질 권리' 를 도입하고자 하는 결정문과 이를 통해 실제로 법제화를 시도하는 배경에는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고려에서 뿐만이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을 통해 점점 강화 · 확대되는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EU국가들의 고뇌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EU 통신위원인 비비안레딩(Vivian Reding)은 작년(2010년) Facebook사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을 경고(warning)[30]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레딩(Reding)위원은 "미국에 기반한 소셜네트워크회사들을 유럽의 수백만의 사용자들에게는 EU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측의 기사에 의하면 이 결정문의 의미를 "페이스북과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들이 좀 더 강한 정보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면 사용자들에게 자신들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새기고 있다.

즉 현재 EU국가들이 인터넷상의 '잊혀질 권리' 를 주장하면서 '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 의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을 넘어 인터넷을 통한 미국문화의 정치적 · 사회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를 경계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향후 미국회사들이 주도하게 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보편화되면 유럽의 주요기업들의

31) 이상에 대해서는 한국경제, 2011 .5. 24 참조.

32) "최근 KT의 이석채 회장과 일본 야후의 손정의 사장은 일본지진을 계기로 야후의 정보를 KT의 서버에 저장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개시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의하면 700억원 규모의 합작회사 'KT · SB 데이터서비스' (가칭)를 설립한다.

이 서비스는 일본의 대지진을 계기로 자연재해로 데이터센터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일본 기업들의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두고 센터의 운영은 KT가 전담하기로 했다. 소프트뱅크는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관련 상품 판매를 맡는다.

일본 정부의 '전력 사용 제한령' 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7월부터 전력 사용량을 15% 감축해야 한다. 특히 KT의 데이터센터는 전력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서버 집적도는 50배 이상이며, 가격도 절반 이하로 저렴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합작회사는 KT가 51%, 소프트뱅크가 49%의 지분을 소유한다. 합작회사는 올해 10월까지 6000K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경남 김해에 있는 KT 연수원 부지에 건립할 예정이다. 6000KW는 서버 1만 대를 운영할 수 있는 규모. 서버 1대로는 PC 약 70여 대를 구동할 수 있다고 한다. 2012년 상반기에는 이 데이터센터를 2만KW로 증설한다. 업무용 PC프로그램을 KT의 공동 서버에 저장해 놓고 필요에 따라 꺼내 쓰는 데스크톱 가상화(VDI) 서비스도 시작한다." 중앙일보 2011. 5. 31에서 발췌 · 정리

향후 유럽연합(EU)에 참여하고 있는 각국은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 역시 EU국가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거나 오히려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하여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가 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서버에 저장되게 되는데, 이 경우 자칫 유럽 각국의 주요정보가 통째로 미국에 넘어가게 될 지도 모른다는 문제의식의 표현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유럽연합에서의 정보보호 주권 주장이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의 근거마련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존립과 국부유출방지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유에서건 향후 유럽연합(EU)에 참여하고 있는 각국은 지난 2010년의 결정을 근거로 하여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잊혀질 권리'는 단순히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의한 EU국가의 국부유출방지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내지 이론적 근거로 원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2011년 5월 26일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잊혀질 권리를 주제로 삼기도 했으며,[31] 스페인, 영국, 독일 등 상대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정책을 표방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는 조만간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EU국가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거나 오히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하여[32]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한국통신(KT)와 야후(Yahoo)의 경우에는 일본의 데이터가 KT의 서버에 저장되는 경우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정보가 해외 유수의 데이터운영회사에 집적되는 형태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정보보호의 입법보다 시간적으로나 내용면에서 앞선 입법이어야 할 것이다.

Ⅳ. 나가는 말: 문제해결의 정책적 필요성과 법이론적 어려움의 모순

이상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보도와 이의 집적을 통한 개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잊혀질 권리'의 도입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의 수집 · 관리 · 이용이 대량적 ·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이용하는 방식도 매우 다양해지고 편리해졌다. 인터넷이라는 전 세계적인 정보망은 우리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향후에도 이를 통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창출될 것은 확실하다. 특히 정보의 이용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매체를 뒤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간단한 조작과 검색을 통해 실시간으로 집적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편리함을 만끽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간 검색'과 정보의 집적으로 인한 편의 못지않게 사생활 노출과 과도한 가상세계 몰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여야만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역사적으로 기술 · 보관해야 하는 언론기관의 입장에서는 개인관련적 정보를 과도하게 삭제하는 경우에는 언론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종래의 법학이론은 주로 언론이 잘못된 기사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이를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통하여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정치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절차를 마련하는 데에는 유용하였다. 그런데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이론은 법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기사를 본인의 요청에 의해 삭제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 등의 판례의 집적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의 정립도 시급할 것이다.

또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유럽연합의 사례에서 보듯이 '잊혀질 권리'의 입법화논의는 단순히 언론기관의 개인관련기사를 삭제할 것인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미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이 활성화되는 미래 미디어환경에서는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므로 의외로 개인정보분야에서 먼저 논의되고 입법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법학은 물론이고 언론학적 측면에서의 성과도 입법화 논의에 크게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철 (2000). 放送에 의한 犯罪報道와 人格權 : 獨逸聯邦憲法裁判所 第1法廷 1973年 6月 5日 判決. 「사법행정」, 469.
- 명재진 (1998). 예술의 자유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의 변화. 「판례월보」, 328.
- 박익환 · 장용근 (2005).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 「세계헌법연구」, 11권 2호.
- 서주실 (1995). Warren · Brandeis의 The Right to Privacy. 「미국헌법연구」, 6.
- 성낙인 (2011). 「헌법학」. 서울: 법문사.
- 오동석 (2005). 법원의 검열, 영화 '그때 그 사람들' 가처분 결정(2005.1.31선고 2005카합 106). 「사법감시」, 24.
- 이재진 · 구본권 (2008). 인터넷상의 지속적 기사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 「한국방송학보」, 22-3.
- 정상조 (2004). 창작과 표절의 기준.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1호.
- 정재황 (2011). 「신헌법입문」. 서울: 박영사.
- 정종섭 (2011).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 Warren, Samuel D., & Brandeis, Louis D. (1890).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4.
- EC, 『A comprehensive approa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 COM(2010) 609, 2010. 4. 11, Brussels.
- Leutheusser-Schnarrenberger, Sabine (1996). Urheberrechts am Scheideweg?-von der politischen Verantwortung für Urheber. ZUM 40, S. 631ff.
- Malkan, Jeffrey (2005). What is a copy?. Cardozo Art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 Müller-Hengstenberg, Claus D. (1999). überfordert die IT Technologie die Rechtssysteme?. ZUM 43, S. 214ff.
- Schippan, Martin (2003). Urheberrecht goes digital-Das Gesetz zur Regelung des Urheberrechts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ZUM 47, S. 378ff.
- von Bonin, Andreas/Köster, Oliver (1997). Internet im Lichte neuer Gesetze. ZUM 41, S. 821ff.
- Wagner, Axel-Michael (2004). Quo vadis, Urheberrecht?. ZUM 48, S. 723ff.

연구논문

법원판결과 언론환경의 변화

– 1980년대 이후 변환과정의 역사적 고찰

PAC

법원판결과 언론환경의 변화

– 1980년대 이후 변환과정의 역사적 고찰

함석천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Ⅰ. 들어가면서

우리는 언론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정보를 얻는다. 1990년대 들어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 곳곳에 남아 있던 군사정부의 잔재들이 청산되기 시작하고, 다양한 시민운동이 전개되면서 언론환경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잔뜩 웅크렸던 각계각층의 욕구가 일시에 터져 나오면서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희망이 함께 하는 활기찬 사회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네티즌이라고 자부하는 사회가 도래했다. 정보가 넘쳐나고 그 정보의 양만큼이나 다양한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울려 퍼진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숨 가쁜 변화 속에서 살다가 종종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가 왜 필요한지, 인격권 보호는 왜 또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는 한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 뒤에서 고개를 드는 그 동안의 변화과정이 떠오른다. 다시 방향감을 잡고 맥을 짚어볼 수 있다.

2002년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 ·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 제기는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그리고 어떠한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등).

이 판례 문구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언론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고 있음을 뜻한다. 필자는 2002년 대법원 판결을 보기 전까지 미국에서 말하는 '현실적 악의론'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론처럼 여겼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론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

법원 판결은 1980년대, 199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가 겪어 온 다양한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의 기준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돌아보는 언론환경 변화, 그리고 그 환경을 반

영하거나 때로는 방향을 정해주기도 했던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갖추어 놓은 기반이 앞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더 발전해 나갈 것임을 직감하게 될 것이다.

"1980년 언론통폐합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던 언론기본법이 1987. 11. 28. 폐지되면서 정기간행물, 방송 등 언론매체별로 개별법을 두어 언론제도를 다지던 시기였고, 언론, 특히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가던 시기였다."

Ⅱ. 1980년대 – 언론분쟁의 민사적 해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1.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소송은 크게 민사와 형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사사건은 국가 공형벌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 시민이라면 형사보다는 민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자유'를 논하는 데에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이 판결 전까지 명예훼손은 대체로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졌다. 그리고 민법에는 형법 제310조와 같이 표현행위가 공공성을 가지고 진실성이 있는 때에는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힌 규정이 없다. 대법원은 이 판례를 통해 명시적으로 이러한 형법 규정, 그리고 상당성의 범위를 확장한 법이론이 민사사건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선언한 것이다.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라는 표현은 이와 같은 배경을 반영한다.

이 판결은 1988년에 선고되었다. 이 시기는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 정권이 바뀌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맞아 개방과 국제화 물결이 넘치던 시기였다. 언론제도 측면에서 볼 때 1980년 언론통폐합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던 언론기본법이 1987. 11. 28. 폐지되면서 정기간행물, 방송 등 언론매체별로 개별법을 두어 언론제도를 다지던 시기였고, 언론, 특히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가던 시기였다. 경직된 사회에서 개방되고 윤택한 사회로 전환해 가면서 형사처벌보다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민사소송이 분쟁의 해결방식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판결을 전후한 시기에 확실히 형사보다는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 판결은 이러한 언론환경 전환기에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조정", 이 판례에 등장하는 이 표현은 언론 관련 법이론을 형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념의 기술이다.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조정은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위자료 산정, 공공성과 상당성에 기초한 위법성조각, 방송 · 출판금지가처분 등등 언론에 특유한 각종 법제도와 사건해결을 위한 기본이념으로 작용한다. 이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가 대립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할지 명백하게 밝힌 셈이다. 무엇보다 언론분쟁의 민사적 해결을 확대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 판결은 당시의 언론제도, 사회적 배경을 고스란히 담아낸 매우 의미 있고도 중요한 판례이다.

Ⅲ. 1990년대 – 인격권의 신장 상당성(확인절차)의 강화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보도를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진실성이 증명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확인되지 않은 유명 연예인의 접대행위에 관하여 수사기록을 보고 얻거나 담당 검사로부터 들은 정보만을 근거로 다른 확인절차 없이 일간신문에 허위기사를 게재한 사안에서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언론보도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책임 성립 요건: 피해자의 특정 + 구체적 사실의 적시
〈원고 주장 • 입증〉

그리고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이 명시한 위법성조각사유 즉, 언론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되더라도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지지 않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위법성조각사유: 공공성 + (진실성 OR 상당성)
〈피고 주장 • 입증〉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은 "[보도가 진실이라고 하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이 판결은 확인의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언론보도가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라도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진실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것이 진실이었는지 확인하는 노력은 다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 이유는,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이 말하는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보도와 관련해서]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고 언론시장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언론사들이 경쟁의식 속에서 신속성을 내세워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보도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그런데 언론보도의 신속성 옆에는 그에 못지않게 진실성, 공공성도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언론의 전파력과 영향력, 그리고 독자들이 보도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까지 함께 생각해 보면, 신속성만을 내세워 먼저 보도하고 보자라는 인식은 확실히 균형을 잃은 태도이다. 1990년대 언론 관련 판결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언론의 여러 속성을 서로 대비해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가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접점을 찾아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진모양 사건')을 전후해 언론의 보도태도나 취재기준은 확실히 달라졌다. 사실 그 전까지는 수사기록과 담당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쓰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기자들은 검사, 그리고 국세청과 같은 국가기관처럼 확실한 취재원, 그리고 정보원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누구를 믿고 취재하라는 이야기냐고 반문하는 기자들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어떠한가? 지금의 기자들은 수사기록과 담당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만 가지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당사자 본인(진짜 진모양)에게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수사기록에 나온 피의자(가짜 진모양을 수첩에 올린 피의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라도 거쳤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 확인절차를 거쳐야 공적인 보도업무를 담당하는 기자로서의 소임은 다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이와 같은 기자의 사회적 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 국가기관 등의 공적인 기관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판례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공기관이 발표하는 자료에 기초해서 보도자료를 과장, 윤색 없이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는 상당성을 인정하고 언론사의 책임을 부정했다. 이러한 사례로는 통조림 포르말린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4390 판결, 같은 날 선고 2003다24406 판결은 최종 수사를 담당한 기관이 속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반면, 그 수사기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언론사들이 국가기관의 비공식이 아닌 '공식' 보도자료와 그에 대한 '공식' 일문일답에기초해기사를작성한경우에면책되었다고하는점이다.

Ⅳ.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며 다양한 인격권의 발현과 사간의 분쟁

1990년대 말까지 인격권 보호를 위한 기준이 대체로 정립되었고, 언론기관들도 그 기준에 따라 보도형태를 다듬어 나갔다.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법리는 1990년대 말까지 대부분 정리가 끝난 상태였다. 인격권 보호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어 기본 골격을 갖춘 후로는 2000년을 전후해 보도의 공공성에 관한 논쟁,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논쟁, 공직선거에서 상호비방의 한계 등 다양한 쟁점이 각론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통합법을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되어 가칭 '언론피해구제법' 의 제정이 검토되었다. 언론피해구제법은 2005년 당시 개혁입법 가운데 여야가 유일하게 합의하여 제정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언론피해구제법' 으로 약칭)로 이어진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주목할 만한 언론환경의 변화는 명예훼손에 국한해서 전개되어 오던 인격권의 대상이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 음성권 등으로 다양하게 펼쳐졌다는 점과 2000년 이후 언론사끼리의 분쟁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1990년대 후반 이전까지는 언론분쟁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만을 떠올렸다.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 음성권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주목할 만한 언론환경의 변화는 명예훼손에 국한해서 전개되어 오던 인격권의 대상이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 음성권 등으로 다양하게 펼쳐졌다는 점과 2000년 이후 언론사끼리의 분쟁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등도 모두 인격권의 하나이지만, 이들 권리는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별도로 침해를 주장하지 않거나 명예훼손에 흡수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부터 명예 외의 인격권 침해가 독립한 분쟁의 대상이 되었고, 언론분쟁의 원인도 다양하게 전개되기 시작한다. 한 번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1억 원을 선고하는 판결[1]이 나왔고, 유명 연예인의 여동생이 사실은 딸일지 모른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사로 작성하면서 그 사진을 함께 게재한 경우[2], 그리고 원고가 특정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목적으로 원고의 사진을 그 특정인과 나란히 게재한 경우[3]에 명예와 구분하여 초상권을 독립한 인격권으로 다루었으며, 명예훼손과 함께 음성권의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명예훼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동의 없이 녹음한 전화통화를 그대로 방송한 부분에 대하여 음성권 침해만을 인정한 사례[4]도 있었다. 현재까지 초상권 등 명예 외의 다른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이한 그 사람만의 유명한 캐릭터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퍼블리시티권의 논의도 이러한 추세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2005년 제정된 언론피해구제법 제5조는 타인의 생명 · 자유 · 신체 · 건강 · 명예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초상 · 성명 · 음성 · 대화 · 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등에관한권리를 '인격권'이라고정의하였다.

사람이 가지는 '인격가치'는 실로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다. 인격권 뿐만 아니고, 자신이 지닌 상품성 있는 가치를 시장에 내어놓고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가격을 매기고, 이것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면서 그 수익을 얻고자 하는 시도도 한창이다. 필자는 이를 '인격영리권(人格營利權)'이라고 부르고 싶다. 연예인이 초상권과 그 부대사업에 관한 권리를 출자해서 회사를 차리고 그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도 있다. 아직까지 인격가치를 이렇게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게 하는 좋은 실례이다. 이런 변화가 이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한류(韓流)'가 시작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이 시기에는 그 이전에 볼 수 없던 특이한 분쟁형태가 생겨났다. 언론사끼리 다투기 시작한 것이다. 그 전까지의 언론분쟁 해결의 틀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정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런데 영향력 있는 매체를 소유한 언론사끼리의 분쟁에는 이와 같은 조정의 구도가 딱 들어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대전제는 '무기대등(武器對等)의 원칙'이다. 매체를 보유하지 못한 시민이 매체를 보유한 언론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반론을 무료로 실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언론사끼리는 어떠한가? 매체를 보유한 언론사는 스스로 자신을 항변할 수 있지 않은가? 이와 같이 매체를 보유한 언론사끼리의 분쟁은 기존 언론의 자유와 인격

1) 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641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5. 31. 선고 2000나11081 판결로 항소기각되어 확정.
2) 서울지방법원 1997. 2. 26. 선고 96가합3122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9. 30. 선고 97나14240 판결에 의해 일부 청구인용금액 감액되어 확정.
3) 서울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7가합88220 판결, 항소취하간주로 확정.
4) 서울지방법원 1999. 7. 7. 선고 98가합519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3. 9. 선고 99나43440 판결로 항소기각되어 확정.

권 보호의 균형 구도, 그리고 반론보도청구권의 존재 이유가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이 시기에 언론사끼리의 분쟁에 관하여 판단한 첫 사례는 서울지방법원 2001. 3. 21. 선고 99가합 96928 판결이다. 이 사건은 원고 일간신문사 사장의 탈세와 구속에 대하여 원고 신문사가 취한 보도태도를 피고 신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신문사들의 보도태도가 일관되지는 않았고, 시민단체들은 탈세와 언론통제는 별개 문제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피고 신문사가 원고 신문사의 보도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원고 신문사는 피고 신문사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신문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소송결과는 일부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만 인정되어 제1심에서 3,000만 원이 인정되었다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1. 12. 20. 선고 2001나 24145 판결에 의해 1,000만 원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줄었고, 그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정정보도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판단내용이 나온다.

서울지방법원 2001. 4. 11. 선고 99가합96928 판결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서 언론사들은 이를 통하여 국가기관, 단체, 개인에 대하여 비판적 기능, 경고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기관은 전체를 하나로 보아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는 하나, 기실 수많은 언론사에 의해 이루어진 집단으로 그것이 하나의 통일적 단체로서의 성격을 띤 것이라기보다는 개개 언론사의 단순한 집합체로 보여지고, 그 구성원인 개개 언론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라는 속성을 함께 띠고 있다.

통상 이러한 영리추구가 공익적인 목적보다 우선되었을 때 언론사의 책임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책임은 언론사에게 책임을 묻는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존부 및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바, 일반적으로 개인에서 공적인 단체로 대상이 옮아감에 따라 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좁아지게 될 것이다.

그 상대방이 같은 직역에 해당하는 언론사인 경우에는 어떤가?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의 수인범위도 그 만큼 넓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비판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여 주는 것과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다. 이러한 언론사간의 광범위한 상호비판은 언론의 부패를 막는 내재적인 안전반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언론사가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거기에는 당연히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 국민들이 분별하여 취사, 선택함으로써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견의 공급자인 언론사가 각자 독자적인 태도와 입장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도리이고, 또한 언론사 사이에 있어, 상대방의 태도나 입장이 자신과 다를 때 올바른 여론형성의 틀을 깨트리지 않는 한 이를 비판하여 견제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또 이러한 비판은 폭넓게 수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개개의 언론사가 공급하는 다양한 의견을 타 언론사에 의한 비판과 함께 접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언론사 상호간의 법적인 책임은 이러한 언론사 고유의 속성을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이 판결은 언론사간의 소송은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를 보유한 기관끼리의 다툼이고, 사적인 영역보다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다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반적으로 개인에서 공적인 단체로 대상이 옮아감에 따라 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좁아"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 글에서 언론사끼리의 분쟁과 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판단내용을 그대로 옮긴 이유는 다음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리 언론판례의 가장 큰 변화를 말하고

자 함이다. 언론사끼리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1심 판결이 들었던 이유는 재미있게도 그 무렵에 폭증하기 시작한 "공인(公人)"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 든 이유와 매우 흡사하다. 우리 언론환경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시작되었다.

Ⅴ. 2000년대 언론의 자유 신장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1.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과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다.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이 생존함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의 부합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까지 완전히 객관적 진실과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안된다.

2.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3.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 ·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

공인(公人)으로 분류되는 사람이나 기관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온 것이 근래에 있었던 일만은 아니다. 그 동안 언론보도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 소송을 이용한 공인의 부류를 보면 대통령, 전직 국무총리, 장관, 검사, 군장성, 도지사, 경찰 등 고위 공직자의 거의 전 부문을 망라한다.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학교법인, 종교인, 대학교수와 연예인이나 방송인,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언론이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근거 없는 보도를 일삼는다는 의견부터, 비판이 중심 기능인 언론에 대해 권력기관이 소송으로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비판까지 여러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 대법원은 2002년을 전후해 공적인 논쟁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와 비판은 언론의 핵심기능이라는

"대법원은 2002년을 전후해 공적인 논쟁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와 비판은 언론의 핵심기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점을 강조하며 공적인 논쟁과 공인에 대한 보도에 관해서는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올바른 정책 결정과 감시를 위해 개인의 인격권 보호보다는 언론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밝혔다.

"숨 쉴 공간" – 민주주의를 갈구하며 현대를 살아오는 시민들이 너무나도 바라던 말이다. 필자는 이 말이 대법원 판례에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우 고무되었다. 그리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이라는 말 역시 언론발전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말이다.

1919년 Abrams v. United States[5] 사건에서 미국연방 대법원의 홈즈(Holmes) 대법관이 반대의견에서 '사상의 자유시장(free trade in ideas)' 을 이야기했고, 곧이어 홈즈와 브랜다이스(Brandeis) 대법관은 다른 대법관들에 대한 설득 과정을 거쳐 같은 해 선고된 Schenck v. United States 사건[6]에서 간첩법(Espionage Act of 1917)과 관련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기준(clear and present danger test)' 을 제시하였다. 홈즈와 브랜다이스 재임 시절 활발히 논의되던 표현의 자유는 제2차 세계대전과 매카시즘(McCarthyism)으로 대변되는 냉전의 영향으로 소강기를 맞았지만, 1962년을 전후해 매카시즘이 쇠락할 무렵, 워런(Warren)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다시 큰 화두로 등장하게 된다. Speiser v. Randall 사건[7]에서 언론의 위축효과(chilling effects)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적이 있는데, 그 후 1963년 NAACP v. Button 사건에서 미국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는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 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1964년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에서 위축효과를 더 진전시켜, 공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후에 그 비판이 진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비판 대상으로부터 제소당할 위험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의 압박 때문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 다음,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공적인 인물을 비판한 언론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하였다.

2002년 공적인 사항, 공인에 대한 언론의 비판 · 감시 기능을 강조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세계에서 언론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다는 미국의 경험을 그대로 압축해 놓은 느낌이다. 우리도 이제는 명실 공히 사상의 자유시장을 이야기하고, 위축효과를 말하며, 숨 쉴 공간을 요구하고, 공인을 비판하는 언론이라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함부로 그 책임을 논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언론의 자유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가 이처럼 빨리 성장하고 법원이 사회 구성원의 요구를 이렇게 빨리 반영하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앞에서 든 두 판례는 모두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들이다. 언론의 자유, 그리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해준 사례들이다.

5) 250 U.S. 616 (1919).
6) 249 U.S. 47 (1919).
7) 357 U.S. 513 (1958)

Ⅵ. 현재 – 매체의 융합과 다양한 기준의 등장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 · 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 · 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 · 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업자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 ·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0년대 들어 언론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터넷' 이다. 인터넷신문이 종이지면을 대신하면서 구독률, 도달률 등으로 점쳐지던 신문의 영향력에 지각변동이 생겼고, TV 역시 기존 TV 수상기뿐만 아니고, 인터넷방송, IPTV 등등 인터넷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영역이 생겨나면서 활동분야가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매체의 변화와 혼합 현상이 생기고, 올 12월 31일을 끝으로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이 송출을 중단하게 되다 보니 지금 언론시장의 관심은 매체의 융합에 쏠리고 있다. 최근에 진행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논의도 이와 같은 현상을 반영한다. 최근에 있었던 언론과 관계된 몇 가지 흥미로운 사회현상을 살펴본다.

○ 인터넷 포털업체가 언론사인가?

이 질문은 언론학계와 관련 법령 제 · 개정 과정에서 등장한 2000년대 중요한 화두의 하나였다. 그리고 앞에서 든 사례가 이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안이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인터넷 포털업체, 좀 더 크게는 Online Service Provider(OSP)가 언론이냐라는 질문이 나오지는 않는다.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 of 1998 제2장,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에서 OSP의 책임제한에 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기준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OSP는 법률이 정한 notice and take down 조치만 취하면 면책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주체 또는 공모자나 방조자로서의 포털업체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규정은 주로 저작권 침해의 주장에서 OSP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safe harbor 조항이지만, 이 기준은 누군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 포털업체는 뉴스제공업체와의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만 뉴스를 올리는 것으로도 알려진다.

그럼 이 논쟁이 우리나라에서 치열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포털업체가 가판대 역할을 넘어 제목을 취사선택하고 기사를 선별했기 때문이다. 이는 보도편집에 해당한다. 그런데 포털업체는 취재를 하지 않고 기사를 생산하지 않는다. 포털업체의 위치가 참으로 애매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논쟁이 붉어진 것이고, 업계가 바라고 있던 이 사건의 판단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 포털업체가 언론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판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도 아니다.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 판결이었고, 공개변론을 거쳤다. 당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는 인격권 침해에 관한 여러 이론을 설명하고 주장했고, 피고 포털업체 측에서는 미국의 DMCA 스타일의 면책론을 펼쳤다. 결국, 이 판결은 일반 민법의 불법행위 요건에 약간의 새로운 법리를 가미하여 인터넷 포털업체에 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판 글을 방치한 책임을 물었다. 이 사건 선고 후에 대부분의 포털업체들은 기사를 소개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 사건은 가장 최근에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사안이고, 이 판결로 인해 업계의 뉴스소개 형태가 바뀌었다. 이제는 인터넷 포털업체를 언론사냐고 묻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 인터넷신문사는 신문사인가?

이 질문 역시 2000년대 초반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종이신문 없이 오로지 인터넷으로만 발행하는 신문의 등장. 당시 기존 언론사들은 이러한 현상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2005. 1. 27. 전부개정 되어 그 이름을 바꾼 것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신문법' 으로 약칭)이다. '정기간행물' 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신문 자체는 '정기간행물' 범주에 포함시키기가 곤란하다. 하지만 이 논쟁은 그다지 오래 가지 않았다. 2005년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이 인터넷신문을 신문의 범주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정기간행물' 이라는 표현이 '신문 등' 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방송과 정기간행물로 대별되던 언론시장에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신호탄이기도 하다.

○ 방송과 신문 이분법?

우리는 '언론' 하면, 방송과 신문을 떠올려 왔다. 1980년 제정된 언론기본법이 1987년 폐지되면서, 매체별로 법률을 나누어 방송법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후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법 외에도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정기간행물 분야에서는 2005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신문법으로 전부개정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송과 신문으로 대별되는 언론매체의 분류가 그대로 유효한가? 굳이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론매체의 통합현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지금 방송법과 신문법, 그리고 언론피해구제법을 펼쳐보면 매체의 종류가 실로 다양하다. 방송법에서 말하는 '방송' 에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 있고, 방송사업자는 지상파, 종합유선,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등이 있으며, 방송유형별로도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전광판방송 등등 매우 다양하다. 언론피해구제법은 신문법이 정한 각종 신문들,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도 법률의 포섭대상으로 넣어두고 있다. 여러 기준에 의한 분류가 가능한 이상 이 가운데 무엇이 언론인가 하는 논쟁은 그다지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매체의 다양성만 보아도 현

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은 과거 10년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언론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2012. 12. 31.을 끝으로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은 막을 내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 12. 31. 종합편성 · 보도전문채널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엄격히 제한되던 언론겸영을 완화하고 매체통합을 통해 보다 큰 시장을 바라보는 글로벌 언론기업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언론시장의 독과점 형성과 자본유입에 따른 왜곡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금 그 반향과 성과를 감히 짐작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우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신문, 방송 등의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디지털방송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가 처음은 아니다. 2010년 말까지 OECD 국가 가운데 14개국이 디지털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매체영향력지수 개발을 위한 이론 역시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 꾸준하게 발전해 왔다. 그런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언론매체융합 과정에서 논의되는 언론과 통계이론, 그리고 지수산정에 관한 기준을 보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 부분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글로벌 미디어업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그러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감할 수 있다. 무척 흥미로운 현상이다.

Ⅶ. 마치며

지금까지 법원 판결이 언론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 왔는지 살폈다. 1980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30년 넘는 세월이 흘렀다. 군사독재를 벗어나 문민정부를 거쳐 언론이 '숨 쉴 공간'을 찾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다. 앞으로 판결이 언론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예측할 수는 없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

은, 그래도 법원 판결이 언론환경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왔다는 점이다. 높은 시민 의식과 힘겨운 노력으로 가꾸어온 우리의 언론의 자유를 계속 잘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

지역토론회 (제주)

"제주지역 조정신청대상 보도기사의 뉴스구조 특성"

위원회는 올바른 언론문화 정착과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지난 5월 13일 제주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제주지역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각계에서 약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낙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가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제주중재부에 접수된 조정대상 기사의 뉴스구조 특성을 분석, 주제발표를 하였다.

일 시 2011년 5월 13일(금) 10:30 ~ 13:30

장 소 제주 KAL 호텔 (2층 그랜드볼룸)

발 제 자 최낙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사 회 자 부상준 (제주중재부장,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편집자 주 – 다음은 주제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주제발표문 원문은 위원회 홈페이지 (www.pac.or.kr) '정보자료실(각종자료)' 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Ⅰ. 서론

언론중재위원회의 존립목적은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에 있어 부정적인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면이 다분히 많았다. 언론중재위가 언론피해자의 권익에 기여하고, 예방효과 측면에서 언론보도의 질적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잘못된 언론보도는 언론중재위의 존립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탐색은 언론중재위의 존립목적을 강화하고, 필요악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그간 언론중재위에서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이 되었던 기사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언론보도의 피해를 가져온 뉴스사례의 뉴스생산 과정과 잘못된 관행들을 지적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조정 및 중재 대상 기사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제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지역에서 조정 및 중재 신청 대상이 되었던 뉴스기사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독자적인 자기 점검의 의미에서 제주지역 뉴스보도의 특징과 그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제주지역 언론은 지역 나름의 특수성과 관행이 매우 강한 곳인 만큼, 그 해결책도 제주 안에서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모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제주지역에서의 실험적, 시험적 연구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전체 기사를 가늠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의 보편적 기여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제주도에서 조정 및 중재 신청의 대상이 되었던 뉴스기사 연구가 전국에서 이루어진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 기사의 특징과 그 문제점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연구는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 기사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거나, 중재위의 결정에 대한 판단의 적절성을 논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음을 밝혀 둔다. 이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이 되었던 보도기사의 뉴스구조 특성을 살펴보는 것에 직접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분석대상 기사의 시시비비나 중재의 결정에 대한 판단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데이터에 의해서 설명가능한 부분으로 극히 제한하였다

Ⅱ. 연구문제

언론조정신청대상이 된 보도기사들의 뉴스구조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조정신청대상 기사의 뉴스구조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1-1. 중심주제 유형은 어떠한가?

1-2. 보도행태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보도행태의 차이는 '리드(lead) 기사의 가치적 술어 사용여부', '보도태도의 차이', '의견제시 유형의 차이'에 대한 검증으로 이루어졌다.

1-3. 정보인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보인용은 정보원 출처 활용 수, 실 · 익명 처리, 정보인용 출처 명확 여부, 제목인용과 본문과의 일치여부에 대한 검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문제 2】 청구항목별로 기사의 특성은 어떻게 나

타나고 있는가?

2-1. 매체유형별로 청구항목과 피해유형은 어떠한가?

2-2. 연도별 청구항목은 어떠한가?

2-3. 청구항목별 피해유형, 신청인유형, 의견제시 유형은 어떠한가?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는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 접수된 제주지역 모든 매체의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중재위에 접수된 제주지역 매체의 조정신청건수는 175건이었으나, 실제 기사 수는 129건이었다. 이는 하나의 기사에 병합청구가 이루어졌거나, 동일 매체의 동일 기사가 다른 신청인에 의하여 청구된 경우를 하나의 기사로 집계한 결과이다.

2. 측정항목

연구대상 기사의 뉴스구조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항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측정항목은 ①매체유형 ②기사유형 ③신청인 유형 ④기사의 중심주제 ⑤정보인용 유형 ⑥기사의 보도행태 ⑦청구항목 및 피해유형 등 크게 일곱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Ⅳ. 연구결과

1. 연도별 기사건수 변화 및 청구 매체유형 특성

(1) 기사건수

제주중재부는 1989년도부터 중재업무를 시작하였다. 198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언론중재위 통계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 조정청구는 175건이며, 실제 기사건수는 129건이었다. 조정청구와 기사건수의 차이는 일부 기사에서 병합청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체 129건 가운데 청구건수가 2005년 10건, 2006년 12건, 2009년 21건, 2010년 13건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2007년과 2008년은 각각 2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하지만, 당해 연도 청구건수는 2007년 15건, 2008년 7건으로 이는 2006년도 후반부 기사가 2007년도에 청구되었기 때문이다.

1989년부터 2004년까지는 각 연도별로 청구건수와 기사건수가 동일하다. 이는 기사 한 건 당 하나의 청구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하나의 기사 당 병합청구가 이루어져 청구건수가 기사건수보다 많이 나타난다. 한편, 2006년과 2009년에 예외적으로 청구건수보다 기사건수가 많은 것은, 청구는 2007년과 2010년도에 이루어졌지만 기사보도는 그 이전 연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2) 매체유형

1989년에서 1993년까지는 인쇄매체인 일간지, 주간지, 잡지에서만 청구가 있었다. TV는 1994년에 처음으로 청구가 나타났다. 1996년에서 2002년까지는 일간지에서만 청구가 있었으며,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는 일간지와 TV 두 매체에서 청구가 있었다.

2006년에는 인터넷신문에서 처음으로 청구가 나타났으며, 포털에서는 2010년에 처음으로 청구가 나타났다.

연도별 매체유형의 변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간 일간지 위주의 청구에서 2009년부터는 인터넷신문과 포털 등 온라인미디어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점이다.

2. 매체유형별 뉴스구조 특성

(1) 기사유형

기사유형별로 보면, 스트레이트 108건(83.7%), 가십 10건(7.8%), 심층기획 6건(4.7%), 사설 3건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 기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뉴스 기사유형의 특성상 스트레이트 기사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전체적으로는 일간지에서만 다양한 유형의 기사를 볼 수 있었으며, 여타 모든 매체(잡지 별도)에서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전부였다.

(2) 중심주제

일간지의 경우, 82건의 기사 가운데 행정/정책 25건(30.5%), 범죄/사고 17건(20.7%)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주간지는 3건 모두 행정/정책(100%) 분야였다.

지역TV는 23건 가운데 범죄 · 사고 · 재난(11건, 47.8%)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인터넷신문은 14건 중 7건이 교육(50.0%) 분야였으며, 포털은 5건 가운데 3건이 범죄 · 사고 · 재난(60.0%), 2건이 경제(40.0%)였다.

중심주제로 보면, 일간지에서 정치, 행정/정책, 경제, 환경, 교육, 의료, 범죄 · 사고 · 재난, 문화, 스포츠, 인물 · 미담, 역사, 종교 등 12개 분야에서 각각 청구가 있었다. 지역TV는 행정 · 정책, 경제, 교육, 의료, 범죄 · 사고 · 재난, 종교 등 6개 분야, 인터넷신문은 행정 · 정책, 경제, 교육, 의료, 범죄 · 사고 · 재난 등 5개 분야, 포털사이트는 경제와 범죄 · 사고 · 재난 등 2개 분야였다.

(3) 리드가치 부여 여부

일간지의 경우, 가치를 부여한 기사가 67.1%(55건)이었으며, 부여하지 않은 기사는 32.9%(27건)였다. 반면, TV는 가치를 부여한 기사가 30.4%(7건)이고, 하지 않은 기사는 69.6%(16건)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도 가치부여를 한 기사(28.6%, 4건)보다 하지 않은 기사(71.4%, 10건)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일간지별로 리드가치 부여는 제주타임스 3건(75.0%), 한라일보 17건(70.8%), 제민일보 19건(67.9%), 제주일보 16건(57.1%) 순이었다. TV에서는 JIBS가 4건 가운데 3건(75.0%)의 기사에 리드가치를 부여하였다.

제주 주간지 3건(100%), 월간잡지 2건(100%) 모두는 리드문장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반면, 포털사이트는 5건(100%) 모두 가치부여가 없었다.

(4) 보도태도

일간지는 보도태도에서 비판/부정적 기사(45건, 54.9%)가 중립/양비론적 기사(37건, 45.1%)보다 많았다. 제주 주간지(3건)와 월간잡지(2건)의 경우, 모두 비판/부정적 기사였다.

이에 반해 TV는 중립/양비론적 기사(17건, 73.9%)가 비판/부정적 기사(6건, 26.1%)보다 많았다. 인터넷신문도 중립/양비론적 기사(10건, 71.4%)가 많았다. 포털의 경우는 5건 모두 중립/양비론적 기사였다.

일간지에서는 비판/부정적 기사가 제주타임스(3건, 75.0%), 한라일보(13건, 54.2%), 제민일보(15건, 53.6%), 제주일보(50.0%) 순으로 나타났다. TV에서는 JIBS만 비판/부정적 기사(3건, 75.0%)가 많이 나타났다. 중립/양비론적 기사는 KCTV(2건, 100%), KBS제주(7건, 87.5%), 제주MBC(7건, 77.8%) 순이었다.

(5) 의견제시 유형

포털사이트(5건, 100%), 주간지(3건, 100%), 월간잡지(2건, 100%) 모두 일방의견제시형이었다. TV에서도 일방의견제시형(20건, 87.0%)이 상반의견제시형(3건, 13.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일간지는 상반의견제시형(39건, 47.6%)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간지 일방의견제시형은 43건(52.4%)이었다.

일간지의 상반의견제시는 제민일보(17건, 60.7%), 제주타임스(2건, 50%), 한라일보(11건, 45.8%), 제주일보(9건, 32.1%) 순이었다. TV에서는 JIBS 1건(25%), 제주MBC 2건(22.2%)의 상반의견제시가 있었다. KBS제주와 KCTV에서는 상반의견제시형 기사가 없었다. 포털과 월간잡지에서도 상반의견제시는 없었다. 인터넷신문에서는 1건(8.3%)이 있었다.

(6) 정보원(原) 출처 활용 수

정보원(原) 출처가 나타나지 않은 기사는 14건으로 그 가운데 일간지가 13건(92.9%)이었으며, TV에서 1건이 있었다. 취재원이 나타나지 않은 일간지 13건의 기사는 제주일보 7건, 한라일보 3건, 제민일보 2건, 제주타임스 1건으로 나타났다. TV 1건은 KBS제주였다.

주간지(3건, 100%)와 포털(5건, 100%)의 경우, 모든 기사의 정보원(原) 출처 활용 수는 1개였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신문(10건, 71.4%), TV(13건, 56.5%), 월간잡지(1건, 50.0%), 일간지(32건, 39.0%) 순이었다.

2개의 정보원(原) 출처 활용은 TV(8건, 34.8%), 인터넷신문(4건, 28.6%), 일간지(23건, 28.0%) 순으로 나타났다. 여타 매체에서 취재원이 2명인 기사는 없었다.

정보원(原) 3개를 활용한 사례는 일간지(12건, 14.6%)에만 나타났다. 정보원(原)이 4명 이상인 경우는 일간지(2건), TV(1건), 잡지(1건)였고, 매체는 한라일보, JIBS, 월간잡지였다.

(7) 정보인용출처

인터넷신문(14건, 100%), 포털사이트(5건, 100%), 월간잡지(2건, 100%) 모두 정보인용출처가 명확하였다.

정보인용출처가 불명확한 경우는 일간지가 8건(11.6%), TV 2건(9.1%), 주간지 1건이었다.

(8) 실명 · 익명 처리

완전실명 기사 26건은 일간지 21건, TV 2건, 인터넷신문 1건, 월간잡지 2건이었다. 일간지 완전실명 기사는 한라일보 8건, 제주일보 6건, 제민일보 6건, 제주타임스 1건이었다. TV는 KBS제주와 제주MBC가 각각 1건이었고, 인터넷신문 1건은 제주의 소리였다.

일간지의 경우, 완전실명(21건, 32.3%), 성명만(16건, 24.6%), 지역과 성명만(10건, 15.4%), 암호형인용(9건, 13.8%), 완전익명(9건, 1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간지는 2건 모두 암호형인용이었다.

TV는 성명만(13건, 61.9%), 완전실명(2건, 9.5%), 지역과 성명만(4건, 19.0%), 암호형인용 1건, 완전익명 1건이었다.

인터넷신문은 암호형인용(6건, 46.2%), 성명만(5건, 38.5%), 완전실명(1건, 7.7%), 지역과 성명만(1건, 7.7%) 순이었다. 포털은 암호형인용 2건, 성명만 1건이었다.

일간지 완전익명 9건은 제주일보 3건, 한라일보 3건, 제민일보 3건으로 나타났다. TV의 경우, 완전익명 1건은 JIBS이다.

(9) 연도별 실 · 익명 현황

1998년까지는 완전실명 기사가 전적으로 많은 편

이었다. 1990년과 1994년 각각 2건의 기사 모두 완전실명기사였다. 1995년은 8건의 기사 가운데 7건이, 1998년은 6건의 기사 중 5건이 완전실명기사였다.

완전실명기사는 1999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공인(公人)으로 분류 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완전실명기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참고로 2009년 1건은 당시 도지사 친인척 회사 관련 기사였으며, 2010년 1건은 도내 모 대학 이사장 관련 기사였다.

2003년도 이후부터는 성명만 밝히는 경우와 'A씨' 와 같은 암호형인용이 많아졌다.

(10) 제목인용

매체별 제목 따옴표는 전체기사 129건 가운데 39건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제목 따옴표 인용 기사 39건은 일간지 33건(84.6%), 인터넷신문 5건(12.8%), 주간지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로는 제민일보 16건, 한라일보 9건, 제주일보 7건, 제주타임스 1건이었다.

(11) 제목인용과 본문일치

제주일보의 제목 따옴표 기사 7건은 본문과 완전일치 5건(71.4%), 부분일치 2건(28.6%)으로 나타났다.

제민일보는 16건 가운데 완전일치 10건(62.5%), 부분일치 5건(31.3%), 완전불일치 1건이었다. 한라일보는 9건 중 완전일치 4건(44.4%), 부분일치 5건(55.6%)이었다. 제주타임스 와 주간지는 각각 부분일치 1건씩이었다.

인터넷신문은 5건 가운데 완전일치 3건(60.0%), 부분일치 1건, 완전불일치 1건으로 나타났다.

3. 청구항목과 피해유형의 특성

(1) 매체유형별 청구 현황

일간지는 청구건수에서 정정보도 57건(69.5%), 반론 11건(13.4%), 손배 3건(3.7%), 추후 1건이었으며, 병합청구인 정정+반론 1건(1.2%), 정정+손배 3건(3.7%), 추후+손배 3건(3.7%), 정정+반론+손배 3건(3.7%)이 있었다. 주간지는 정정 1건, 정정+반론 1건, 정정+반론+손배 1건이었다.

일간지에서는 제주일보(21건, 77.8%), 제민일보(22건, 78.6%), 제주타임스(3건, 75.0%)에서 정정보도 청구가 많았다. 한라일보(11건, 47.8%)는 다른 일간지들에 비하여 정정보도 청구가 적었으나, 상대적으로 손배가 포함된 병합청구가 많았다.

TV는 정정보도 5건(21.7%), 반론보도 3건(13.0%)이었으며, 병합청구로 정정+손배 8건(34.8%), 추후+손배 7건(30.4%)이었다. KBS제주는 여타 방송사들에 비하여 정정, 반론 대신 손배가 포함된 병합청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인터넷신문은 정정보도 2건(14.3%), 추후보도와 손배가 각각 1건이었으며, 병합청구로 정정+반론 1건(7.1%), 정정+손배 2건(14.3%), 추후+손배 6건(42.9%), 정정+반론+손배 1건이었다. 포털은 정정보도 3건(60.0%), 손배 2건(40.0%)이었다. 월간잡지는 2건 모두 정정보도 청구였다.

매체유형별로 종합해보면, 인쇄매체인 일간지, 주간지, 잡지 등은 정정보도 청구가 많았으며, 전자미디어인 TV, 인터넷신문, 포털 등은 상대적으로 손배와 병합된 청구가 많았다.

(2) 매체유형별 피해유형

일간지는 허위보도 58건(70.7%), 수사결과 발표전 혐의보도 8건(9.8%), 편파보도 8건(9.8%), 과장보도 4건(4.9%), 오기보도 3건(3.7%), 나쁜 인상 유도보

도 1건이었다. 주간지는 3건 모두 허위보도였으며, 월간잡지는 허위보도와 나쁜 인상 유도보도가 각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일간지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V는 허위보도 12건(52.2%),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 7건(30.4%), 편파보도 2건(8.7%), 나쁜 인상 유도보도 1건, 관련 없는 사진보도 1건이었다. TV 간에도 피해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인터넷신문은 허위보도 7건(50.0%), 수사결과 전 혐의보도 7건(50.0%)가 전부였다. 포털은 5건(100%) 모두 허위보도였다.

(3) 연도별 청구항목

1996년까지는 정정보도 청구만 있었다. 89년 3건, 90년 2건, 91년 4건, 92년 2건, 93년 2건, 94년 6건, 95년 8건, 96년 3건 등 모든 기사가 정정보도 청구였다.

반론보도 청구는 1997년(2건)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추후보도 청구는 1998년(1건)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보도형 병합청구인 정정+반론 1건과 손배형 병합청구인 정정+손배 2건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2006년 이후부터는 손배형청구가 정정과 반론 등의 보도형청구를 앞서기 시작했다. 최근으로 올수록 연도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손배형청구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청구항목별 피해유형 현황

편파보도로 분류된 기사 10건에 대한 청구는 정정보도(8건, 80.0%)와 반론보도(2건, 20.0%)가 전부였다. 오기보도 3건(100%)도 모두 정정보도 청구였다.

허위보도에 대한 86건의 청구 가운데 정정 58건, 반론 7건, 정정+반론 3건 등 일반 청구형 기사는 68건(79.1%)이었으며, 손배 3건, 정정+손배 11건, 정정+반론+손배 4건 등 손배형청구는 18건(21.0%)이다.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는 추후 2건, 손배 3건, 추후+손배 16건, 정정+반론+손배 1건이었다. 이 유형의 경우, 추후 2건을 제외한 20건(90.8%)이 손배형청구 기사였다.

과장보도는 반론(3건, 75.0%)이 가장 많았으며, 나쁜 인상 유도보도는 정정, 반론, 정정+손배 각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관련 없는 사진기사 1건은 반론청구였다.

(5) 청구항목별 신청인유형

신청인이 개인인 기사 79건 가운데 정정 35건, 반론 11건, 추후 2건, 정정+반론 1건 등 보도형청구는 49건(62.0%)이며, 손배 6건, 정정+손배 6건, 추후+손배 16건, 정정+반론+손배 2건 등 손배형청구는 30건(40.0%)이었다.

신청인 유형이 회사인 경우에는 32건 가운데 정정 21건, 반론 3건, 정정+반론 1건 등 보도형청구가 25건(78.1%)이었으며, 정정+손배 4건, 정정+반론+손배 3건 등 손배형청구는 7건(21.9%)이었다. 이익단체는 11건 중 정정보도 9건(81.8%)이며, 손배+정정 2건(18.2%)이었다.

국가기관은 4건(100%)은 모두 정정보도 청구였고, 종교단체 1건도 정정보도 청구이다. 교육기관은 정정+반론 1건, 정정+손배 1건이었다.

(6) 청구항목별 의견제시 유형

일방의견제시형 기사 86건 가운데 정정 39건, 반론 8건, 추후 2건, 정정+반론 3건 등 보도형청구 기사는 52건(60.5%))이었으며, 손배 5건, 정정+손배 12

건, 추후+손배 15건, 정정+반론+손배 2건 등 손배형 청구 기사는 34건(39.5%)이었다.

상반의견제시형은 기사 43건 가운데 정정 31건, 반론 6건 등 보도형청구 기사는 37건(86.1%)이었으며, 손배 1건, 정정+손배 1건, 추후+손배 1건, 정정+반론+손배 3건으로 손배형청구 기사는 6건(13.9%)이었다.

Ⅴ. 결론과 논의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 보도기사는 언론의 공익성을 실현하는 '표현의 자유'와 피해 당사자인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하는 저널리즘 현장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언론중재위 제주중재부에서 다룬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 보도기사들의 뉴스구조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정신청대상 기사의 뉴스구조 특성은 첫째, 중심주제로 보면 사건 · 사고 · 범죄(33건, 25.6%)와 행정 · 정책(32건, 24.8%)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매체별로 보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일간지에서는 행정 · 정책이 사건 · 사고 · 범죄보다 10% 가량 높게 나타난 반면, 지역TV에서는 사건 · 사고 · 범죄가 행정 · 정책보다 약 30%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신문은 50%가 교육분야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매체별로 다루는 중심주제의 영역이 다름을 확연하게 보여주며, '잘못된 보도' 논의를 떠나 다양성 측면에서 보자면 매체별로 뉴스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하겠다.

한편, 제주지역의 이러한 결과는 지난 3년간(2005~2007) 대구지역의 사례(정걸진, 2008)에서 사건 · 사고 · 범죄(61.8%)기사가 매우 높게 나타났던 점과도 대조적이다. 참고로 2007년 중앙일간지 사례(최낙진, 2008)에서는 정책 · 행정(29.3%)이 사건 · 사고 · 범죄(18.3%)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리드 기사의 가치 부여 형태에서도 매체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사 전체로는 기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의미를 표현하는 행위라 할 수 있는 가치부여(55.0%)가 약간 높게 나왔다. 기사의 가치부여는 의미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매체유형별로 보면, 인쇄매체인 일간지, 주간지, 잡지에서 가치부여 기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영상 · 온라인 매체인 TV, 인터넷신문, 포털사이트에서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기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간지에서 가치부여 기사가 높다는 것은 선행연구(최낙진, 2008)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는 일간지들의 환경감시와 사회고발 기능을 우선하는 관행에서 연유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으나, 특히 개인을 상대로 한 기사에서는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하겠다.

보도태도에서도 매체유형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간지는 비판/부정적 기사가 45건(54.9%)으로 TV 6건(26.1%)보다 높았다. 주간지와 월간잡지 기사 모두는 비판/부정적 기사였다. 이처럼 오프라인형 인쇄매체들에서는 비판/부정적 기사가 많은 반면, 영상과 온라인형인 TV, 인터넷신문, 포털에서는 중립/양비론적 기사가 대세를 이루었다.

의견제시형태는 전체적으로 상반의견제시형보다는 일방의견제시형이 많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일간지에서는 상반의견제시형(47.6%)이 높게 나타났다. TV의 상반의견제시형 기사는 3건(13.0%)에 불과했으며, 포털은 5건 모두, 인터넷신문은 1건을 제외한 13건의 기사가 일방의견제시형이었다.

셋째, 정보원(原) 출처 활용 수에 있어서도 매체별 차이는 나타났다. 정보원 출처가 나타나지 않는 기사 14건은 일간지가 13건(92.9%)으로 TV 1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일간지에서 나타나는 기사유

형인 기자석, 기자수첩과 같은 가십기사나 사설처럼 기자나 논설인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작용하는 기사에서 기인한 특성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원(原) 출처 활용 수에 있어 3개 이상을 활용한 매체는 일간지가 14건, TV가 1건이었다. 잡지도 2건 중 1건이 있었으나 절대 수가 적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특히 TV는 시청각을 주로 사용하고, 시간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인쇄매체에 비하여 정보원 출처 활용 수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정보인용출처는 인터넷신문, 포털, 월간잡지에서 모든 기사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반면, 이들 매체들에 비하여 일간지와 TV에서는 정보인용출처가 불명확한 기사들이 10%정도 나타났다. 정보인용출처가 명확한 것은 기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동근, 2001; 이재경 · 김진미, 2000)인만큼 정보인용출처 불명확 기사 비율은 더욱 낮아져야 할 것이다.

넷째, 제주지역에서 실 · 익명처리는 매우 민감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지역의 특성상 약간의 정보만 제공되어도 개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정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에서는 그간의 실명, 익명의 구분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실명처리 정도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완전실명의 경우는 일간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성명만 밝히는 경우는 TV에서, 암호형인용은 인터넷신문과 포털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사의 실 · 익명 처리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연도별 변화이다. 1998년까지는 완전실명 기사가 전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완전실명기사는 1999년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공인(公人)으로 분류 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완전실명기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03년도 이후부터는 성명만 밝히는 경우와 'A씨' 와 같은 암호형인용이 많아졌다.

취재원 적시에서 익명처리는 취재원 보호라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보와 허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함에도 제주지역은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익명처리가 많아지는 것은 부정확한 보도에 대한 기자의 책임회피, 취재의 편익 남용(이상기, 2006) 등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해석을 요구한다. 물론 익명보도는 취재원 보호 및 인격권 확보의 차원에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익명보도는 개인의 인격권을 보장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환경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적절한 장치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 중재과정에서 취재원의 제한적 실명이 장려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다(최낙진, 2008).

다섯째, 제주지역의 제목 따옴표 인용은 39건(30.2%)으로, 2007년 중앙 일간지 37.2%(최낙진, 2008)보다는 적은 편이다. 하지만 제주지역 일간지로만 보면, 전체 기사 82건 가운데 33건(40.2%)이 제목 따옴표 인용이어서 중앙 일간지보다 높은 편이다. 또한 제목 따옴표 인용은 다른 매체들에 비하여 제주일간지와 인터넷신문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직접인용구는 기사 본문에 있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지만 제목으로 활용하게 되면 기사내용이 과대포장되거나 침소봉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있다(박재영, 2006). 반면, 직접인용은 사람의 말을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인간적인 체취를 가미하게 되며, 직접관찰에 못지않은 사실로서의 설득력을 갖게 된다(송용회, 2005)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본문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직접인용부호의 사용이다. 이러한 직접인용부호의 남용은 기사 내용을 왜곡하거나 포장할 가능성을 커지게 하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에서 본문내용과 완전일치 하지 않은 부분일치와 완전불일치의 직접인용 따옴표 사용 기사는 43.0%였다.

다음으로 청구항목별 기사의 특성은 첫째, 매체유형별 청구항목을 보면, 오프라인형 인쇄매체인 일간

지, 주간지, 잡지 등은 정정, 반론 등의 보도형청구가 많았고, 지역TV와 인터넷신문은 손배형청구가 많았다. 매체유형별 피해유형은 일간지와 주간지에서는 허위보도가 높았고, 상대적으로 지역TV와 인터넷신문은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TV와 인터넷신문의 경우, 타 매체에 비해 기술적으로 속보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라 보인다. 따라서 TV, 인터넷과 같은 속보성 매체와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의 연관성에 대한 추후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둘째, 최근으로 올수록 손배형청구가 많아지고 있다. 1996년까지는 정정보도 청구만 있었으며, 1997년 반론보도, 1998년 추후보도가 처음 등장했다. 이러한 보도형청구들은 2004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2005년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손배청구가 도입됨에 따라 정정+반론의 보도형 병합청구와 정정+손배의 손배형 병합청구가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2006년 이후는 손배형청구가 보도형청구를 앞서기 시작했다. 최근에 와서는 손배형청구가 더욱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는 손배형청구가 일반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론중재위에서도 언론피해 대상자들의 손배형청구를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이다.

셋째, 청구항목별 피해유형을 보면 편파보도, 나쁜 인상유도보도, 과장보도, 오기보도 등 보도형청구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허위보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손배형청구가 많았으며, 특히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는 대개 손배형청구로 이어졌다.

신청인유형에서 보면, 손배형청구는 개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회사였다. 이익단체에서도 손배형청구가 나타났다. 반면, 국가기관과 종교단체 등은 모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향후 개인과 회사의 손배형청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견제시유형으로 보면, 일방의견제시형에서 상대적으로 손배형청구가 높게 나타났다. 일방의견제시형은 상반의견제시형보다 손배형청구가 3배 가량 높게 나왔다. 반면, 상반의견제시형에서는 보도형청구가 주를 이루었다.

청구항목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금은 보도형청구보다는 손배형청구가 대세이며, 향후에는 손배형청구가 기본이 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그간 손배형은 국가기관과 단체보다는 개인과 회사가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일간지보다는 TV와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손배형청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기사내용으로 보면, 허위보도와 특히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에서, 기사형식에서는 일방의견제시형 기사에서 손배형청구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제주지역 언론들의 취재 방식, 기사작성, 뉴스 편집 등 저널리즘 전반에 대한 검토와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연구는 제주지역의 언론조정신청대상 보도기사를 전수조사하였음에도, 129건이라는 적은 사례 수에서 오는 내용분석 상의 한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비교 분석이나 유형 분류를 할 경우, 1~2건의 사례들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신청인에서 2명의 사례가 빠져 있음도 밝혀 둔다. 같은 매체, 같은 기사임에도 신청인이 각각 달라, 이 경우는 주 신청인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만을 신청인유형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실제 신청인 수는 2명이 더 추가되었어야 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정정, 반론, 추후 등의 보도형청구와 손배 등의 손배형청구가 실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부상준(사회자, 제주중재부장)

최낙진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발표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시작하겠다. 오늘 발제내용이나 언론중재위원회와 조정 · 중재제도에 대한 의견, 궁금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기 바란다.

김방홍(KBS 보도국장)

청구항목별 피해유형을 편파보도, 허위보도,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 등 7개 항목으로 분류해 분석해 주셨다. 그런데 이같은 분류는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일 수 있다. 조정결과 실제로 나타난 보도유형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그리고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로 인해 조정신청된 기사수는 22개인데, 데스킹을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사건, 사고를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이다. 사건, 사고는 주로 기소 전 경찰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기사화 하는데, 이때 익명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제주도의 경우, 도민이 55만명에 불과해 피의자나 당사자가 특정이 되기 쉽다. 완전익명으로 하면 기사가 대단히 모호해 질 수 있으므로, 특정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조정에 참고해 주길 바란다.

최낙진(발제자,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우선, 최근 3년간의 제주조정사건만 본다면 대부분 신청인 요구가 신문이나 방송에 반영되어 보도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분류가 타당하리라고 본다. 이번 연구는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중재부에 조정신청 접수된 175건(실제 기사 수는 129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였으나, 적은 사례수에서 오는 내용분석 상의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에는 이번 연구의 연장선으로 전체조정사건을 대상으로 조정 후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신문이나 방송에 반영되었는가 추후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장은식(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제주지역 언론의 문제점이라면 언론사의 영세성이다. 언론사의 인원이 적어 심층분석 기사는 드물고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쓴 기사가 많다. 또한 언론사가 대기업과 같은 광고주의 눈치를 보느라 언론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언론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당부하고 싶다.

이문교(제주언론인클럽 회장)

기사유형과 기사 가치 부여 분석표를 보면 전체 분석기사 129건 중 108건(83.7%)이 스트레이트 기사이고, 71건(55.0%)이 기자의 주관적 판단을 표현하는 등 리드기사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기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조정신청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해석할 수 있다.

최낙진(발제자,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스트레이트 기사에 기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과 조정신청의 상관관계를 통계 분석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적극적인 사회 고발, 환경 감시가 언론의 본래 기능인데 이를 충실히 이행하다 보면 당사자로부터 조정신청을 당할 수 있다. 다만 스트레이트 기사는 정보제공이 주요 목적이므로 이에 충실해야 하며, 특히 리드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다만 피처기사의 경우에는 기자의 강한 주관이 개입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고창실(전임 중재위원)

연도별 청구항목 변화를 보면 단독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기사수는 6개에 불과한데, 정정보도청구와 손배를 병합청구한 것은 13개, 추후보도청구와 손배를 병합청구

한 것은 16개이다. 제주지역에서 이처럼 손배를 정정이나 추후와 함께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최낙진(발제자,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제주도에서 손배형 청구를 하였으나 실제 금액이 지급된 사례는 없었다. 아마 신청인이 실제로는 정정이나 반론, 추후보도를 유도하기 위해 손배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손배가 청구된 사건을 보면 내용상 실제 손배가 이뤄져야 할 사건이 많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제주지역에서 실제 손배가 이뤄진다면 어떤 전기(轉機)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사가 이를 계기로 보도에 더욱 책임감을 가질 것이므로 기사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고창균(제주영상위원회 사무국장,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강사)

언론의 사회적 영향을 감안하면, 잘못된 보도로 인해 기업이 문을 닫거나, 개인이 평생 불명예를 갖고 살아야 할 수 있다. 제주지역의 조정처리건수가 타지역에 비해 적은 것이 다행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조정신청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정신청이 된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취재기자의 언론관이나 기자의 소양, 신중하지 못한 취재 행태 등이 그 원인이라 생각한다. 중재위원이나 발제자가 생각하기에 조정신청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최낙진(발제자,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데이터만으로는 조정신청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어려우나, 질의자가 말한 것도 그 원인이 될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제주도의 좁은 지역색으로 인해 분쟁 발생시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분쟁의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백진주(제주YWCA 사무총장)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전체 처리사건 중 제주지역 사건은 1%에 불과하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위원회 역할에 대한 욕구가 많은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발생시 이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이용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위원회 홍보를 많이 해주길 바란다.

김용주(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위원회는 상담센터를 운용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월 200~300건의 상담을 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인구가 적고, 매체수가 적어서인지 조정신청건수뿐 아니라 상담 자체도 드물다. 사건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발생시 이를 구제하고,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위원회 홍보를 다각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예산상 제약으로 인해 비예산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네이버 등 주요 포털 Q&A에 언론분쟁관련 전문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지자체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오광건(언론중재위원회 연구본부장)

위원회 소식지의 경우 작년부터 1만부씩 발행하고 있는데, 소식지에 위원회 기능, 주요 사례를 수록해 동사무소, 공공기관 홍보실, 전국 국민은행 지점 등에 배포하고 있다. 특히 위원장께서 직접 언론사 인터뷰에 응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시다. 또한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한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보도자료를 배포, 언론사에 보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무총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3명의 위원회 변호사를 상담역으로 두고 주요 포털에 전문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위원회의 기능, 주요 조정 사례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포털의 광고비를 감안하여 추산하면 이는 약 10억 상당의 광고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예방 교육 및 피

해 발생시 구제 방안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다.

위영석(제주도기자협회 회장)

요즘은 시민들이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직접 언론사로 항의한다. 또한 언론사 자체 고충처리인 제도를 통해 이러한 불만을 처리하고 있다. 조정신청 건수가 적다는 것은 위원회 홍보 문제보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이 되기 전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길 바란다. 한편, 매체유형별 보도태도에서 중립/양비론적 기사가 69건인데, 이러한 유형의 기사에 대해서도 반론이 적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발제자는 어느 정도의 크기와 분량의 반론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최낙진(발제자,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반론의 크기나 분량은 가급적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언론사는 기사에 반론을 반영하는 것에 소극적인데, 이는 기사에 반론이 많으면 독자들이 기사에 허점이나 약점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인정되는 주장이나 반론이 있다면 가능한 상세히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언론의 자세라 본다. 이러한 노력이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호감도를 높이고 언론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경중(제주CBS 본부장)

국민의 권리 의식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로서는 조정신청이 많아지는 것을 당연시해야 한다. 실제 언론사는 데스크가 심리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신청이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언론사가 별도 창구를 만드는 등 제도적인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내부 변호사를 고용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를 통해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위원회는 성공적인 조정을 위해 양당사자에게 상호 양보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양당사자의 입장을 너무 고려하다 보니 위원회 가치판단에 대해 당사자 모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가 조정을 수용할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확실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이런 점은 위원회가 보완해야 한다.

부상준(사회자, 제주중재부장)

여러 고견을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리며, 오늘의 논의 내용은 위원회가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위원회의 발전과 언론조정 · 중재제도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권 성(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지금까지 특정지역에서 조정신청된 기사 유형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었는데 발제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분석사례가 많지 않아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상당히 의미있는 연구였다. 제주일보는 1945년 10월 지방에서 최초로 '제주신보' 라는 제호로 창간되었다. 제주지역이 현재 세계 7대 자연경관 후보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함께 우리나라 지방 신문의 효시가 된 점은 큰 영예라 생각한다.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보답하는 의미로 오늘 나온 주요 의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변화에 관한 것이다. 과거에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이나 반론과 함께 손해배상을 병합 청구하면, 중재부가 정정이나 반론으로 화해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은 취하하도록 권고했다. 손해배상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최근에는 그나마 진일보하여 손해배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그 금액이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에 중대한 두 가지 변화가 있다.

첫째, 형식적 · 상징적 수준의 손해배상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과거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 대부분이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인격권 침해를 넘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가 늘고 있다.

물론, 위원회로서는 언론사의 재정상황 또한 중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위원회는 적정 수준의 타협안을 양당사자에게 제시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는 추세로 볼 때 향후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점에서 언론사로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비록 시의성, 속보 경쟁 등으로 인한 한계가 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보도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면하기 어렵다. 이것은 정확한 보도를 통한 언론의 품격 향상과도 연관된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부분이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확립되어 있는데, 재정사정이 열악한 지역 언론사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받을 경우 그 존립이 위태롭기까지 한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우리나라도 언론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언론사에서도 손해배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또한, 언론의 재난 사고, 사건 등에 대한 보도행태를 보면, 피해자의 오열하는 모습이나 슬픔에 잠긴 모습을 과도하게 클로즈업하여 보도하고 있다. 이것 역시, 손해배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현재는 단순한 권고에 불과하지만, 향후 손해배상 문제로 비화되면 언론사가 곤란해 질 수 있다.

위원회 홍보와 관련해, 그간 위원회 내부에만 배포하던 소식지를 작년부터 증면, 발간부수를 1만부까지 확대하여 위원회와 언론조정 · 중재제도에 관심있는 분들이나 은행, 공공기관 등 국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는 위원회 사무처 임원들을 교육 일선에 참여시켜 교육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

한편, 언론사가 위원회 조정을 통해 정정이나 반론 보도문을 게재할 때, '바로잡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잡습니다' 등으로 게재할 경우,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바로잡는다는 것과 혼동이 있을 수 있다. 향후에는 그 내용이 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비록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중재부에서 언론사에 적극적으로 권유하고자 한다.

끝으로, 전년도 제주지역의 조정신청 사건이 48건이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이 없다. 이는 제주지역 언론사가 충실한 보도를 하고 있으며, 앞서 논의된 것처럼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당사자가 조정신청 전에 화해를 하기 때문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경우에 따라 앙금이 남을 수 있고, 작은 앙금이 향후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정 · 중재 전문기관인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장시간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

일본의 매스컴은 동일본대지진을 어떻게 보도했는가?

후지모토 도시카즈 (Fujimoto Toshikazu)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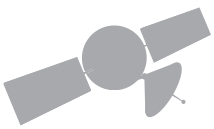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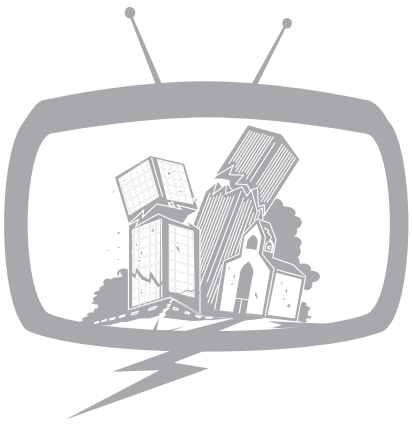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은 실로 많다. 정의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늘 권력을 감시하는 것도 언론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올해 3월 11일 일본열도를 강타한 미증유의 대지진은 재난보도의 중요성을 새삼스레 깨닫게 해 주었다.

자연재해가 유난히 많은 재해대국 일본에서는 모든 보도기관이 늘 재해에 대비하고 있다. 방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방송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방송사업자는 폭풍, 호우, 홍수, 지진, 대규모 화재, 기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해야 한다." 일본은 도쿄에만 해도 6개의 지상파 방송국이 있는데 특히 수입의 90퍼센트를 시청자가 부담하는 공영방송 NHK가 짊어져야 할 책임은 아주 무겁다.

그런데 보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바로 보도윤리다. 보도윤리란 보도하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규범이다. 재난보도는 일반 보도와는 달리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긴급시의 방송이다. 그만큼 윤리를 소홀히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윤리를 지키지 않는 보도는 구조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 인명피해를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절망에 빠져 있는 재해피해자들을 더 괴롭힐 수도 있다. 과연 일본의 보도는 이번 지진을 어떻게 전했을까? 윤리를 지키며 보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을까?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NHK와 민간방송 그리고 신문 등의 재난보도를 살펴볼까 한다.

"윤리를 지키지 않는 보도는 구조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 인명피해를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절망에 빠져 있는 재해피해자들을 더 괴롭힐 수도 있다."

1. 성공적이었던 NHK의 지진 경보 시스템

지진이 일어나면 민간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채널을 NHK로 돌린다. 이것은 일본사람들에게는 상식이다. 태풍이 북상할 때도 마찬가지다. 각 방송국마다 일기예보에 힘을 쏟지만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은 CM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일기예보를 자세히 방송해주는 NHK다.

이번 지진도 NHK가 먼저 보도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3월 11일 14시 46분, NHK종합방송은 생방송으로 국회를 중계하고 있었다. 그 화면에 '긴급지진속보' 자막이 돌연 나왔다. 긴급지진속보란 큰 흔들림이 도달하기 전에 전 국민에게 경계하도록 호소하는 일본기상청의 독자적인 속보 시스템이다.

지진이 발생하면 먼저 P파라는 작은 흔들림 즉 초기미동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S파 즉 주요동이라고 하는 큰 흔들림이다. P파의 전달 속도는 초속 7Km, S파의 전달 속도는 4Km다. 기상청에서는 P파를 관측한 시점에서 긴급속보를 발령한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은 곧 찾아올 큰 흔들림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지진 때도 긴급속보가 나왔을 때 국회에서는 아직 아무런 흔들림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 중계를 담당하고 있던 아나운서가 "긴급지진속보가 발령됐습니다. 강한 흔들림에 주의해주십시오. 지진이 올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데로 피하십시오. 침착하게 행동해주십시오"라고 되풀이 하고 있을 때 국회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사이 1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지금 초등학교 등에서는 긴급지진속보에 대비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1분의 여유가 있으면 책상 밑에 몸을 피할 수가 있다.

곧 이어서 국회에서 방송센터의 뉴스 스튜디오로 화면이 바뀌고 그때부터 예상치 못했던 기나긴 재난방송이 시작됐다. 대쓰나미경보가 나온 것은 3분 20초쯤 지나서였다. 아나운서는 바닷가에 있는 사람은 곧 피난하도록 몇 번이고 되풀이 했다. 그때까지 드라마의 재방송이나 광고방송을 계속하고 있던 민간방송국이 그제야 긴급방송을 시작했다.

NHK의 전 방송국의 건물 그리고 주요 항구, 공항 등 모두 400군데 이상의 지점에는 원격조정이 가능한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늘 일본열도를 감시하고 있다. 또, 전국에 9개의 기지에 헬기 11대가 배치되어 있고, 도쿄의 기지에는 24시간 체제로 승무원을 대기시키고 있다. TV화면에는 항구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찍은 바닷가의 현황이 금방 비췄고 얼마 후, 쓰나미가 덮치는 끔찍한 장면이 헬기에서 중계 방송됐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후쿠시마원전사고가 일어났다. 방송은 원전사고 그리고 이재민들에 대한 인명구조 활동 등을 계속 보도했다. 그 과정에서 재난방송의 문제점들 또한 많이 부각됐다. 각 방송국은 물론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이 설치한 BPO 즉 방송윤리 및 프로그램향상기구에도 지진발생 직후부터 시청자들의 의견이 쇄도했다.

2. 헬기에 의한 중계의 문제점

"헬기에 의한 피해지역의 중계는 삼가해 주었으면

한다. 무너진 건물 밑에 깔려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게 돼 인명구조에 지장이 생긴다." BPO가 접수한 시청자의 의견이다.

헬기에 의한 취재에 대해서는 고배지진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 취재를 하는 헬기는 한두 대가 아니다. 각 방송국 신문사마다 다투다시피 헬기를 날렸기 때문이다.

NHK는 NHK직원과 NHK 방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취재와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에 판단기준이 되는 지침, 즉, 『방송 가이드라인』이라는 매뉴얼을 만들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항공취재에 있어서는 항공법에 따른 안전비행을 지킴과 동시에 재난시의 구조작업과 시민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비행시의 소음에도 주의해야 한다.' NHK에 매뉴얼은 필요에 따라 개정돼 왔는데 이 항목은 고배지진 때에 반성에 입각해 만들어졌다. 이번에도 같은 지적을 받은 셈이다.

3. 이재민에 대한 인터뷰

"가족을 잃은 심정은? 같은 질문을 하는 아나운서가 있다. 그런 질문을 안해 주었으면 한다." 가족도 잃고 집도 잃고 그렇지 않아도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이재민들에 대한 인터뷰도 늘 문제가 되는 대목이다. 이번에도 남편과 딸이 실종 중인 주부에게 집요하게 질문해 울부짖게 한 인터뷰가 네티즌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그 주부의 마음보다 시청률을 우선시 한 인터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재민뿐만 아니라 현지의 행정담당자에 대한 인터뷰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들은 방송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눈앞에 산적돼 있다. 한편 방송국은 현지의 상황을 빨리 파악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럴 때 NHK의 아나운서들은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이라고 하고나서 '지금 여쭤 봐도 됩니까?' 라고 양해를 얻고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시작한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많은 지적을 받으면서 아나운서들의 인터뷰도 많이 달라졌다.

이번 재난보도에서는 NHK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것은 NHK가 늘 재난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를 담당하는 아나운서들은 평상시에도 지진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으며 모의방송도 한다. 칭찬을 받은 침착한 태도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방송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이재민들은 가족과 재산을 잃고 극한 상황에 놓여 있다. 취재나 방송에 있어서는 유족들의 슬픔을 생각해서 이재민의 프라이버시에 배려해야 한다. 이재민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 취재태도는 삼가해야 한다.'

일찍이 NHK도 사고현장에서 울부짖는 유가족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의 심정은?' 식의 인터뷰를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 윤리의식은 비판을 받으면서 많이 향상됐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난보도에서 인터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재민에 대한 취재는 재해에 비참함을 전하는 것 이외에 행정당국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촉구하는 목적도 있다.' 방송 가이드라인에는 이렇게도 적혀 있다. 보도 윤리를 지키면서 인터뷰를 하는 것 또한 재난 보도가 해야 할 일이다.

4. 칭찬을 받은 NHK의 아나운서들

이번 재난보도에서는 NHK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것은 NHK가 늘 재난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를 담당하는 아나운서들은 평상시에도 지진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으며 모의방송도 한다. 칭찬을 받은 침착한 태도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아나운서가 호들갑을 떨면 국민들은 불안해져 패닉에 빠질 수도 있다.

NHK의 아나운서들은 재난보도에 필요한 신뢰감을 늘 요구받고 있다. NHK에서도 아나운서가 바라이어티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호들갑을 떨어도 한계가 있다. 어디까지나 NHK의 아나운서로서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면 안 된다. 신뢰감이 없는 아나운서의 재난보도는 아무도 안 믿는다.

『방송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사생활에 있어서도 NHK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공영방송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모럴에 반하는 발언과 행동은 엄하게 조심해야 한다.'

5. 비판이 잇따른 민간방송국

쓰나미로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미야기현 게센누마시에서 중계방송을 하고 있던 어떤 민간방송국의 아나운서는 중계방송이 시작한 줄도 모르고 웃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는 장면이 방영돼 시청자들의 빈축을 샀다. 또 다른 방송국의 스태프가 현지에서 미팅을 할 때 '이런 그림이 박력이 있는 거다' 든지 '자원봉사를 하는 놈들' 이라고 발언을 했다는 네티즌의 고발도 있었다. 또한, 간 총리가 기자회견을 했을 때 중계 스태프들이 '또 원전 이야기겠지' , '어, 웃긴다' 등의 이른바 '뒷담화' 가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방송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의심스럽다.

일본에서도 시청률을 우선한 나머지 외모나 젊은 층의 선호도를 중시해서 아나운서를 채용하는 경우가 특히 민간방송에서 종종 있다. 이번 재난방송을 통해 그러한 경향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게 있었다.

6. 교만한 기자들

"보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인 이상의 모럴과 상식이 요구된다. 매스컴은 마치 특권이라도 갖고 있는 것 같은 교만한 행동을 당장 고쳐야 한다." 이것은 BPO가 접수한 민원이다.

도쿄전력의 원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절전계획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해서 매스컴들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회견장에 있던 기자들의 언동에도 비판이 집중됐다. '야! 안 들리지 않아!' , '사장의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아? 니가 정정하라' 등등.

기자회견 때의 기자의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는 2005년에도 한 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 해 3월 고배 근처에서 107명이 사망한 열차탈선 사고가 일어났다. 그때 기자회견에 임한 철도회사 JR의 담당자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의 기자가 던진 "너희들은 필요 없다! 빨리 사장을 데리고 오라" 등의 발언이 전국의 생방송되자 항의가 쇄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의 사회부장은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킨 것은 유감이다. 깊이 사과한다"고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되풀이됐다. '아니, 생방송을 했으니까 알게 된 것이지 기자들은 늘 그런 식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정의를 구현하는 직업이라고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취재를 받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재할 때는 늘 방송윤리와 공평 공정한 방송을 염두에 두고 절도 있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기자들이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할 대목이다.”

변호사와 기자다. 그러나 기자들도 일찍이 깡패 취급을 받은 적이 있었다.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람을 협박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저널리스트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동경의 직업 중 하나이지만 기자회견을 통해 기자에 대한 불신감을 품은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원전사고에 책임을 추궁한다 해도 윤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NHK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취재를 할 때는 성실하게 접하고 서로의 신뢰감을 소중히 한다. 취재를 받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재할 때는 늘 방송윤리와 공평 공정한 방송을 염두에 두고 절도 있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기자들이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할 대목이다.

7. 사재기를 부채질하는 보도

“심각한 가솔린 부족과 식료품 부족의 원흉은 보도가 아닌가. 슈퍼마켓이나 주유소의 행렬을 되풀이 방송해 사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 지적도 맞는 측면이 있다. 보도하는 측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행정당국이 빨리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하는 것이 방송국의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도는 의도와는 다르게 사재기가 발생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행히 이번에는 심한 혼란이 없었지만 이런 보도를 할 때는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코멘트가 꼭 있어야 될 것이다.

8. 잔혹한 장면의 보도

“충격적인 쓰나미의 영상이 하루에 수십 번이나 되풀이 방송되고 있다. 이런 영상은 이제 자중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번 재난의 무서움은 이제 모든 일본사람이 알고 있다. 이 영상은 이재민에게 공포심을 되살리게 하고 트라우마를 남긴다.” BPO가 접수한 시청자의 의견이다.

이러한 충격적인 영상은 이재민은 물론 청소년들에게도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영상을 사용할 때는 충분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9 · 11 테러사건 때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빌딩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영상은 지금 NHK에서도 사용을 자중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시체의 영상도 방송에는 안 나온다. 같은 이유다.

9. 원전보도

원전사건에 대해서도 『NHK 가이드라인』은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은 많지가 않다.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시설에서의 사고는 인간의 오관으로서는 직접 파악할 수 없는 방사성 물질, 방사선의 위협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기 쉽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적고 있는데, NHK 방송은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할 뿐이었다는 신랄한 비판도 받고 있다. NHK의 과학문화부를 중심으로 한 보도는 함부로 불안감을 부추기지 않고 국민들이 침착하게 행동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다 했지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알기 쉽게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검증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10. 앞으로의 과제

이번 대지진에 관한 재난보도, 특히 NHK의 보도는 국내외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 한편에서 NHK가 극복해야 할 큰 문제점도 부각됐다. NHK는 그렇게 빠른 시간에 긴급지진속보를 전하고 대쓰나미경보를 방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의한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

재난보도의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인간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재난보도를 잘 했다고 해도 이토록 많은 희생자를 낸 것 자체가 재난보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는 불가항력이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쓰나미를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었다. 그래도 왜 이렇게 희생자가 많았는지…. 보도기관들이 꼭 짚어야 할 문제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쓰나미 도달예정시간이 지나도 쓰나미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간 순간 쓰나미가 덮쳤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대쓰나미경보가 나온 것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예보가 나와도 큰 쓰나미가 온 적이 없어서 피난을 안했다는 사람들도 있다. 방송국이 양치기 소년의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또, 제방을 쌓고 쓰나미 대책이 잘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높은 쓰나미가 올 줄 몰랐다고 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것이 다 불가항력일까?

그렇지는 아닐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조상들이 남긴 귀중한 교훈을 잊어버려서 되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재난은 잊어버릴 무렵에 찾아온다' 는 말이 있다. 이것은 지진학자이며 수필가로서도 알려진 데라다 도라히코 박사가 남긴 명언이다. 역시 일본사람들은 방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쓰나미의 충격은 너무 커서 금방 잊어버릴 것 같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또 잊어버릴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큰 해일은 다시는 안 올 것이라고 하는 방심의 소리가 벌써부터 들린다.

보도기관의 앞으로의 역할은 이번 비극에서 얻은 교훈을 살리고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 때 카메라가 찍은 수많은 영상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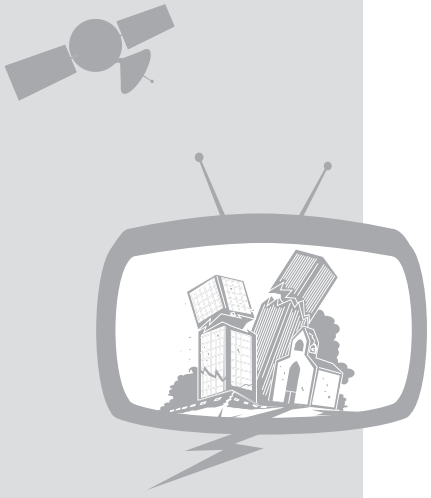

언론과 법

국내동향
해외동향

PAC

법원, 성희롱 발언 파문 강용석 의원에 대해 집단 모욕죄 첫 인정

지난 5월 25일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개인이 아닌 특정 직업군을 지칭했더라도 집단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사례다.

강 의원은 2010년 7월 16일 국회의장배 토론대회를 마친 뒤 대학생들과 저녁자리에서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한국아나운서협회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이 같은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입법에 관여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하고 명예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중앙일보에 보도된 발언을 했는지 여부인데 피고인이 그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하다"며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대중 앞에 서기 때문에 사회 일반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전해 듣고 아나운서를 (이상하게) 연상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즉, 강 의원이 여자 대학생들 앞에서 한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쳐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강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경위를 해명하거나 발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있지만 '기자가 허위보도를 했다'며 무고죄로 고소까지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대해 강 의원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강 의원은 성적 비하 발언을 한 일이 없고, 재판부가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다소 자극적인 제목 아래 발언의 경위를 생략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은 작년 9월 2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제명을 당했으며, 올해 5월 30일 국회 윤리특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가결한 바 있다.

전자소송, 특허사건에 이어 민사소송으로 확대

종이없는 민사소송, 즉 전자소송이 5월 2일 '민사사건'으로 확대돼 시 · 군 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작년 3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작년 4월 특허사건에 전자소송이 처음 도입된 이후, 1년여 만에 '민사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다.

전자소송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재판부에서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적으로 송달하는 등 서면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당사자는 언제 어디서나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나 증거서류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선고 후 판결문이나 결정서 등을 열람 · 출력 가능함에 따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등록을 하면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인지나 송달료 등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법원마다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한편 전국 350개 민사법정 가운데 80여 곳에 원활한 전자소송이 가능하도록 컴퓨터 등을 갖춘 전자 법정을 구축했으며, 연내 85곳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전자소송은 내년 5월 가사 · 행정 · 도산사건, 2013년 5월 신청 · 집행 · 비송사건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참조) 언론중재위원회 전자심리제도 본격적 시행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조정 · 중재사건에 대한 전자심리제도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자심리제도의 시행으로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나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건 담당 중재부도 종이서류 없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작년 말 전자심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1월부터 4개월간의 시스템 안정화작업을 통해 본격적인 전자심리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조정 · 중재를 신청하려면 우선 언론중재위원회 민원 포털인 Eye-Net (http://people.pac.or.kr)에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이나 법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인터넷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출석요구서나 기타 제출자료 등 심리진행과정에서 송달받아야 하는 모든 문서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심리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민원인이 언론피해 구제 신청을 위해 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되고, 각종 문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어 대국민서비스 향상과 신속한 분쟁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중재위, 대형 사건보도의 언론보도 관행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11년도 제3차 회의(3월 21일 개최)에서 지난 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대형 사건 · 사고나 국가적 재난시 언론의 보도 관행이 희생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언론사에 공통으로 시정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대형 사건 · 사고나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때의 언론보도 관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슬픔에 빠진 유족이 오열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클로즈업하거나 희생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상세히 공개하는 보도는 그들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보도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대형 사건 · 사고나 국가적 재난시 언론은 희생자와 유족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줌으로써 언론의 품위를 염두에 두는 보도 태도를 가져

야 하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보다는 재난 수습과 향후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언론계가 주축이 되어 학계, 법조계 등과 함께 공청회 · 세미나 등의 방법으로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언론중재위, 5대 포털사와 업무협약 체결

언론중재위원회는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등 5대 포털사와 6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중재위원회 회의실에서 조정사건의 중재 전환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도로 인한 분쟁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주된 내용은 포털을 상대로 제기된 조정사건을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는 중재사건으로 전환하는 데 중재위원회와 각 포털사가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다.

2009년 8월 7일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포털이 조정 · 중재 대상으로 포함된 이후, 그간 포털사들은 조정사건이 접수될 때마다 매번 심리에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이후 포털사와의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포털의 특성을 고려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방안과 포털사건 처리방안에 대한 실무상 개선안 모색 등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심리에 꼭 출석해야 하는 조정절차와 달리 중재절차는 서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포털사들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분쟁은 피해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포털사들의 번거로움이 감소되는 만큼 사건 처리가 한층 신속하고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5개 포털사와의 협약 진행경과에 따라 앞으로 포털사 뿐만 아니라 언론사들과의 중재전환 업무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동향]

한동원 전 언론연구원장

日 최고재판소, 통신사 제공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의 명예훼손 책임 부정

2011년 5월 10일자 신문협회보에 의하면, 日 최고재판소는 통신사와 신문사가 기사의 취재, 작성, 배신(配信), 게재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도주체로서의 일체성이 있을 때, 통신사의 배신기사에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교토통신은 지난 2002년 7월 「최악의 사태, 왜?」라는 제목으로 도쿄여자의대에서 심장수술을 받은 여자 어린이가 담당의사의 실수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도하였는데, 아키타가이(秋田魁), 죠오모(上毛), 시즈오카(靜岡)의 3개 신문사는 교토통신의 배신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당시 담당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日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지난 4월 28일 3개 신문사의 책임을 부정한 도쿄고법의 2심 판결을 지지하여 상고를 기각, 3개 신문사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이에 앞서, 교토통신에 관한 상고는 지난 4월 21일자로 불수리 결정이 내려져 제소된 3개 신문사를 포함하여 4개 언론사 모두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한편, 1심 도쿄지법은 2007년 9월 교토통신의 배신기사에 대해 진실 · 상당성을 인정했으나 3개 신문사에 대해서는 「배신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합계 385만엔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그러나 2심 도쿄고법은 2009년 7월 교토통신과 가맹사의 상호관계에 대해 「가맹사는 교토통신의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사원총회 등의 내부조직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한편으로 기사 제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토통신이 기사를 배신한 경우, 신문사가 내용에 상응한 취재원이 있다고 이해하고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판단, 3개 신문사의 기사 게재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재판부는, 통신사와 신문사의 관계에 대해 「신문사의 보도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한다는 중요한 사회적 의의가 있으며, 현대에 있어서 보도시스템의 하나의 형태로 널리 사회에 인지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신문사가 통신사로부터 배신된 기사의 내용에 대해 입증 취재를 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히토츠바시(一橋)대학 호리베 마사오(堀部政男) 명예교수는 「교토통신과 가맹사의 관계성이 강조된 판결이다. 외국의 통신사처럼 이러한 일체성의 관계가 없는 경우에 이번과 같은 판결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논평했다.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나, 성인이 되어 사형이 확정된 범인의 익명 여부 둘러싸고 日 언론계 판단 양분

2011년 3월 15일자 신문협회보에 의하면, 최근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나 성인이 되어 사형이 확정된 경우의 익명보도 여부에 대해 日 언론계의 판단이 양분되었다.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지난 3월 10일 1994년 아이치(愛知), 키후(岐阜), 오사카(大阪) 등 3개 부 · 현(府 · 縣)에서 4명의 남성이 살해된 연속린치살인사건 2심 공판에서 사형판결을 받은 범행 당시 18~19세였던 소년 3명의 상고를 기각, 사형을 확정했다.

일본의 각 언론사들은 이들 3명에 대해 계속 익명보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실명보도로 바꿀 것인지를 놓고 판단이 양분되고 있는 가운데 3월 11일자 조간(朝刊)의 재경지(在京紙) 중 아사히(朝日)신문, 요미우리(讀賣)신문, 닛케이(日經)신문, 산케이(産經)신문은 실명으로, 마이니치(每日)신문, 도쿄(東京)신문은 익명으로 보도했다. TV에서는 NHK, TBS, 니혼TV, 후지TV, TV도쿄가 실명으로 보도했는데 후지TV는 소년의 얼굴 사진까지도 공개했으며, TV아사히 1개사만이 익명으로 보도했다. 사형이 확정되어 갱생의 가능성이 없는데다 양형의 중대성에 비추어 실명보도를 택한 언론사가 많았다.

일본의 소년법 제61조는, 소년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미숙한 소년 시기의 사건으로 갱생(更生), 사회복귀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 본인으로 특정될 수 있는 기사나 사진을 신문이나 출판물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각 언론사는 소년법의 취지에 맞춰, 그간 소년사건 보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용의자나 피고를 익명으로 취급해 왔다.

아사히신문은 「사형의 대상자는 밝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본사는 2004년 사건 당시는 소년이었더라도 사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명보도를 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았다」고 밝혔으며, 요미우리신문은 「사형이 확정되면 갱생(사회복귀)의 기회가 사라지는 한편, 국가가 사람의 생명을 뺏는 사형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중대한 사회적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닛케이신문은 「범행시 소년이었던 피고에게 사형판결이 내려진 중대성과 함께 피고의 갱생 기회가 없어지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으며, 산케이신문은 「사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극히 높고 사회복귀 등을 전제로 한 갱생의 기회도 잃어버렸으며 사건의 중대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교토통신은 「상고심 판결에 대한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양형이 번복된 케이스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익명보도를 계속한 마이니치신문은 「사형이 확정된 후에도 재심이나 은사(恩赦)가 인정되어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했으며, 도쿄신문은 「현 단계에서 갱생을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3명의 피고와의 면회나 주고받은 서한을 보면 내심의 변화도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협회가 1958년에 제정한 「소년법 제61조의 취급방침」은 익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① 도주 중이거나 방화, 살인 등 흉악한 누범(累犯)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② 지명수배중인 범인수사에 협력하는 경우 등, 소년을 보호하는 것보다 사회적 이익의 옹호가 강하게 우선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름과 사진의 게재를 인정하기로 했다.

日 도쿄지법, 수사정보를 유출한 서적에 대해 출판, 판매금지 가처분

신문협회보 2011년 3월 1일자 보도에 의하면, 인터넷상에 유출된 국제테러 수사에 관한 일본 경시청의 내부자료를 게재한 서적에 대해 도쿄지법은 2월 16일자로 개인정보 등을 삭제하지 않는 한 출판, 판매를 금지한다는 2010년 11월 29일자 도쿄지법의 가처분결정을 지지, 발행원인 제3서관의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제3서관은 도쿄고법에 즉시 항고했다.

문제가 된 서적은 2010년 10월에 인터넷상에 유출된 경시청 공안부의 테러수사자료를 하나로 모은 '유출『공안테러정보』전 데이터' 인데, 실명이나 얼굴 사진 등이 게재된 이스람교도들의 신청을 받은 도쿄지법이 가처분을 결정한 것이며, 제3서관은 2010년 12월 28일자로 이의를 신청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적 입장에 있지 않는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정보는 이미 인터넷상에 유출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하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제3서관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익명성이 높은 인터넷상의 정보에 비해 서적의 신용성은 높다」고 지적,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동향]

뉴햄프셔와 뉴저지 언론, 삭제된 범죄기록 공개에 대해 면죄부 받다

The News Media & The Law 2011년 봄호(P29)에 의하면, 뉴저지와 뉴햄프셔의 언론인들은 삭제된 범죄사실의 공표 여부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올해 있었던 주 법원의 판결로 이러한 경우 언론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뉴저지 대법원은 올해 1월 이미 삭제된 범죄 기록을 보도하는 것이 반드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2007년 G.D. 대 Kenny 사건은 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브라이언 스택(Brian Stack) 후보의 경쟁후보가 전단을 배포했던 사건이다. Kenny는 선거 전단에서 스택 후보의 참모인 G.D.에게 범죄 전력이 있다며 비난했는데, G.D.는 전단이 공표되었을 당시 범죄기록이 삭제된 상태였다.

이후 G.D.는 명예훼손적인 거짓 전단을 배포함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전단에 적힌 내용이 진실된 사실이라고 주장했으나, G.D.는 범죄사실이 이미 삭제되었으므로 현행법상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배리 알빈(Barry T. Albin) 판사는 "비록 법에 따라 이전에 있었던 일부 경범죄에 대한 범죄기록을 삭제해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참고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한 뉴저지 미디어 그룹의 브루스 로센(Bruce Rosen) 변호사는 "이미 일어났던 일을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진실이 진실로서 인정받았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또한 뉴저지 법원의 판결이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언론을 보호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이번 판결로서 명확해졌다. 이제 누구도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뉴저지 법원의 판결이 있고 나서 한달 후, 뉴햄프셔 대법원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Lovejoy 대 Linehan 사건에서 후보자의 이전 범죄기록을 공표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정한 이전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데이비드 러브조이(David Lovejoy)는 1989년 경범죄로 처벌받았으나 이후 그 기록은 삭제되었다. 2009년 러브조이는 당시 보안관으로 재직 중이던 댄 린네한(Dan Linehan)을 상대로 록킹햄 카운티(Rockingham County) 보안관 선거에 출마했다. 린네한과 부보안관 마크 퍼스(Mark Peirce)는 포츠머스 헤럴드 기자에게 1989년에 있었던 러브조이의 범죄사실을 넘겼고, 이는 기사로 공표되었다.

이후 린네한 보안관과 퍼스 부보안관은 이미 경범죄로 체포되거나 전과가 있었더라도 그 기록이 삭제된 경우에는 공표를 금하고 있는 주법에 따라 기소되었다. 그러나 러브조이는 "개인 신상을 폭로함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이들과 기자, 그리고 County를 고소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2002년 바트닉키 대 보퍼(Bartnicki V. Vopper) 사건을 통해 언론사가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연방대법원의 판

결을 존중한 것이다.

뉴햄프셔 고등법원은 이 사건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것이고, 삭제된 범죄기록을 공표한 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전에 그러한 범죄경력이 있다는 것은 삭제 여부와 상관없이 보안관직에 적합한지 여부를 따질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라고 판시했다.

러브조이 대 린네한 사건에서 언론 측을 대리한 윌리엄 채프맨(William Chapman) 변호사는 법원에서 삭제된 범죄기록이라고 해서 반드시 뉴스 데이터베이스와 대중의 기억에서 지워버릴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채프맨 변호사는 뉴햄프셔와 뉴저지에서 있었던 판결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한층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두 사건으로 인해 언론의 환경이 다소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소송이 없어지리라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번 사건과 자신의 사건을 전혀 별개로 생각하고 선을 긋게 마련이다. 게다가 원고 측 변호사가 아주 독특한 사고를 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소송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원고 측이 원고의 삭제된 범죄기록을 기사화하는 것이 미래의 고용 관계를 심각하게 훼방할 것이라는 쟁점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측, "명예 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소송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언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햄프셔에서는 언론에 이러한 보호막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5월 초에 하원 의회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채프맨 변호사는 이 법안에 대해 "뉴햄프셔의 언론사에게 삭제된 범죄기록에 관한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 법안 중 범죄기록의 삭제에 관한 부분은 총 세 장으로, 이 중 두 장이 언론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 기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삭제된 범죄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그 범죄의 내용을 보도한 경우

(b) 해당 범죄기록이 삭제되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삭제되었다는 사실은 보도하지 않은 채 해당 범죄의 내용을 보도한 경우

■ 기자 또는 언론사는 보도 이후에 범죄기록이 삭제된 경우 범죄기록이 있다는 사실, 또는 그 범죄기록의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삭제하거나 정정하지 않은 데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이 법에 따르면 기자가 해당 범죄기록의 삭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책임이 없다. 그러나 삭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보도하여야만 한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며, 만약 이대로 통과된다면 삭제된 범죄기록의 공표에 대한 논란에 있어 언론사에 보호막을 쳐 줄 최초의 법이 되는 셈이다.

[영국동향]

라이언 긱스 사건으로 야기된 인터넷을 통한 유명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 G8 안건으로 인터넷 규제 상정

헤럴드 스코틀랜드(Herald Scotland) 6월 1일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영국 총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 유명 축구선수인 라이언 긱스(Ryan Giggs)의 사생활 보도금지 명령(super-injunction row)과 관련, 유명인에 대한 인터넷상 규제를 강화할지 여부에 대해 세계 정상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영국의 한 언론사가 자신이 톱모델 이모겐 토마스와 불륜에 얽혀있다는 소문을 보도할 예정이란 것을 안 긱스는,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불륜과 관련된 사실은 물론, 그가 보도금지 명령을 받아냈다는 사실 자체도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익명의 트위터 이용자가 긱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페이스북 등 다른 SNS 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졌다. 법원의 보도금지 명령이 사실상 무의미해졌고, 심지어 헤럴드 스코틀랜드의 일요판인 '선데이 헤럴드' 가 1면에 그의 사진을 게재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법원의 보도금지 명령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무의미해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결국 이번 주에 프랑스 북부 도빌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부총리이자 자유민주당 대표인 닉 클레그(Nick Clegg)는 아무도 법망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동료 의원이 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긱스의 실명을 밝힌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제프리 로버트슨(Geoffrey Robertson) 왕실 고문변호사 또한 실명을 밝힌 존 헤밍(John Hemming) 의원이 법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의회가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헤밍 의원은 자신이 해당 선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나는 그 보도금지령의 당사자도 아니고, 그 금지명령을 눈으로 본 적도 없으며, 그런 게 실제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선데이 헤럴드 뿐만 아니라 위키디피아, 트위터에서도 그 선수의 이름을 봤다. 의사당에서 했던 말을 연단에서 다시 하라면 또 하겠다. 이것은 공적인 관심사이다. 의회의 면책특권을 이용하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그랬을 것이다."

한편 트위터사는 수십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긱스의 신원 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명령을 보란 듯이 위반하도록 내버려둬 법을 노리개로 삼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몇몇 인터넷사는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나,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트위터사에서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는 총리조차도 "계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한 보도금지령에 대한 법률을 재검토할 것을 결정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법률이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간 갈등 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 웹사이트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총리의 대변인은 인터넷에 법원의 보도금지 명령을 어긴 책임을 물어야할지 여부에 대한 이번 사건이 정상회의에서 논의될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고

"유동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확정적인 결정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또한 해당 법률에 대해 G8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트위터와 같은 인터넷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러한 기술적 부분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통신원 보고]

최지선 통신원, 파리2대학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

더 타임즈(The Times) 기자, 법원이 보도 금지 명령한 사안을 트위터에 게재해 논란

더 타임즈 (The Times)의 한 기자는 법원이 보도금지 명령을 내린 사건에 대해 트위터에 누설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될 상황에 처했다. 이번 사건은 소셜 네트워킹에서 법원의 명령을 어긴 최초의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자는 법원의 심리 중에 있는 영국의 프로 축구 선수가 관련된 혼외 정사 사건에 대해 고등 법원이 선수의 이름을 알 수 없도록 보도 금지령을 내린지 수 시간 후에 해당 선수의 이름을 트위터에 밝히고 그에 관한 농담을 함께 올렸다.

기자가 이 내용을 올린 지 하루 만에 13,000여 명의 팔로워들이 트위터를 통해 이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선수의 실명과 함께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확대되었다. 영국 고등법원의 보도 금지 명령이 미치지 않는 스코틀랜드에서는 일간지마저 해당 선수의 실명과 사진을 1면에 싣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법원의 보도 금지 명령이 트위터로 인해 유명무실해지게 된 것이다.

기자가 트위터에 해당 내용을 올린 것이 법원의 보도 금지 명령을 어긴 것으로 결정이 나면 법정 모독죄로 벌금 혹은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여러 면에서 민감한 측면이 많아 처벌 여부와 처벌 수위를 두고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물론 여러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첫째, 이번 케이스는 법원이 보도 금지 명령을 내린 사안을 개인 트위터를 통해 누설한 것으로 언론이나 방송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 법원의 명령이 소셜 네트워킹에까지 적용이 되느냐는 점이다. 둘째, 해당 사안을 트

위터에 올린 사람이 기자라는 점 역시 법정에서 첨예하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다. 기자이면서 트위터 사용자라는 이중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선수는 이번 사건으로 미국에 본사를 둔 트위터사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유사한 경우, 익명의 트위터 사용자들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트위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문제가 발생한 다른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판결을 내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논란이 된 기자의 트윗은 이미 삭제되었으나, 해당 선수의 법무팀과 변호사는 판사에게 이번 사례를 법무 장관에게 이관할 것을 요구하였다.

해당 기자가 소속된 더 타임즈의 편집부는 "타임즈에서는 트위터에 올린 기자가 누군지 알고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자는 트위터 유저들에게 자신을 지지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논란이 있는 발언을 트위터에 올린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감옥은 없을 것이다"고 다시 한 번 트위터에 올렸다. 또, 자신이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다면 트위터 팔로워들이 자신에게 와인이나 케이크를 선물로 보내줄 것을 제안하는 농담을 올렸다.

법원이 보도 금지한 사건을 트위터에 올린 것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통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타임즈 기자인 것이 이례적으로 밝혀졌지만, 일반적으로 익명의 사용자들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고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몇몇 전문가들은 기자가 법원에 의해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테일러 웨싱(Taylor Wessing) 로펌의 미디어 법무팀장인 니리 산(Niri Shan)은 "이 정도의 위법 행위로 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법원이 추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판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더햄 유니버시티(Durham University) 법학부의 가빈 필립슨(Gavin Phillipson) 교수 역시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어떤 내용을 올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다"며 법원에서 이번 사건을 사례로 삼는 결정을 내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佛 CSA, 언론사에 형사소송 중인 피고인에 대한 보도 신중할 것 권고

프랑스 시청각고등위원회(Le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 CSA)는 언론 자유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법[1]의 '무죄추정원칙에 기반한 보도원칙'을 근거로 언론사에 유력 대선 후보이자 전 IMF 총재인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Dominique Strauss Kahn)의 성추문 사건과 관련한 보도를 신중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 법에 따르면, 프랑스는 형사재판 중에 있으나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 수갑을 차거나 결박되어 있는 모

1) 언론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을 2000년에 개정한 것임.

습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법원은 해당 언론사에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특히, 위 규정은 언론사가 비록 피고인의 무혐의나 결백과 관련한 설명, 코멘트를 주로 게재한다고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 설명이나 코멘트의 내용과 상관없이 보도된 사진이나 이미지 자체로 피고인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사진이나 이미지의 보도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피고인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나 언론 보도의 자유에 관한 법률도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것이 CSA의 입장이다. 즉, 표현의 자유나 언론 보도의 자유에 앞서 아직 범죄 사실이 결정되지 않은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특정 언론사에 자신의 이미지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언론사에서 같은 사진을 게재하여 보도하는 것까지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그러나 CSA는 스트로스칸의 수갑을 차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는 프랑스 방송사가 미국 방송사 화면 또는 프랑스 타 방송사 화면을 재송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 방송사가 단순히 피고인의 혐의를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 조항과 CSA의 입장에 근거해 스트로스 칸의 변호사 중 한명인 도미니크 드 러스(Dominique de Leusse) 역시, 수갑을 찬 스트로스 칸의 사진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언론법 전문 변호사인 히샤 말카(Richard Malka)는 언론 보도에 대한 자유와 권리가 '모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러한 CSA의 결정에 힘을 싣고 있다.

이번 스트로스 칸의 사건과 비슷하게 2004년 6월 11일 3개 언론사(Paris Match, VSD, FranceSoir)가 유명 가수 베르트랑 컨타(Bertrand Cantat)가 수갑을 찬 채, 2003년 8월 예심판사의 심리를 받고 나오는 사진을 게재하여 파리 형사합의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의 경우 2004년 3월, 컨타가 동거녀 마리 트랑티냥(Marie Trintignant)을 실제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언론사들이 피고의 수갑 찬 사진을 게재한 시점이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2003년이었기 때문에 언론 자유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법의 제 35조를 적용, 언론사들이 벌금형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파리 법원, 저작권법 침해로 구글(Google)에 벌금형

파리 법원은 구글 프랑스(Google France)와 구글 본사(Google Inc.)에 대해 저작권법 침해로 43만 유로(원화 약 7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영화 Mondovina의 제작자, 사진 작가, 아르테(Arte)와의 공동제작으로 만들어진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에 관한 다큐멘터리의 제작자들, 꺄날 쁠뤼스(Canal +)와의 공동제작으로 만들어진 드니 호베르(Denis Robert) 기자의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 사건에 관한 다큐멘터리의 제작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고측은 자신들의 다큐멘터리와 사진이 구글을 통해 노출이 되었고, 구글 측에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글 검색 페이지를 통해 영상물 시청이 가능했던 것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파리 법원은 구글에 43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원고측에 피해배상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구글이 영상물을 삭제하고, 일반적인 감시를 지속하여 다시 영상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법원 입장에 대해, 구글은 서버 기술자에게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이를 금지한 2004년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신뢰를 위한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더구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 사용자에 의해 사이트에 올려진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사의 의무 사항에 대해, 상고심은 최근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 노출과 관련하여 유튜브 (Youtube), 데일리모션(Dailymotion)과 같은 플랫폼 서비스사에 책임이 없음을 판결한 바 있어, 파리 법원의 이번 판결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佛 CSA, 방송에서 프로그램의 트위터 및 페이스북 페이지 고지를 간접광고로 간주해 이를 금지

프랑스 시청각고등위원회(CSA)는 방송에서 프로그램 말미에 해당 프로그램의 트위터(Twitter)나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를 고지하는 것을 간접광고로 간주, 이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5월 20일, CSA는 방송에서 소셜미디어 페이지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정보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트위터 및 페이스북으로의 안내는 1992년 3월 27일 시행령의 9조에 따라 간접광고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CSA의 입장이다. 1992년 3월 27일 시행령의 9조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정 회사의 서비스, 상품, 이름 등을 언급하거나 로고 등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을 간접광고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방송사들은 시청자들을 해당 프로그램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이끌기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이라는 서비스명을 직접 사용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안내해야 한다.

한편, 방송사들과 몇몇 전문가들은 이것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대한 간접광고라기보다는 방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료

- 언론조정 · 중재 신청사례
- 국내언론관계판결
- 외국언론관계판결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 언론법제관련문헌

PAC

언론조정 · 중재 신청사례

편집자 주 – 본 사례들은 사건개요를 게재한 것이므로 보도내용 원문, 피해구제보도문 등은 해당 사건이 수록된 연차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 · 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의 침뜸 치료는 효과가 없으며, 후원자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건번호 : 2011서울조정6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남수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1. 01. 28.
처리결과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침뜸의 대가로 알려진 신청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다루면서 신청인 측이 암으로 숨진 영화배우 장진영을 침뜸치료로 나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치료가 시작되었고, 침뜸치료가 장씨의 암치료에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일부 유명인들을 치료한 사실을 과장하여 홍보하고 있고, 신청인의 후원자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고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장씨에 대한 침뜸치료는 장씨의 소속사 간부와 장씨 부친의 간청으로 시작되었고, 침뜸치료가 암의 '림프절 전이' 부분에 있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며, '유명인 치료 과장' 과 관련한 부분의 경우 신청인의 치료 후 현재 생존해 있는 유명인은 뺀 채 의도적으로 고인이 된 사람의 가족들만 주로 취재해 신청인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고, 후원자로부터는 건물을 기증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임대받은 것이므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일부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하여 자동소제기 되어 현재 이 사건은 법원에 계류중이다.

■ **조정대상보도**

SBS-TV 〈SBS뉴스추적〉 프로그램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테리' 제하의 보도(2010년 11월 4일 23:15)

■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SBS-TV 오후 11시 15분 〈뉴스추적〉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되, 조정대상보도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터리" 정정보도문

나. 내용 : 본 방송은 지난 2010년 11월 3일 오후 11시 15분에 뉴스추적 프로그램 "현대판 화타, 구당 김

남수 미스터리" 편에서 한국정통침구학회 김남수 회장의 96년 인생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첫째, 장진영 씨의 당시 남자 친구였던 남편 김ㅇㅇ 씨가 '신청인이 침뜸으로 낫게 해주겠다고 했다.' 라는 인터뷰와 관련해, 사실은 장진영 씨 소속사 간부의 간곡한 부탁과 장진영 씨 부친의 간청으로 치료가 시작된 것일 뿐 이러한 취지의 얘기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침뜸 치료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김ㅇㅇ 씨의 인터뷰 역시 이상호 기자의 기록을 보면 침뜸 치료 시작 후 1개월이 지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주치의가 아닌 수련의가 알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마지막 치료일자의 오류에 관한 김ㅇㅇ 씨의 거짓 인터뷰에 관련해 사실은 김ㅇㅇ 씨가 자신의 이메일에서 잘못을 시인했으나 인터뷰에서는 계속 2월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암의 전이도 날짜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진영 씨 암 치료 효과가 별로 없었다' 는 방송과 관련해 김ㅇㅇ 씨 자신 책에서도 '효과가 있다' 라는 의사의 증언이 나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오류를 김ㅇㅇ 씨 스스로 범하고 있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SBS 취재진은 건국대 병원 의사만 취재해 당시 장진영 씨 치료를 맡았던 서울대 의료진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셋째,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뉴스추적 한 프로그램에서 83년과 87년으로 앞과 뒤가 다른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 사실을 잘못 증언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신청인이 이미 제출한 1954년 개원하고 있던 원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아도 명백한 허위 증언이고 확인하지 않은 보도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넷째, 유명인 치료 부분도 살아 있는 분들은 직접 취재가 가능한데 그의 가족 등만을 취재해 신청인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다섯째, 후원자에 대한 허위정보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되었으나 신청인이 소유한 건물 등 한 칸도 없음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여섯째, 화상침에 대한 방송도 한의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신청인이 연구 보급한 뜸을 교묘하게 화상침으로 연결시켰고, 구당 화상침은 누구나 하는 침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일곱째, '이상호 기자가 침뜸치료 했다.' 라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며, 단지 옆에서 도와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덟째, 화상환자 치료 부분과 관련해 구당 화상침으로 병이 나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등장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의도적으로 구당을 깎아내리기 위한 보도임이 밝혀졌습니다.

아홉째, 훈장 부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이미 행정착오로 공적이 바뀐 오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마치 신청인이 조작한 것처럼 뉘앙스를 주어 신청인이 마치 부도덕한 인물로 보이게 한 바 이 부분 역시 바로잡습니다.

■ **사건 처리결과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결정내용〉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SBS-TV 〈뉴스추적〉 프로그램 말미에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되, 제목 및 본문은 화면에 계속 표시하고 내용은 원 진행자

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가. 제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내용 : 지난해 11월 4일 뉴스추적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테리」 제하의 보도와 관련, 구당 김남수 옹의 장진영 씨에 대한 침뜸치료는 장진영 씨 소속사 간부 및 부친의 간청으로 시작되었고, 암이 전이된 시기인 2월에는 구당이 장진영 씨를 진료한 적이 없으며, 장진영 씨를 마지막으로 치료한 날은 12월 25일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구당 김남수 측은 "침뜸을 이용한 장진영 씨의 암 치료 과정을 보면 림프절 전이 부분이 상당히 호전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김남수 옹은 유명인들을 치료한 사실에 대해 과장하여 홍보한 적이 없고, 후원자로부터 건물을 공짜로 기증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임대 받은 것이며, 구당 화상침을 다른 한의사들도 쉽게 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구당 김남수 측은 "1954년 원주에서도 진료를 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 취득한 침구사 자격에 대하여 1983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적법하게 재발급 받았다. 행안부의 훈장 부분과 관련해, 구당은 침뜸 봉사활동 공로로 수여받았다고 알고 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 피신청인 이의신청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2009년 베트남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신청인 기관의 분석, 발표가 궁색한 '짜맞추기'에 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11서울조정219 · 220
청 구 명 :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1. 03. 18
처리결과 : 조정성립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발표한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및 역학조사에 대해 다루면서, 정부가 2010년 베트남을 다녀온 안동의 축산농민을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경로로 추정하려는 의도에서 홍콩이나 러시아형 바이러스보다 일치도가 크게 떨어지는 2010년 베트남형 바이러스 실험결과는 놓아두고 2009년 것과 비교하는 등 검사결과를 '짜맞추기'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국제표준연구소에서 안동 바이러스를 분석한 실험은 2010년의 베트남 바이러스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안동 바이러스와 2010년 베트남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98.44% 일치해 다른 국가의 바이러스 유전자 일치도와 별 차이가 없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해명과 입장을 담은 기고문을 오피니언 지면에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경향신문 『국제연구소 공개 2010년 베트남형 유전자 정보 놔두고 …, 정부, 2009년 것과 비교 '짜맞추기'』

제하의 기사(2011년 2월 16일자 3면)

내용 : 정부가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의 구제역 바이러스를 2009년 베트남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유사하다고 비교 · 발표한 데 대해 '궁색한 짜맞추기' 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분석 결과가 없다고 한 2010년 베트남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도 구제역 국제표준연구소의 홈페이지에 작년 11월 당시 공개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안동 바이러스와 2009년 베트남 바이러스 유전자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직접 비교했더니 98.59%의 일치도가 나왔다"며 베트남을 유입 경로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2010년 베트남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정보가 국제기구 등에 등재된 바가 없어 2009년 바이러스를 비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제역 국제표준연구 홈페이지엔 2010년에 베트남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결과(지난해 11월 17일)가 공개돼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를 근거로 "국제표준연구소에서 안동 바이러스를 분석한 실험은 당연히 2010년의 베트남 바이러스도 포함된 상태에서 실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표준연구소가 이미 안동 바이러스의 유사성을 검토했지만 안동 바이러스의 유전자 트리에서 2010년형 베트남 바이러스는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1월 초에 베트남을 다녀온 안동의 축산농을 국내 유입 경로로 지목하려면 안동 바이러스는 2010년 베트남 바이러스와 유사해야 하지만, 검사결과는 홍콩형 · 러시아형보다 일치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가 이 축산농을 역학조사하면서 최신의 과학적 정보를 무시한 채 억지로 2009년 베트남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비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해 4월 강화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는 99.06%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강화 바이러스의 토착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의과학검역원 측은 "국제표준연구소가 밝힌 안동 바이러스의 유전자 트리에 2010년 베트남형이 안 보이는 것은 비교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경향신문 종합면 좌측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가. 제목 : 정부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짜맞추기'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나. 내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16일자 종합면에 "국제연구소 공개 2010년 베트남형 유전자 정보 놔두고… 정부, 2009년 것과 비교 '짜맞추기' "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4월 강화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11월 안동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는 99.06%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와 "국제표준연구소에서 안동 바이러스를 분석한 실험은 당연히 2010년의 베트남 바이러스도 포함된 상태에서 실험한 것"이라는 이춘석 의원의 발언 내용을 보도하고, "결과적으로 지난해 11월 초에 베트남을 다녀온 안동의 축산농을 국내 유입경로로 지목하려면 안동 바이러스는 2010년 베트남 바이러스와 유사해야 하지만, 검사결과는 홍콩형 · 러시아형보다 일치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제역 국제표준연구소의 분석결과 보고서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확인 결과, 지난해 4월 강화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11월 안동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98.44% 일치하였으며, 국제표준연구소에서 안동 바이러스를 분석한 실험은 2010년의 베

트남 바이러스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경로는 바이러스의 유사성 뿐 아니라 농장주의 발병국가 여행 여부, 입국 시 소독 여부 및 여행시기와 발병 시기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안동 바이러스와 2010년 베트남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98.44% 일치하여 홍콩 · 러시아형과의 일치도와 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사건 처리결과 :** 조정성립

〈합의내용〉

1. 피신청인은 2011년 4월말까지 경향신문 오피니언면에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한 신청인 기고문을 게재하되, 그 형식은 오피니언면에 게재되는 기고문의 통상적인 방식을 따른다.

2. 신청인은 사건 보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구제역 바이러스와 유전자, 조인수 수의과학검역원 해외전염병과장』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6일자 오피니언면)

내용 : 구제역 바이러스에는 O, A, Asia1, C, SAT1, SAT2 및 SAT3형의 7가지가 있다. 이중 우리나라에 유입될 위험이 높은 것은 O, A 및 Asia1형 바이러스다. O형은 2000년과 2002년 그리고 2010년 4월과 11월에 발생했고, A형은 2010년 1월 포천에서 발생한 바 있다. Asia1형을 비롯한 나머지 5종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O형은 다시 유전자 특성에 따라 8가지의 지역형으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지역형은 구제역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 중의 하나인 브이피원(VP1) 단백질과 관련된 639개의 유전자를 비교분석하여 구분하게 된다.

2000년과 2002년 경기도 파주와 안성에서 발생했던 구제역은 O형 중에서도 ME-SA(중동-남아시아)형이었고, 2010년 강화와 안동에서 발생한 것은 SEA(동남아시아)형이었다. 구제역 바이러스 O형은 주로 유럽 및 아시아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발생을 보인다. 이중 SEA형은 주로 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다.

작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도 SEA형이며 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Mya-98주 유래로 확인됐다. 유전자 분석결과 홍콩, 러시아,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지역 구제역 바이러스와 유전적 연관성이 있음이 확인됐다. 같은 해 4월 강화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는 98.44%의 유전자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번 구제역이 강화에서 발생했던 바이러스가 남아 있다가 재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첫째, 우리나라는 바이러스가 순환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과학적인 자료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제출하여 2010년 9월27일 청정국 인정을 받았다. 둘째, 전염력이 강하고 증상이 뚜렷한 구제역의 특성 때문에 수개월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고 퍼져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전자분석을 통해 유입경로를 파악할 수도 있으나 유입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역학조사결과가 가장 중요하며 유전자 분석결과만으로 유입원인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났다. 농민뿐 아니라 구제역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구제역이 조속히 안정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다.

102 동료 교수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교수 4명에 대해 신청인 대학이 연구실 폐쇄조치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건번호 : 2011서울조정330 · 331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피신청인 : (주)한국대학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1. 03. 2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 학교법인 서강대학교가 동료교수 4명으로부터 고발됐던 K교수의 기소유예 처분사실을 알자마자 학과장에 임명했고, 보직 임명 후 K교수가 '4명의 고발 교수들과 경영대 건물을 같이 사용할 수 없다' 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자 이를 수용해 4명의 연구실을 폐쇄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이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K 교수는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학과장 임명은 무혐의 처분일 이전에 이뤄졌고, 4명의 동료교수 연구실은 K 교수가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폐쇄됐으며,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 중 '연구실 폐쇄' 부분만 간접강제 결정을 받은 것이라며 정정보도와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한국대학신문과 한국대학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한국대학신문 『서강대 이상한 인사 '뒤숭숭'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4일자 2면)

내용 : 서강대가 지난해 국고 연구비 횡령 의혹을 받아 고발됐던 경영대 K교수에게 보직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K교수가 보직을 맡은 후, 그를 고발했던 동료 교수 4명은 대학 측으로부터 연구실을 폐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서강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K교수를 WCU사업단인 경영전문대학원 서비스시스템경영공학과장에 임명했다. K교수는 지난해 7월 국고 연구비 횡령 혐의가 의심돼 4명의 동료 교수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주목되는 사실은 K교수가 학과장 임명 다음날인 12월 29일 '증거 불충분' 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 서강대가 K교수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것을 미리 알고 보직 임명을 했으리란 추측이 가능하다.

서강대 한 교수는 "비록 기소유예라 하더라도 혐의가 없다고 판결 내려진 게 아니라, 증거 불충분이다. 완전히 혐의가 없다고 확인될 때까지 검증을 거친 후 보직을 맡기는 게 옳지 않느냐"며 "학교 측이 K교수의 기소유예 사실을 알자마자 즉각 학과장에 임명한 건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서강대 교수 역시 "보직이란 한 대학을 대표하는 자리다. 대학이 이 같은 자리에 불명예스러운 의혹을 받고 있는 K교수를 앉힌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K교수가 지난달 말 이종욱 총장에게 "4명의 고발 교수들과 경영대 건물을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제출했고, 학교 측에서 이를 수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서강대는 최근 K교수를 고발한 4명의 경영대 교수들이 자신의 연구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현재 4명 교수는 학내 게스트하우스 숙소, 창업보육센터 가건물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강대 한 교수는 "K교수가 학과장으로 있는 서비스시스템경영공학과는 WCU사업단이다. 그런데 현재 학과를 이끌어 갈 교수가 K교수 외엔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며 "대학 측도 '울며 겨자먹

기' 식으로 K교수에게 보직을 맡기고,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WCU를 반납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서강대 측은 K교수 인사 논란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강대 재단 관계자는 "이는 교수들 간 내부 문제다. 또 아직 고발 교수들에 대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다만 K교수는 고발당했고 결과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K교수 입장에서는 불공정 인사 논란이 억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강대 경영대 교수 4명은 동료인 K교수의 국고 연구비 횡령 의혹 등을 검찰에 고발, '해교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 ·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4명 교수들은 법원에 지위보존 가처분 신청을 냈고 12월 재판부는 "동료 교수의 연구비 횡령 등을 외부에 공표한 점이 해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교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원 판결을 서강대는 불이행했고, 4명 교수들은 지난달 14일 법원에 간접강제 이행 신청서를 제출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한국대학신문 제2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2. 피신청인은, 한국대학신문(http://www.unn.net)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서강대, 이상한 인사 뒤숭숭)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 3. 31.까지 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연할 경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서강대 이상한 인사 뒤숭숭' 정정보도문(또는 '서강대 이상한 인사 뒤숭숭' 관련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나. 내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14일 ~ 2월 19일(제781호)자 신문 제2면에 「서강대 이상한 인사 뒤숭숭」이라는 제목으로, ①「K교수가 보직을 맡은 후, 그를 고발했던 동료 교수 4명은 대학 측으로부터 연구실을 폐쇄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②「K교수가 학과장 임명 다음날인 12월 29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③「비록 기소유예라 하더라도 혐의가 없다고 판결 내려진 게 아니라, 증거 불충분이다」, ④「학교측이 K교수의 기소유예 사실을 알자마자 즉각 학과장에 임명한 건 부적절한 처사」, ⑤「K교수가 지난달 말 이종욱 총장에게 '4명의 고발 교수들과 경영대 건물을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제출했고, 학교 측에서 이를 수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서강대는 최근 K교수를 고발한 4명의 경영대 교수들의 연구실을 자물쇠로 막고, 보안장치를 설치했다」, ⑥「해당교수들은 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냈고, 12월 재판부는 '동료 교수의 연구비 횡령 등을 외부로 공표한 점이 해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교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원 판결을 서강대는 불이행 했고」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확인한 결과, K교수를 고발했던 동료 교수 4명에 대한 연구실은 K교수가 보직을 맡기 약 1개월 전에 이미 폐쇄가 되었으며, K교수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2010. 12. 29. 기소유예 처분이 아니

라 2010. 12. 30. 혐의 없음 처분이고, 2010. 12. 28.부로 K교수를 학과장에 임명하였고 이는 K교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일보다 앞선 것으로 서강대가 기소유예 사실을 알자마자 학과장에 임명한 것이 아니며, 4명의 고발 교수들에 대한 연구실 폐쇄일은 2010. 12. 1.이며 K교수의 탄원서는 2011. 1. 25.에 제출된 것으로 연구실 폐쇄와 K교수의 탄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서강대는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의 6개 의무 사항 중 '연구실 폐쇄' 부분에 대하여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았으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사건 처리결과 :** 조정성립

〈합의내용〉

1. 보도문

가. 제 목 :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지는 지난 2011년 2월 14일 ~ 19일 자 제781호 2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체뉴스 대학행정면에서 「서강대 이상한 인사 뒤숭숭」 제하의 보도와 관련, 사실 확인 결과, K교수가 학과장에 임명된 것은 2010. 12. 28.이고, 2010. 12. 30. 자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동료교수 4명의 연구실은 K 교수가 보직을 맡기 이전에 폐쇄됐으므로 2011. 1. 25.에 제출된 K 교수의 탄원서는 연구실 폐쇄와는 무관하며, 서강대는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 중 '연구실 폐쇄' 부분에 대해서만 간접강제 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1년 4월 18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대학신문〉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한국대학신문〉의 통상적인 〈정정보도문〉 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지면에 기사를 게재한 시점부터 7일간 동안 〈한국대학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상기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 및 내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활자와 크기로 하며, 메인 화면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대학신문 2011년 4월 18일자 2면), (인터넷 한국대학신문 2011년 4월 18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조정대상보도 하단)

내용 : 〈상단 '합의내용 – 1. 보도문' 참조〉

유사경유를 주입하는 전세버스 업체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회사의 버스사진을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11서울조정343 · 344
청 구 명 :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고속관광
피신청인 : (사)한국주유소협회(한국주유소협회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1. 03. 25
처리결과 : 조정성립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경유 버스 운전자들에게 보일러 등유를 판매한 자들이 적발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신청인 회사 소속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회사는 자신들은 유사경유를 사용한 바가 없으며, 기사내용과 무관한 신청인 회사 소속 버스 사진이 실려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1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한국주유소협회신문 1면과 한국주유소협회 홈페이지 팝업창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1백5십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한국주유소협회신문 『시민들이 탑승하는 버스도 유사경유 주입』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5일자 10면)

내 용 : 경유 버스 운전자들에게 보일러 등유를 판매한 자와 이를 구입한 버스 운전사들이 적발됐다. 지난 28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보일러 등유를 판매한 김모씨(28)를 불구속 입건하고 또 이를 구입해 경유 차량에 보일러 등유를 주입하고 운행한 버스 운전기사들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부산 동래구 명장동 한 전세버스 차고지에서 1톤짜리 탱크로리를 이용해 보일러용 등유를 팔기 시작했다. 이후 유가가 폭등하자 보일러용 등유를 버스운행에 이용하겠다는 버스운전자들이 몰렸고 김씨는 10달 동안 15만ℓ의 보일러 등유를 팔아 1억 6,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보일러 등유를 넣고 운행한 전세버스가 약 50대에 달하며 버스 한 대당 한 달에 최고 20여 차례 보일러 등유 주입후 전국 각지를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은 '이 과정에서 버스기사들이 허위전표를 발급받아 한 달에 수 십 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유 차량에 보일러 등유 주입 후 운행할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장기간의 등유 사용으로 차량 부품 일부가 마모돼 그 사이로 기름이 흐르면 고온의 엔진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차량들이 대부분 시민을 태우는 버스라는 점에서 위험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2면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일천오백만 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정정보도문

나. 내용 : 본 신문 지난 3월 5일 10면 상단에 보도된 "시민들이 탑승하는 버스도 유사경유 주입" 기사와 관련하여 부산에 있는 전세버스 업체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그와 전혀 무관한 무주리조트에 세워진 (주)광남고속관광의 버스사진을 찍어서 게재하여 마치 (주)광남고속관광이 유사경유를 주입한 것처럼 보도하였

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주)광남고속관광은 기사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사건 처리결과 :** 조정성립

〈합의내용〉

1. 보도문

가. 제목 : 〈정정보도문〉

나. 내용 : 본 협회 신문은 지난 2011년 3월 5일자 10면 「시민들이 탑승하는 버스도 유사경유 주입」제하로 경유 버스 운전자들에게 보일러 등유를 판매한 자들이 적발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광남고속관광' 소속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사진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광남고속관광' 소속 버스는 유사경유를 사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기사의 내용과는 무관한 업체인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정신적 · 경제적 고통을 입은 '광남고속관광'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1년 4월 20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주유소협회신문〉 1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한국주유소협회신문〉의 통상적인 〈정정보도문〉 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4월 25일까지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은 2011년 4월 18일부터 2주일 동안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국주유소협회신문〉 홈페이지 팝업 창을 띄워 접속 시마다 위 보도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주유소협회신문 2011년 4월 20일자 1면, 인터넷 한국주유소협회신문 2011년 4월 18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내용 : 〈상단 '합의내용 – 1. 보도문' 참조〉

국내언론관계판결

편집자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주소 등을 익명처리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판례 1]

대법원, '안기부 X파일' 관련 도청된 대화내용 보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행위의 주체를 '제1호의 불법 감청 · 녹음 등에 관여하여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지득한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규정의 문언이나 조문의 체계,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신 또는 대화의 불법 감청 · 녹음 등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경로를 통하여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공개 · 누설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월 17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도청된 대화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에게 모두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국가기관의 불법 도청을 고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고 볼 수 없고, 보도시점에서 8년 전 대화가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보도하고 도청 자료 입수 과정에서 사례비를 지급하는 등 방법의 상당성도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김 전 편집장도 자료의 취득과정이나 보도 방법 등에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홍훈 등 5명의 대법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재계와 정치권의 유착 관계에 대한 실체를 고발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 기자는 1997년 9월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만나 특정 대통령 후보 진영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과 정치인 ·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한 추석 떡값 지급 등의 문제에 대해 나눈 대화를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비밀 도청팀 '미림'이 불법 도청해 만든 '안기부 X파일' 테이프를 입수해 2005년 7월 보도한 혐의로, 김 전 편집장은 그 다음달 녹취록 전문을 보도한 혐의로 2006년 3월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기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 전 편집장에게는 "녹취록 전문을 가감없이 보도했고 그 내용 중 공익상 필요성이 없는 부분까지 보도한 책임이 있다"며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도청된 테이프임을 알고도 대화 내용을 실

명 보도하는 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크게 벗어났다"며 이 기자에게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대 법 원

판 결

사 건 : 2006도883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 : 1. 이상호
2. 김연광
상 고 인 :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 외 2인
원 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9. 29. 선고
판 결 선 고 : 2011. 1. 1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이상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헌법은 제18조에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 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이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공개의 염려 없이 사적 영역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통신의 영역에서 두텁게 보호한다는 전통적인 기능을 넘어, 개인 간의 의사와 정보의 무제한적인 교환을 촉진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나아가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이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제18조에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여 개인 간의 의사소통이 양적 · 질적으로 더욱 확대되고 편리해진 반면에, 이에 수반한 감청장비 및 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국가기관은 물론 사인까지도 손쉽게 다른 사람의 통신이나 대화를 불법 감청 내지 녹음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감청 내지 녹음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그 폐해가 사인의 그것에 비하여 중대하고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기가 어려운데, 과거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경험하였던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관에 의해 통신의 비밀이 침해되고 마침내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까지도 들여다보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법 감청이나 녹음에 의한 통신비밀의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와는 별도로 그러한 행위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비밀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까지도 금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불법 감청 내지 녹음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물의 공개 내지 누설을 봉쇄함으로써 그와 같은 행위를 하려는 유인 자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이와 같은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먼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행위 등 통신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이하 이러한 행위들을 '불법 감청 · 녹

음 등' 이라고 한다)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불법 감청 · 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제2호). 이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의 공개 · 누설행위를 불법 감청 · 녹음 등의 행위와 똑같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그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그 정보 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이는 불법의 결과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유인마저 없애겠다는 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⑵ 한편 민주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 ·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언론의 자유 또한 헌법상의 중요한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고,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확인하고 있듯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언론기관의 보도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언론의 자유가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앞서 본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 · 누설금지 조항의 적용을 함부로 배제함으로써 통신의 비밀이 가볍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불법 감청 · 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형법은 제20조에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는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그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통신비밀의 공개 · 누설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따라서 불법 감청 · 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의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에 관한 보도가 통신의 비밀이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이익을 능가하는 우월적인 가치를 지님으로써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면, 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다.

⑶ 이와 같이 불법 감청 · 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불법 감청 · 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것이 공적인 관심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

첫째, 그 보도의 목적이 불법 감청 · 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불법 감청 · 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중의 생명 · 신체 · 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등이 불법 감청 · 녹음 등과 같

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사실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언론기관 본연의 사명이라 할 것이고, 통신비밀보호법 자체에 의하더라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 에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제8조),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 아래에서는 개인 간의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허용된다.

둘째,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 · 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함에 있어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 · 주도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셋째, 그 보도가 불법 감청 · 녹음 등의 사실을 고발하거나 비상한 공적 관심사항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는 등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하여야 한다. 여기서 그 이익의 비교 · 형량은 불법 감청 · 녹음된 타인간의 통신 또는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 통신 또는 대화 당사자의 지위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불법 감청 · 녹음 등의 주체와 그러한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언론기관이 그 불법 감청 · 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보도의 목적, 보도의 내용 및 그 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⑷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실관계 중 상고이유에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도청자료는 전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기관인 미림팀이 1997. 4. 9., 같은 해 9. 9. 및 같은 해 10. 7.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사이에 호텔 식당 등에서 이루어진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로서,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진영에 대한 삼성그룹 측의 정치자금 지원 문제 및 정치인과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이른바 추석 떡값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한 대화가 담겨 있다. 미림팀장이었던 공OO은 이 사건 도청자료를 임의로 반출하여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1999. 9.경 당시 집권당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삼성그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던 박OO에게 이를 넘겨주었다. 그 후 박OO는 2004. 12.경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 이라고만 한다)의 기자인 피고인 이상호를 만난 자리에서 위 녹취보고서를 건네주면서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불법 녹음한 것인데 그 무렵 주미대사로 임명된 홍석현의 과거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위 피고인은 문화방송의 간부들과 상의한 결과 녹음테이프 없이 녹취보고서만으로는 이 사건 도청자료를 보도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미국으로 건너가 박OO를 만나 취재 사례비조로 우선 1,000 달러를 지급하면서 추가로 문화방송에서 취재비 명목으로 1만 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말한 후, 그와 함께 귀국하여 그로부터 위 녹음테이프를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은 위 녹음테이프를 복사한 다음 그 녹음된 음성의 성문분석을 위하여 박OO와 함께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확인 작업을 마친 후 그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2005. 2.경부터 위 피고인이 이른바 '엑스파일' 을 입수하였다는 소문이 언론계에 퍼지기 시작하자, 그 무렵 문화방송은 '안기부 엑스파일' 관련 특별취재팀을 구성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이었던 임OO을 찾아가는 등 이 사건 도청자료의 출처를 추적하는 한편, 그 내용의 보도에 따른 법률검토에 착수하여 문화방송 고문변호사들로부터는 보도의 내용이 공익에 관한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자문을 구한 다른 변호사들 기타 법조 관계인들로부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그 보도를 보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2005. 6.경 인터넷 언론매체에서 'MBC와 이상호 기자는 침묵을 깰 때' 라는 기사를 게재하여 이 사건 도청자료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같은 해 7.경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이 각기 이 사건 도청자료의 존재와 그 내용에 관하여 비실명 요약보도의 형식으로 기사를 게재하자, 문화방송도 이 사건 도청자료를 보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불법 녹음의 피해자인 홍석현과 이학수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이 사건 도청자료와 관련된 일체의 보도를 하지 말 것을 구하는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 녹음테이프 원음을 직접 방송하거나 녹음테이프에 나타난 대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실명을 직접 거론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 등을 하지 말 것' 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방송은 2005. 7. 21.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 중앙일간지 사주와 대기업 고위관계자 간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입수하였다는 것, 위 녹음테이프에는 대기업이 1997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 진영에 로비를 하고 정치인과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대규모로 추석떡값을 보낼 리스트를 검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따라 당사자의 실명과 육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을 보도하는 수준에 그쳤다가, 그 다음날인 7. 22.부터 후속보도로 이 사건 도청자료를 입수하게 된 경위와 그 수록 내용을 대선자금 제공, 여야 로비, 검찰 고위인사 관리 등으로 세분하여 상세히 보도하면서 대화 당사자와 대화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하였다. 한편 제15대 대통령선거 당시 기업들이 정치권에 대선자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위 보도 이전에 이미 수사가 이루어졌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통신비밀 공개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이 사건 도청자료는 국가기관이 자신들의 대화를 공론화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사인들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진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도청자료를 입수하고 그 성문분석을 통해 원본임을 확인하는 한편, 그 출처에 대한 추적과 그 내용의 보도에 관한 법률자문 등을 통해 그 녹음과정 및 실명공개의 불법성을 확인하고도 그 수록 내용을 실명으로 보도하기까지의 제반 경위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우선 위 피고인이나 문화방송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불법 녹음이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도청자료에 담겨 있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그 대화의 당사자나 내용 등이 공중의 관심을 끌 만한 사안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공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굴지의 재벌그룹 경영진과 유력 중앙일간지 사장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나 정치인과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이른바 추석 떡값을 지원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는 것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 논의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 사회성을 갖춘 공적인 관심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대화의 내용은 앞으로 제공할 정치자금 내지 추석 떡값을 상의한 것이지 실제로 정치자금 등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아닐 뿐더러, 이 사건 보도가 행하여진 시점에서 보면 위 대화는 이미 약 8년 전의 일로서 그 내용이 보도 당시의 정치질서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제15대 대통령선거 당시 기업들의 정치자금 제공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도 이전에 이미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대화 내용의 진실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한 심층 · 기획 취재를 통해 밝혀

진 사실 및 그 불법 녹음 사실을 보도하여 각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함으로써 장차 그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확인 작업도 없이 곧바로 불법 녹음된 대화 내용 자체를 실명과 함께 그대로 공개하여야 할 만큼 위 대화 내용이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로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도청자료가 불법 녹음이라는 범죄행위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녹음테이프를 입수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녹음테이프의 소지인을 만나 취재 사례비 명목의 돈으로 1,000달러를 제공하고 앞으로 1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단순히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녹음의 범행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법 녹음된 대화의 당사자나 내용의 공적 관심도에 착안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자료의 취득에 적극적 ·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셋째, 위 피고인이나 문화방송은 국가기관이 재벌 경영진과 유력 언론사 사장 사이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일이 있었다는 것과 그 대화의 주요 내용을 비실명 요약 보도하는 것만으로도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녹음 사실 및 재계와 언론, 정치권 등의 유착관계를 고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 당사자 등의 실명과 대화의 상세한 내용까지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일탈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보도가 나가기 전에 법원이 이 사건 도청자료의 전면적인 방송 금지가 아닌 녹음테이프 원음의 직접 방송, 녹음테이프에 나타난 대화 내용의 인용 및 실명의 거론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는바, 그 취지는 이 사건 도청자료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는 허용하되 대화 당사자들에 대한 통신비밀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명의 거론이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의 보도를 금지한 것이다. 이처럼 법원이 서로 상충하는 통신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면서 최대한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나 문화방송이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대화 당사자들의 실명과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그대로 공개한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넷째, 이 사건 보도가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녹음행위를 폭로하고 아울러 재계와 언론, 정치권 등의 유착관계를 고발하여 공공의 정보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켜 주고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공익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이와 같은 공익적 효과는 비실명 요약보도의 형태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화의 내용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대화 당사자들에 대하여 그 실명과 구체적인 대화 내용의 공개로 인한 불이익의 감수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대화 당사자들이 비록 국민의 경제적 · 사회적 생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소위 공적 인물로서 통상인에 비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대화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법 감청 내지 녹음되고 공개될 것이라는 염려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쉽게 제한할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앞서 본 이 사건 대화가 불법 녹음된 경위,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도청자료를 취득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보도의 목적과 내용, 방법 등 이 사건 보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보다 결코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도청자료를 공개한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허용된다고 한다면 장차 국가기관 등이 사인 간의 통신이나 대화를 불법 감청 · 녹음한 후 소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언론기관 등과 같은 제3자를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는 상황에 이르더라도 사실상 이를 막을 도리가 없게 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통신비밀 공개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판단유탈 주장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한 문화방송 기자들과 공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였다는 것이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박OO로부터 이 사건 도청자료 중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후 문화방송 간부들과의 상의 아래 적극적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하고 그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도청자료의 보도 과정에 관여하였다면, 이 사건 보도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보도가 문화방송의 보고체계에 따라 결정되어 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위 피고인의 면책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김연광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에서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행위의 주체를 '제1호의 불법 감청 · 녹음 등에 관여하여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지득한 자'로 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규정의 문언이나 조문의 체계,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신 또는 대화의 불법 감청 · 녹음 등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경로를 통하여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공개 · 누설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김연광은 월간조선 편집장으로 있던 당시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불법 녹음하여 제작한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 등이 존재한다는 소문을 듣고 편집부 소속 직원을 통해 녹취록과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다음 문화방송의 위와 같은 보도가 나간 후인 2005. 8.경 편집국 소속 기자로 하여금 월간조선에 위 녹취록과 녹취보고서의 내용 전문을 게재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항과 관계없는 사적인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위 1의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월간조선의 보도는 통신비밀의 취득과정, 보도에 의하여 공개된 대화의 내용, 보도 목적과 방법 등에 있어서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한 통신비밀 공개행위에 있어 위법성 조각을 위하여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위 피고인의 통신비밀 공개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위 1의 가.항 판단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4. 위 1의 가.항 판단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의견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공개자가 통신비밀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지득하였는지, 그 통신비밀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불문한다. 이에 의하면, 불법 감청 · 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비밀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도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언론기관의 보도행위가 예외 없이 위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 되므로, 여기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통신의 비밀 보호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 및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도모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한 통신비밀 공개행위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 그런데 다수의견은, 불법 감청 · 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 또는 언론기관 종사자의 보도에 의한 통신비밀 공개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를 기본적으로 그 공개가 불법 감청 · 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거나 공개되는 통신비밀의 내용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하면서, 이때에도 언론기관이 적극적 · 주도적으로 통신비밀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개 방법의 상당성도 갖추어야 하고, 그 공개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여야만 정당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이와 같은 요건을 토대로 피고인 이상호의 이 사건 보도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할 수 없다.

(1)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그리고 긴급성과 보충성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위 법리는 결과반가치적 측면과 행위반가치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개별 사안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나, 그 내용의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행위자에게 어떠한 경우에 적법 또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언론기관의 통신비밀 보도행위가 통신의 비밀 보호와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 두 기본권의 충돌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법리를 양 기본권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구체화하고 양 기본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수의견이 불법 감청 · 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의 통신비밀 보도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제시하고 있는 요건은 상충하는 통신의 비밀 보호와 언론의 자유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의 모색이라고 볼 수 없다.

(2) 먼저, 다수의견이 예외적으로 통신비밀의 공개를 허용하는 경우에 관하여 보자.

(가) 다수의견은 언론기관의 통신비밀 공개가 불법 감청 · 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불법 감청 · 녹음 등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공개 · 누설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다수의견도 이를 의식하여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통신비밀의 공개를 허용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그 경우에도 불법 감청 · 녹음 등의 고발이라는 보도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한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보도 목적은 통상 언제,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진 통신 또는 대화를 불법 감청 · 녹음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만으로도 충분하고, 굳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다수의견은 언제, 어떤 장소에서 통신 또는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막연한 고지 행위만을 허용한다는 것이지,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알려주는 의미의 공개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

항 제2호의 '공개 · 누설' 은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모르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다수의견은 어떤 경우에도 통신비밀의 공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어 이에 동의할 수 없다.

(나) 또한 다수의견은 통신비밀의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로 불법 감청 · 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중의 생명 · 신체 · 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사실상 테러범의 테러계획, 타인을 상대로 한 범죄모의 등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직접적이고도 임박한 위험을 내용으로 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다수의견이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보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 문맥상 이는 생명 · 신체 ·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야기에 준하는 정도의 비상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이에 포섭될 수 있는 사안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비상적 상황에서라면, 통신비밀의 공개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언급할 필요 없이 경우에 따라 형법 제22조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그 공개자가 불법 감청 · 녹음 등을 자행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에 있어서의 통신비밀의 공개행위는 통신의 비밀 보호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다수의견이 정당행위의 인정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는 통신의 비밀 보호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한계설정의 기준으로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한편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한 통신비밀 공개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종래 판례가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들고 있는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은 그 적용이 완화되거나 달리 이해되어야 한다. 즉, 문제된 통신비밀의 내용이 공개 당시에 중대한 공적 관심의 대상으로서 시의성을 잃지 않고 있다면 그 긴급성을 부인할 수 없고, 통신비밀의 직접적이고 진실한 공개만이 중간자의 가공 · 편집에서 비롯되는 왜곡과 오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보충성의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을 다른 범죄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히 적용한다면, 통신비밀의 공개행위가 주로 과거에 이루어진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그 대상으로 하는 이상 긴급성과 보충성을 충족할 여지가 거의 없게 되어 사실상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중의 생명 · 신체 · 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란 다른 말로 구체적이고 임박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수의견은 오히려 긴급성과 보충성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부당하다.

그리고 다수의견에 따르면 이 사건 도청자료는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공개는 전면적인 보도이든, 비실명 요약보도이든 어떠한 형태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일관된 기준에 따른 해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청자료의 방송금지가처분재판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서는 녹음테이프 원음의 직접 방송, 녹음테이프에 나타난 대화 내용의 인용 및 실명의 거론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도청자료의 전면적인 방송금지를 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이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상충하는

통신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면서 최대한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바, 이러한 다수의견의 태도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 한편, 다수의견은 이 사건 보도에 의하여 공개된 대화의 내용이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하여 그 공익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공익적 관심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언론기관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임을 부인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이 언론기관의 통신비밀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위와 같이 '공개 · 누설행위가 불법 감청 · 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경우' 또는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극히 제한하는 이유는, 언론기관이 그 입수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를 토대로 심층 · 기획 취재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실을 밝혀내어 보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언론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한 수사기관이 아닌 바에야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불법 감청 · 녹음 등의 주체가 국가기관이고 그 결과물도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내용인 경우라면 당사자나 관련자가 그 취재에 협조할 리도 만무하다. 이러한 점에서 다수의견은 언론기관에 대하여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⑶ 다음으로, 다수의견은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 · 녹음 등의 결과물을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그 취득에 적극적 · 주도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극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라 함은 다수의견이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취득행위가 형사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 · 녹음 등의 결과물을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보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수긍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적극적 · 주도적으로' 취득에 관여한 경우도 그 위법성 조각을 부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적극적 · 주도적으로' 취득에 관여한 경우가 어떠한 의미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다수의견은 '우연히 · 수동적으로' 통신비밀을 취득한 경우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언론기관이 어떠한 경로로 불법 감청 · 녹음 등의 결과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를 보유한 사람에게 먼저 접근하여 그 결과물을 넘겨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경우는, 우연히 그 결과물을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평가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취득과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법한 방법이 개재되지 않았다면, '적극적 · 주도적으로' 취득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도행위의 위법성 조각을 바로 부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욱이 적극적 · 주도적으로 취득에 관여한 행위의 의미를 위와 같이 '우연히 · 수동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당초 우연히 불법 감청 · 녹음 등의 결과물 중 일부를 입수하게 된 언론기관이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그 입수한 자료의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재활동의 일환으로 나머지 자료를 입수하는 것도 적극적 · 주도적으로 그 결과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다수의견에 따르면 그 보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언론기관에 대하여 그 본연의 활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편 다수의견은 언론기관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불법 감청 · 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한 것이라면 그 보도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 주도적으로 취득에 관여한 경우' 라는 소극적 요건도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여 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 · 녹음 등을 자행하려는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하였다면 이는 취득과정의 위법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불법 감청 · 녹음 등을 교사 내지 방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언론기관의 보도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을 거론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불법 감청 · 녹음이 행해진 상태에서, 언론기관이 사후에 감청 · 녹음 등의 결과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결과물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과연 일률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일반적인 취재과정에서도 정보원에게 취재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다, 불법 감청 · 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 결과물을 언론기관에 제공할 경우 감수하여야 할 위험이나 그 결과물의 중대성 등 구체적인 사정의 고려 없이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그 취득과정 나아가 그 보도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사안의 실체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수의견이 적극적 · 주도적으로 통신비밀의 취득에 관여한 경우를 정당행위의 소극적 요건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⑷ 그 외 다수의견이 언론기관의 통신비밀 보도행위에 대한 정당행위의 인정 요건으로 들고 있는 방법의 상당성과 법익균형성은 정당행위의 핵심적 성립요건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들 요건은 나머지 요건들과의 유기적 연관하에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이 나머지 요건들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상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은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요컨대 다수의견은 통신의 비밀 보호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지점에서 통신의 비밀 보호에 편향됨으로써 두 기본권이 모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조화점이나 경계를 찾는 데 소홀히 하였다고 생각한다.

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신의 비밀 보호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에 관해서는 다수의견이 잘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다. 한편 언론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개인적 가치인 자기실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기본원리로 공생 · 공존 관계를 유지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인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언론기관의 통신비밀 보도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이와 같이 우열관계를 가리기 어려운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 보호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추상적인 이익형량에 의하여 양자택일식으로 어느 하나의 기본권만을 쉽게 선택하고 나머지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며, 충돌하는 기본권이 모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조화점을 찾도록 노력하되 개별 사안에서 언론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와 통신의 비밀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고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그 보도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통신비밀의 취득과정, 보도의 목적과 경위, 보도에 의하여 공개되는 통신비밀의 내용, 보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불법 감청 · 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보도를 통하여 공개되는 통신비밀의 내용이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고, 언론기관이 범죄행위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통신비밀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도의 방법에서도 공적 관심사항의 범위에 한정함으로써 그 상당성을 잃지 않는 등 그 내용을 보도하여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어떠한 경우에 통신비밀의 내용이 그 공개가 허용되어야 하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그 내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 통신 또는 대화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 활동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여부, 그 공개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와 같은 기준에서 피고인 이상호의 이 사건 보도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도청자료에 담겨 있던 대화 내용은 주로 홍석현과 이학수 사이에서 논의된 대통령 선거 정국의 기류 변화에 따른 여야 대통령후보 진영에 대한 국내 굴지 대기업의 정치자금지원 문제와 정치인 및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이른바 추석 떡값 등의 지원 문제로서, 이를 통하여 위 대기업이 대통령 선거 정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공권력 행사의 일선에 있는 검찰조직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내용들이다.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 정치행위로서 헌법에서 규정한 선거원칙에 따라 공명 · 정대하게 치러져야 하고, 모든 형사사건의 최종적 · 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조직은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는 수명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직무의 염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검찰조직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태는 민주적 헌정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서 매우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위 대화가 이 사건 보도 시점으로부터 약 8년 전에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시의성이 없어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그 이후로 재계와 정치권 등의 유착관계를 근절할 법적 ·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치환경이나 위 대화 속에서 정치자금 제공자로 거론된 대기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청자료의 공개를 통해 제기된 재계와 언론, 정치권 등의 유착 문제가 단지 과거의 일이라는 이유로 시의성이 없다고 평가 절하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위 피고인이 박OO로부터 이 사건 도청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범죄행위도 자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다. 구체적인 도청자료 취득 과정을 보면, 박OO가 먼저 위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도청자료의 존재를 알리면서 그 중 녹취보고서를 건네주었던 것으로, 위 피고인이 이후 박OO에게 녹음테이프의 제공을 요구한 것은 위 녹취보고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위 피고인이 녹음테이프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박OO에게 취재 사례비조로 돈을 지급하고 장차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도청자료에 담겨진 내용의 중대성이나 이 사건 도청자료를 넘겨주는 데 따르는 위험 등을 고려하면, 이는 취재의 관행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사례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도청자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취했던 일련의 조치들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요소가 개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보도 방법의 상당성에 관하여 보면, 위 피고인과 문화방송은 이 사건 도청자료 중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만을 보도하였고 그 외 공공성의 정도가 약한 내용이나 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이 사건 도청자료를 확보한 뒤 성문분석과 그 출처에 대한 보강취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도청자료의 진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나름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법률자문을 통하여 그 공개에 대한 관계 법령의 검토를 하는 등 보도에도 신중을 기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보도 과정에서 대화 당사자들이나 그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명이 공개되기는 하였으나, 그 공개된 대화 내용이 갖고 있는 중대한 공공성 및 이들의 사회적 지위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보도행위가 그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보도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감청 · 녹음과 재계와 언론, 정치권 등의 유착관계 실태를 고발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으며, 대화 당사자들은 경제적 ·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기업의 간부 내지 유력 일간지의 사장으로서 공적인 인물들이라 할 것이므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 사건 도청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입게 되는 어느 정도의 인격권의 침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이 사건 보도 이전에 이미 다른 언론매체를 통하여 대화의 주요 내용이 공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처분신청과정에서 대화 당사자들의 실명까지 공개된 이상 대화 당사자들의 그 비밀 보호에 대한 기대이익도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 이 사건 불법 녹음의 주체 및 불법 녹음의 경위,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도청자료를 취득하게 된 과정, 이 사건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보도의 목적 ·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익과 통신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 · 형량할 때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보도행위가 정당행위로서 허용된다고 한다면 장차 국가기관 등이 사인 간의 통신이나 대화를 불법 감청 · 녹음한 후 자신의 존재는 숨긴 채 언론기관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 불법 감청 · 녹음 등의 행위는 그것이 어떠한 명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허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고, 그 결과물의 공개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불법 감청 · 녹음 등의 유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불법 감청 · 녹음된 결과물이 이미 밖으로 유출되어 버린 상태에서 통신의 비밀 보호가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한 공개행위의 위법 여부를 불법 감청 · 녹음 등을 행한 자에 의한 공개행위의 위법성과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다수의견의 위와 같은 우려는 앞서 우리가 제시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상당 부분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오히려 이 사건 보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언론기관에 대하여 그 부여된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덧붙여 우리는 이 사건 도청자료가 국가기관이 자행한 불법 녹음의 산물임에 주목한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불법 감청 · 녹음 등을 저지른 뒤 그 결과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탓에 함부로 유출되어 언론기관이 이를 위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사인이 불법 감청 · 녹음한 통신비밀을 공개한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한다. 즉, 불법 감청 · 녹음 등을 자행한 국가가 그것이 불법 감청 · 녹음 등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언론기관의 공개행위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그 결과물의 공개로 침해되는 통신비밀의 주체는 국가기관이 아닌 불법 감청 · 녹음된 통신 또는 대화의 당사자이므로 이들의 통신의 비밀 보호에 대한 이익이 비교 · 형량의 대상이 되나, 구체적인 이익형량 과정에서 불법 감청 · 녹음 등의 주체도 그 고려 요소가 됨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보도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정당행위의 의미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수의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반대하는 취지를 밝힌다.

[판례 2]

심층 취재 · 분석하는 시사보도프로그램은 보통의 뉴스프로그램과 달리 신속성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므로 언론사의 주의의무 더욱 필요

"방송보도 내용이 이 사건과 같이 해외에서 발생한 사안인 경우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보도된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방송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중략) 이 사건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취재한 후 그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 내용을 방송하는 시사보도프로그램으로서 보통의 뉴스프로그램과는 달리 신속성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1. 5. 19. 선고

사　　건 : 2010가합6063 손해배상(기)
원　　고 : 황OO
피　　고 : 한국방송공사 외 3인
변론종결 : 2011. 4. 14.
판결선고 : 2011. 5. 19.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추적 60분' 정규방송 프로그램의 말미에, 정정 보도문을 보도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이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이민 알선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공사' 라고 한다)는 KBS 2TV에서 '추적 60분' 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는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공사의 소속 직원이다.

나. 원고 운영 업체의 취업이민 프로그램 운영

1) 국가직종분류코드(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code, 이하 'NOC 코드' 라 한다)는 직종마다 4자리의 코드를 부여하는데 그 중 두 번째 숫자가 스킬 레벨(skill level)을 의미한다. NOC 코드에서는 직무의 난이도를 스킬 타입(skill type) 0, 스킬 레벨 A, B, C, D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2) 캐나다에서는 NOC 코드상에서 스킬 타입 0나 스킬 레벨 A, B에 해당하는 직종은 이민신청 자격을 주고 스킬 레벨 C, D에 해당하는 직종은 이민 신청자격을 주지 않는다.

3) 원고는 이민희망자를 대상으로 근로현장에서 현장실습을 시켜 숙련직 노동자로 노동시장 영향 평가서(Labour Market Opinion Confirmation, 이하 'LMO' 라고 한다)를 받아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WPT 프로그램을 고안하였고, 원고 운영 업체와 소외 주식회사 OO이주공사(이하 'OO이주공사' 라 한다)는 OO이주공사에서 고객들을 모집하고, 원고 운영 업체는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고객들에게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OO이주공사에서는 취업비자를 취득한 사람들의 영주권신청과 이후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4) 원고는 2006년경, 이민희망자들은 원고가 알선하는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목수로서 스킬 레벨 B로 취업비자를 받는다는 내용의 WPT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제1 과정' 이라 한다)을 통하여 캐나다 취업이민 희망자를 모집하였는데, 원고는 건설노동자 프로그램의 참여자 13명(이하 '이 사건 제1 참여자들' 이라 한다)에게 목수로서 스킬 레벨 B인 LMO를 받아 주겠다고 약속하고, D. E. Lumber라는 트러스(Truss) 제작 회사에 취직을 알선해 주었으며 수수료로 1인당 8,800,000원씩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위 참여자들이 받은 LMO는 스킬 레벨 C였고, 위 참여자들은 캐나다 이민성(CIC)으로부터 여권을 압류당하고, 추방명령을 받았다.

5) 또한 원고는 2007년 초경 캐나다의 직업기술대학교인 세이트(SAIT)에서 9주간 교육을 받은 다음 교육 수료자들에게 스킬 레벨 B인 라인 쿡(Line Cook)으로 취업비자를 받게 해준다는 내용의 WPT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제2 과정' 이라 한다)을 통하여 캐나다 취업이민 희망자를 모집하였다. 요리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은 16명(이하 '이 사건 제2 참여자들' 이라 한다) 및 안OO(가명 양민영) 등 17명으로서 그 중 안OO은 위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이 사건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토론토에 트럭운전사로 취업하러 간 피해자들의 사례이고, 두 번째 부분은 캘거리에서 원고 운영 업체를 통하여 건설노동자와 요리사로 취업하러 온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며, 세 번째 부분은 관계 당국인 토론토 총영사관을 취재한 내용이다.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이하 '이 사건 원고 부분 방송' 이라 한다)으로서 분량은 약 15분 정도이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입부분 : 보통 독립 이민의 자격이 되지 않은 경우 그 점수를 보충하기 위해 취업비자를 선택하는데,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보통 10점이 추가되고, 여기에 기술 수준이 높은 직종일 경우 가산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노린 또 다른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 건설노동자 부분 : 원고가 13명의 이민희망자들에게 WPT 프로그램을 통하여 스킬레벨 B로 취업비자를 받아주기로 하였는데, 이민 희망자들이 받은 LMO는 스킬 레벨 C였고, 이민희망자 전원이 원고가 시켜서 한 무보수 현장실습으로 인하여 여권을 압류당하고 추방명령을 받았다.

3) 요리사 부분 : 원고는 불법으로 규정된 현장실습을 직업학교 교육으로 대체하여 OO이주공사와 함께 다시 WPT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직업기술대학교인 세이트(SAIT)에서 9주 교육을 받아 스킬 레벨 B인 라인 쿡(Line Cook)으로 취업비자를 받고, 1년 내에 영주권 신청까지 한다는 내용의 이민프로그램이다.

2. 이 사건 소 중 정정보도청구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된 2007. 3. 29.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정정보도청구부분은 위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정정보도청구의 근거는 민법 제764조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책임의 발생

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07. 3. 28.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원고 및 원고 운영 업체가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수십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여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캐나다로 입국하게 하여 단기간의 교육을 이수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나 취재 결과 이는 사기임이 분명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의 특정 여부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원고의 인터뷰 장면이 원고의 얼굴과 음성이 그대로 드러난 채 방송되었으므로, 이 사건 원고 부분 방송에서 피해자는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여부

먼저, 방송제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목은 '취업이민사기 실태보고, 캐나다에서 떠도는 아버지들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제목 자체로 이민 알선 업체 대표인 원고가 이민 신청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또한 방송내용 및 구성에 관하여 보면, 마치 원고가 무허가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민 신청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다음 취재진에 의하여 책임을 추궁 당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변명을 하는 것처럼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방송 제목, 원고측 반론의 배치 방법 등 이 사건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전체적인 문맥과 취

지와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원고 부분 방송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제1 과정과 이 사건 제2 과정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원고가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는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거나 이를 표현한 것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한 피고 김OO, 구OO과 원고로부터 방송보류 요청을 받았으나 정확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프로그램을 편성한 피고 조OO 및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피고 공사는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 · 편성 및 방송을 함으로써 원고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공사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사유 항변에 관하여

1) 피고들의 항변 요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취업이민 피해 사례를 집중 조명하고 이주 대행업체의 무책임한 영업태도를 고발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제작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가사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2)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3) 이 사건 프로그램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취업이민 피해 사례를 취재하여 감독기관의 법제도 마련을 촉구함으로써 취업이민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회문제를 다룬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방송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원고 부분 방송의 내용이 진실에 합치하는지 여부

가) 건설노동자 부분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증거, 증인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건설노동자 과정에 참여한 이민 신청자들에게 스킬 레벨 B로 LMO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스킬 레벨 C인 LMO가 나왔고, 원고가 알선한 업체가 트러스를 제작하는 회사이며, 캐나다 이민국이 이 사

건 제1 참여자들에 대하여 D. E. Lumber에서의 현장 실습을 이유로 추방명령을 내렸다는 정황만으로는, 이 사건 제1 과정에 하자가 있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D. E. Lumber에서 이 사건 제1 참여자들이 수행하게 될 업무가 스킬 레벨 C임에도, 이 사건 제1 참여자들에게 스킬 레벨 B로 LMO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위 참여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원고 부분 방송 중 건설노동자 부분의 내용은 진실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요리사 부분

비록 피고 김OO가 취재한 변호사가 이 사건 제2 과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고, 세이트(SAIT) 관계자가 이 사건 제2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수료증이 나온다고 하였으며, OO이주공사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영주권 취득까지 1년' 이라는 광고를 하였지만 이 사건 제2 참여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한 기간이 1년이 넘어간다는 등의 정황만으로는, 이 사건 제2 과정을 통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업비자를 얻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2 과정으로는 스킬 레벨 B인 라인 쿡(Line Cook) LMO를 취득할 수 없고, 영주권도 1년 이내에 취득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제2 참여자들에게 1년 이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원고 부분 방송 중 요리사 부분의 내용은 진실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상당성의 판단 기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더구나, 방송보도 내용이 이 사건과 같이 해외에서 발생한 사안인 경우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보도된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방송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방송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보도대상 및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진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적 60분' 이라는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취재한 후 그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 내용을 방송하는 시사보도프로그램으로서 보통의 뉴스프로그램과는 달리 신속성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할 것이다.

나)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OO는 이 사건 제1 참여자들의 주장 및 그들이 소지한 추방명령서, 안OO의 주장, 캐나다 현지 변호사의 의견, 세이트(SAIT) 관계자와의 취재내용,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이민관에 대한 취재 내용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원고 부분 방송의 내

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OO가 이 사건 원고 부분 방송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가 피고 김OO의 취재에 응하면서 건설노동자 과정 참여자들에게 스킬 레벨 C인 LMO가 발급된 것에 대하여 자신은 고용주 및 이 사건 제1 참여자들로부터 해임 당하여 더 이상 LMO 발급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고, 고용주가 스킬 레벨 C로 신청하여 LMO가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피고 김OO는 원고가 해임되었는지 여부와 원고가 직접 LMO를 스킬 레벨 C로 신청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제1 참여자들에게만 이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용주인 D. E. Lumber 측과 LMO를 발급한 서비스 캐나다 측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② 원고가 D. E. Lumber에서 이 사건 제1 참여자들이 하는 업무가 스킬 레벨 B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OO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참여자들의 주장만을 참고하고 그 밖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원고의 주장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

③ 안OO은 비록 이 사건 제2 과정에 참가신청을 하였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는 전혀 참여한 바가 없었던 사람이었던 점에서 안OO의 주장내용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렇다면 피고 김OO는 이 사건 프로그램 방송 이전에 이 사건 제2 참여자들을 취재하여 이 사건 제2 과정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원고 부분 방송 내용에 의하더라도 OO이주공사가 피고 김OO에게 이 사건 제2 과정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검증을 하지 못하였는데 하자가 있으면 이를 캐나다에 가서 확인하겠으니 어떠한 문제점이 알려 달라고 물었으나 피고 김OO는 이에 대하여 정확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적하지 못하였다.

⑤ 원고는 2007. 3. 7. 및 같은 해 3. 8. 피고 김OO와 캐나다에서 인터뷰할 당시에 이 사건 요리사 교육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LMO가 곧 나올 것이므로 위 과정이 종료되는 2달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이전에 제작진에게 위 참여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LMO가 나왔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으므로, 피고 김OO는 이 사건 프로그램 방송 이전에 위 팩스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추가적인 취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4.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가. 손해배상

1) 재산상 손해

원고는 OO이주공사와 진행하던 프로그램에 따른 기대이익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의 프로젝트 파기로 인하여 상실한 수익에 해당하는 손해액 등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13,7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신적 손해(위자료)

원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배상액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어구, 방영 시점, 방영 시간, 피고들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의 원고의 특정 정도, 피고 공사가 우리나라 언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1) 정정보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위 금전배상만으로는 원고가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고 공사에게 정정방송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정정 보도문의 내용 및 방송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원고 부분 방송이 방송된 시간 및 비중, 정정 보도문의 글자 수, 정정보도의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공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처음 방송되는 '추적 60분' 프로그램 말미에서, 화면 상단에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정정 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뉴스 보도와 같은 글자 크기로 정정 보도문 기재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 보도문 기재 내용을 원래의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는 방식으로 방송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2) 간접강제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 공사가 위 1)항의 작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의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만약 피고 공사가 위 1)항의 작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공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1)항의 '추적 60분' 방송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외국언론관계판결

편집자주 –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 · 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일본판례]

감시카메라(CCTV)로 점포내의 고객을 촬영한 행위와 촬영된 영상을 보도기관에 제공, 공표하게 한 행위가 불법행위법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점포에 들어오는 고객의 개별적 승낙을 받지 않고 상품을 선정하거나 구입하는 모습을 무차별적으로 촬영하게 되며, 따라서 고객의 상기 인격적 이익 및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우려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 점포내에서 손님을 촬영하고 그 화상이 보도기관에 제공되어 공표되는 행위가 불법행위법상 위법인지의 여부는, 촬영의 목적, 필요성, 방법 및 촬영된 화상의 관리방법, 제공목적, 제공의 필요성, 제공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촬영된 화상을 공표당하지 않을 이익과 공표해야 할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상기 인격적 이익 및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사회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 고 : 故 고오노타로(甲野太郎)의 소송승계인
고오노하나코(甲野花子)

피 고 : 유한회사Y1,
동 대표이사 오토야마이치로(乙山一郎)
주식회사Y2,
동 대표이사 헤이카와지로(丙川二郎)

대상사건 : 도쿄지법 2008(ワ) 제13227호

사 건 명 :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연월일등 : 2010. 9. 27 민사제6부 판결

재판내용 : 일부인용 · 항소

변론종결 : 2010. 7. 26

참조조문 : 민법 709조 · 710조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Y2는 원고에 대해 110만엔 및 이에 대한 2008년 5월 25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불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Y2에 대한 다른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유한회사Y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에게 발생한 비용의 3분의1과 피고 유한회사Y1에게 발생한 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에게 발생한 다른 나머지 비용과 피고 주식회사Y2에게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10등분하여 그 90%를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이 판결은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가 있다.

사실 및 이유

1. 청구

1. 피고 유한회사Y1은, 원고에 대해 550만엔 및 이

에 대한 2007년 7월 4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불하라.

2. 피고 주식회사Y2는, 원고에 대해 1,100만엔 및 이에 대한 2007년 7월 4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불하라.

2. 사안의 개요

본건은 저명인사인 故 고오노타로(2008년 10월 10일 사망 · 이하「故 고오노」로 한다)의 상속인인 원고가 ①피고 유한회사 Y1이 경영하는 편의점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故 고오노가 절도하는 영상이 촬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도기관에 당해 영상과 관련한 동화(動畵)파일을 제공하여 故 고오노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고, ②상기 감시카메라에 접속하는 레코더(recorder) 본체 등을 상기 편의점에 납입, 설치한 피고주식회사Y2가 상기 동화파일을 기본으로 상기 편의점내에서의 故 고오노의 거동을 방영한 주식회사「후지텔레비전」(이하「후지TV」로 한다)의 프로그램 일부를 발췌, 편집한 동화를 자사 홈페이지에 업로드(upload)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故 고오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기 프로의 영상 및 내레이션 중 故 고오노가 촬영된 부분을 편집한 다음 여기에 자사의 감시카메라의 성능 등에 관한 내레이션을 추가한 DVD를 작성, 전시회에서 이를 방영했는가 하면 상기 DVD를 배포하는 등 故 고오노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 Y1사에 대해 위자료 500만엔과 변호사비용 50만엔을 합쳐 합계 550만엔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 후인 2007년 7월 4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민법에 정한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청구하는 한편 피고 Y2사에 대해서도 위자료 1000만엔과 변호사비용 100만엔을 합쳐 합계 1,100만엔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 후인 2007년 7월 4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민법에 정한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청구하는 사안이다.

1. 전제가 되는 사실 (증거를 게시한 사실 이외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1) 당사자

가. 故 고오노는 이른바「B사건」으로 저명인이 된 인물이다. 원고는 故 고오노의 부인이다.

나. 피고 Y1사는 편의점의 경영 등을 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 Y1사는 2007년 3월 당시 편의점인「A 平塚高村店(A 히라츠카다카무라텐)」(이하「본건 점포」로 한다)을 경영하고 있었다. 오토야마이치로(乙山一郎) (이하「오토야마」로 한다)는 당시 피고 Y1사의 대표이사였다.

다. 피고 Y2사는 방범감시 시스템기기의 개발,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감시카메라의 존재

본건 점포에는 2007년3월 당시 합계 16대의 감시카메라 (이하「본건감시카메라」로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본건감시카메라에 접속하는 레코더 본체 및 액정 모니터는 피고 Y2사가 2006년 12월 15일 본건 점포에 납입하여 설치한 것이다.

본건감시카메라에 의한 촬영상황은, 본건 점포내에 있는 사무실에 설치된 하드디스크에 수시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실시간으로 하나의 모니터에 선택한 하나의 감시카메라의 영상을 비추게 한다든가, 필요에 따라 2~16분 비율로 복수의 감시카메라의 영상을 하나의 모니터로 비출 수 있게 했으며, 또한 보존된 영상을 차후에 같은 방법으로 재생하는 것도 가능했다.

(3) 사실경과

가. 故 고오노는 2007년 3월 17일 오후 4시 30분경 본건 점포를 방문, 캔커피를 구입하고, 서적 복사 등을 한 후 돌아갔다.

나. 오토야마는, 2007년 3월 19일 본건 점포의 점원으로부터 진열상품을 점검한 결과 DHC의 부록물 6점(판매가격 합계 3,632엔, 이하 「본건상품」이라 한다)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 동월 20일 본건감시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재생했다. 그 결과 오토야마는 故 고오노가 본건상품을 절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동월 30일 가나가와현 히라츠카(平塚)경찰서에 피해계를 제출했다.

그 후 故 고오노는 동월 17일 본건 점포내에서 본건상품을 절취했다는 피의사실에 의해 동년 4월 5일 체포되어, 동월 13일 요코하마 지방법원 오타와라지부(小田原支部)에 기소되었다(이하 기소에 관련한 형사사건을 「본건형사사건」으로 한다).

다. 오토야마는, 2007년 3월 중순 경 「후지TV」와 계약을 체결한 제작회사의 기자인 하루노아키오(春野明夫)에게 본건감시카메라에 수록된 故 고오노의 동월 17일의 본건 점포내에서의 일련의 거동을 촬영한 영상과 관련한 동화파일(이하 「본건동화파일」로 한다)을 제공했다.

라.「후지TV」는 2007년 4월 6일 본건동화파일을 기본으로 하여 故 고오노의 동월 17일의 본건 점포내에서의 일련의 거동을 촬영한 영상을, 「とくダネ!(특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故 고오노의 절도사건」이란 제목으로 방영했으며, 「슈퍼뉴스」라는 프로그램에서는 「검증, 어른의 절도」라는 특집(이하 「본건특집프로」로 한다)을 방영하기도 했다. 그 때 「후지TV」는 본건동화파일을 편집, 가공하여 故 고오노를 특정할 수 있는 형태로 故 고오노의 본건 점포내에서의 거동을 방영했다. 또한 다른 각 민간방송사도 연일 「후지TV」로부터 제공받은 본건동화파일을 기본으로 하여 故 고오노를 특정할 수 있는 형태로 故 고오노의 본건 점포내에서의 거동을 반복하여 방영했다.

마. 피고 Y2사는 본건특집프로를 녹화하여 이를 편집, 다음과 같이 사용했다.

(가) 홈페이지에 업로드

피고 Y2사는 2007년 4월 12일부터 동년 7월 26일까지 본건특집프로의 일부를 발췌, 편집한 동화(이하 「본건홈페이지동화」로 한다)를, 「2007. 4 후지TV (슈퍼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라는 등으로 링크(link)를 하고 자사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하도록 했다.

본건홈페이지동화는, 전체 길이가 1분 48초이며, 그 태반은 본건특집프로에서 피고 Y2사의 방범기기의 소개 및 실험부분을 발췌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첫머리의 「고오노 용의자의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방범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이쪽 회사입니다」라는 리포터의 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을 뿐만 아니라 화면 오른쪽 상단의 「왜 증가… 어른의 절도 고오노 용의자 "범행의 순간"」이라는 텔롭(telop – TV에 투사 · 삽입되는 글자나 사진)도 그대로 표시되었다.

(나) DVD의 방영 및 배포

피고 Y2사는, 본건특집프로의 영상 및 내레이션 중 故 고오노가 촬영된 부분을 편집하여 여기에 자사 감시카메라의 성능, 실적 등에 관한 내레이션을 첨부한 DVD (이하 「본건DVD」로 한다)를 작성했다. 본건DVD의 전체 길이는 8분 10초에 이르며, 故 고오노가 본건 점포내에서 상품을 손에 들고 안쪽으로 들어가 윗도리에 손을 집어넣는 동작이라든가 그 후에 계산대로 향하는 동작 등 故 고오노의 본건 점포 내에서의 일련의 거동들이 기록되어있다.

본건DVD에서는 故 고오노의 얼굴과 텔롭의 이름 부분 일부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이름을 읽는 내레이션의 일부에 「ピ－音(삐－음)」이 들리기도 했으나, 본건특집프로의 첫머리에는 「B재판에서 주

목을 끌었던 (삐-) 고오노 용의자가 편의점에서 절도한 혐의로 어제 체포되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오노 용의자 "범행의 순간"」이라는 텔롭도 삭제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

피고 Y2사는 2007년 7월 4일부터 3일간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된 「OSEC 제2회 Office Security EXPO」전시회(이하 「본건전시회」로 한다)에서 피고 Y2사의 부스(booth)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40인치 화면으로 본건DVD를 방영, 열람시키는 한편 본건DVD를 배포했다. 또한 피고 Y2사의 세일즈맨은 영업 관계자들에게 본건DVD를 배포하기도 했다.

(4) 상속 등

가. 故 고오노는 2008년 10월 10일 사망했다.

나. 요코하마 가정법원 오타와라지부는 故 고오노가 사망한 후 본건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내렸다.

2. 쟁점 및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Y1사가 본건 점포내에서 故 고오노를 본건 감시카메라로 촬영하고 본건동화파일을 보도기관에 제공한 행위가 故 고오노의 초상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법상 위법인지의 여부

〈원고의 주장〉

가.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에 관하여

(가) 사람은 함부로 자기의 용모 등을 촬영 또는 공표 당하지 않도록 법률상 보호되는 인격적 이익(초상권)을 갖고 있다. 또 초상은 개인에 관한 정보의 중요한 일부로서 용모 등을 함부로 촬영당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촬영내용이 녹화된 기록의 보관, 이용, 폐기, 삭제 및 제공 등 정보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법적 보호를 받는다. 특히 화상이나 영상의 디지털처리기술과 정보전달기술이 발달된 현대에서는 한번 촬영된 초상은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져나갈 위험성이 있으므로, 촬영된 녹화정보 등의 이용행위 및 제공행위의 적법성 판단이 엄격해야 하며, 촬영행위 자체의 적법성 판단에서도 촬영 후의 녹화정보 등의 취급상황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겠다.

(나) 또한 어느 누구도 통상 공개를 바라지 않는 정보를 수집당하거나 공표, 공개되지 않도록 법률상 보호받을 인격적 이익(프라이버시권)을 갖는다. 프라이버시권도 정보를 취득당하는 장면뿐만 아니라 보관, 이용, 폐기, 삭제, 제공 등 정보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법적보호를 받는다.

나. 촬영행위에 의한 초상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하여

사인(私人)에 의한 촬영행위는, 종래로부터 하등의 법령상 근거도 없고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피촬영자로서는 그 용도에 대한 불안, 고통 등이 크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반시민들에게도 고성능의 촬영기기가 보급되고 기록의 보존기술 및 전달기술이 발달하여 정보 누설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사인에 의한 초상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공권력에 의한 것보다 뒤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시카메라 등에 의한 무차별 촬영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①촬영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②촬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③촬영의 방법이 상당해야 하고 ④녹화한 기록의 이용, 보관, 말소, 폐기 등의 관리가 적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피고 Y1사의 대표이사였던 오토야마는, 절도 등의 범죄예방 및 고객과 종업원의 안전 확보 목적으로 본건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하면서도 방범비디오의 취급에 대해서는 종업원들에게 추상적인 주의를 환기

시켰을 뿐 상기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으며, 방범비디오의 조작에 관한 규칙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촬영방법과 방범비디오 관리에 필요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 Y1사가 본건감시카메라로 故 고오노를 촬영한 행위는 동인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 제공행위에 의한 초상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하여

상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촬영 및 녹화행위 자체가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녹화기록의 이용행위가 촬영 및 녹화의 목적을 일탈(逸脫)하였을 경우에는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를 본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 Y1사는 본건동화파일을 「후지TV」와 계약을 체결한 제작회사의 기자에게 제공했는데, 이러한 제공행위는 본건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본건 점포내의 모습을 촬영 및 녹화하는 목적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목적외의 행위이며, 「후지TV」는 故 고오노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피고Y1사의 주장〉

가.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에 관하여

초상권은 사람의 용모 등을 촬영하는 행위를 그 침해유형의 전형(典型)으로 상정(想定)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권은 정보의 공개장면을 그 침해유형의 전형으로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감시카메라로 故 고오노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초상권의 침해여부를 밝히는 관점에서 검토하면 될 것이고, 본건동화파일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故 고오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여부를 밝히는 관점에서 검토하면 될 것이다.

나. 초상권 침해에 관하여

사람은 함부로 자기의 용모 등을 촬영당하지 않도록 법률상 보호되는 인격적 이익 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용모 등을 승낙 없이 촬영하는 것이 불법행위법상 위법이 되는지의 여부는 ①피촬영자의 사회적 지위 ②촬영된 피촬영자의 활동내용 및 촬영장소 ③촬영의 목적 ④촬영의 양태(樣態) 및 촬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촬영자의 상기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사회생활상 수인(受忍)한도를 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만 한다.

이를 본건에 비추어 보면, ①故 고오노는 이른바 「B사건」으로 저명한 인물이 되었으며, 해설자로 TV 출연을 하기도 하고, 영화프로듀서로 활동하는 등 유명인이라는 점은 위법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할 고려요소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②본건은 본건 점포내에서의 故 고오노의 범죄행위(절도)를 촬영한 것으로, 공공장소에서의 행사에 참가한 사람을 촬영한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한층 더 위법성이 부정되어야만 한다. 더욱이 ③본건에서의 촬영 목적은 편의점의 영업상 필요 불가결한 범죄의 방지나 예방에 있으며 ④상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본건 점포내의 구석구석까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 Y1사는 본건 점포의 입구에 「방범카메라 설치 중」이라는 벽보를 붙이기도 하고, 본건감시카메라의 대부분을 고객의 시야에 들어오는 장소에 설치하는 등 본건감시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음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이상에 의하면 피고 Y1사가 본건 점포내에서 故 고오노를 본건감시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故 고오노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법상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하여

(가) 원고는 피고 Y1사가 故 고오노의 어떠한 정보

를 공개한 것으로 해서 故 고오노의 사생활상의 평온(平穩)에 피해가 있었다는데 대해 아무런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故 고오노의 외모, 신체적 특징, 본건 점포내에서의 故 고오노의 행동 등이라고 좋게 해석했다고 하더라도, 故 고오노는 매스미디어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었던 유명인이고, 그의 외모나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또한 본건 점포를 방문하여 캔커피를 구입하고 서적을 복사한 후 점포를 나갔다는 故 고오노의 본건 점포내에서의 행동이 일반인의 감성(感性)을 기준으로 할 때, 타인에게 알려짐으로서 사생활상의 평온을 해할 만한 정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더구나, 가령 故 고오노가 본건 점포내에서 절도를 했다는 것이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는 피고 Y1사의 보도기관에 대한 본건동화파일의 제공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故 고오노가 2008년 4월 5일 절도죄로 체포됨으로써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 의하면 피고 Y1사의 보도기관에 대한 본건동화파일의 제공행위는, 애초부터 제공의 대상이었던 본건동화파일에 故 고오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나) 설령, 피고 Y1사가 보도기관에 제공한 본건동화파일 속에 故 고오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하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인의 감성을 기준으로 상기 제공행위는 사회생활상 수인한도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a. 본건동화파일에 포함된 정보의 비닉성(秘匿性)은 극히 희박하며, 당해 정보는 故 고오노가 체포된 사실에 의해 공표된 절도죄의 피의사실에 부수(附隨)된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상기와 같이 원고는 본건동화파일 속의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여 故 고오노의 사생활상의 평온에 피해를 주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를 하지 않고 있다.

b. 故 고오노는 본건 점포내에서의 행동이 본건감시카메라에 촬영되는 것을 인용(認容)하고, 본건 점포내에 들어와 행동을 한 결과 절도죄로 체포된 것이다.

c. 피고 Y1사는 기자 하루노아키오(春野明夫)에게 신중하게 취급해 주도록 부탁하면서 본건동화파일을 제공한데 지나지 않으며, 그 이후의 보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상기의 제공 목적은 절도의 중요성을 사회일반에게 주지시킨다는데 있었다. 그리고 오토야마가 「후지TV」에 대해 본건동화파일 사용을 허가한 것은, 2007년 4월 5일 故 고오노가 절도죄로 체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피고 Y1사가, 「후지TV」 이외의 보도기관에 대해 본건동화파일을 재생한 화상을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은 본건 점포의 주위에 몰려든 보도기관들을 퇴거시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또한 피고 Y1사는 「후지TV」를 위시한 보도기관들로부터 본건동화파일 제공에 따른 사례를 일절 받지 않았다.

d. 故 고오노측이 상기 제공행위를 문제시하기 시작한 것은 피고 Y2사가 본건전시회에서 故 고오노의 절도 영상을 방영한 이후였으며, 절도사건이 보도된 후 약 5개월이 지나서였다.

(2) 본건홈페이지동화를 인터넷상에 업로드한 피고 Y2사의 행위가, 故 고오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또한 본건DVD를 방영 및 배포한 피고 Y2사의 행위가 故 고오노의 초상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법상 위법인지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가. 명예훼손에 관하여

(가) 사실의 적시

본건홈페이지동화에는, 화면의 오른쪽 위에「왜 증가… 어른의 절도 고오노 용의자 "범행의 순간"」이라는 텔롭이 표시되어,「고오노 용의자 체포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방범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이쪽 회사입니다」라는 리포터의 발언도 흘러나오고 있다.「고오노」라는 이름 등으로 故 고오노가 특정되었으며,「범행의 순간」이라는 기재는「어른의 절도」라는 기재와 어울려서 故 고오노가 절도를 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따라서 피고 Y2사는 본건홈페이지동화를 통해 故 고오노가 절도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나) 사회적평가의 저하

절도는, 절도죄(형법235조)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故 고오노가 절도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은 고오노의 품성, 덕행, 명성 및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것은 명백하다.

나. 초상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하여

(가) 전기와 같이 사람은 함부로 자기의 용모 등을 촬영당한다든가 공표되는데 대해 법률상 보호를 받을 인격적 이익(초상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DVD에는 故 고오노가 본건 점포내에서 진열대 주위를 돌며 상품을 선별하면서 손으로 잡는 행위, 계산대 앞에 줄을 서는 모습, 클로즈업한 용모가 각각 촬영된 영상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 Y2사는 2007년 7월 4일부터 3일간 도쿄빅사이트에서 개최된 본건전시회에서 피고 Y2사의 부스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내장객들에게 40인치의 화면으로 본건DVD를 계속해서 방영, 열람시켜 故 고오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 또한 피고 Y2사는 상기 내장객들에게 본건DVD를 배포하는 한편 자사 제품의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 영업사원들을 동원, 영업관계자들에게 본건DVD를 배포함으로써 故 고오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

(나) 또한 전기와 같이 모든 사람은 통상 공개를 바라지 않는 정보가 수집되어 공표, 공개되지 않도록 법률상 보호를 받을 인격적 이익(초상권)을 갖고 있다.

본건DVD에는 故 고오노가 자택 근처의 본건 점포에서 상품을 고르기 위해 진열대 사이를 돌아다니고, 때로는 특정상품을 응시하면서 손으로 잡는 장면 등을 약 2분간에 걸쳐 故 고오노를 뒤쫓듯이 촬영한 영상이 수록되어 있으며,「오른손에는 캔커피, 왼손에는 부록물」이라는 등의 해설까지 붙여져 있다. 뿐만 아니라 본건DVD 첫머리에서는「후지TV」의 아나운서가 본건특집프로에서「B재판에서 주목을 끌었던 (삐-) 고오노 용의자가 편의점에서 절도한 혐의로 어제 체포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영상을 사용하면서, 본건 점포내를 걷고 있는 故 고오노에 대해「이해할 수 없는 행동」,「절도 피해의 결정적 순간」등의 해설까지 붙여, 마치 故 고오노가 본건 점포내에서 상품을 고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Y2사는 상기와 같이 2007년 7월 4일부터 3일간 개최된 본건전시회에서 피고 Y2사의 부스를 찾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40인치의 화면으로 본건DVD를 계속적으로 방영, 열람시켜 故 고오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 또한 피고 Y2사는 상기 내장객들 뿐만 아니라 영업관계자에게도 본건DVD를 배포하여 故 고오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

〈피고 Y2사의 주장〉

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Y2사의 불법행위는①피

고 Y1사가 본건 점포내에서 故 고오노를 본건감시카메라로 촬영한 후 본건동화파일을 「후지TV」에 제공한 사실 ②「후지TV」가 본건특집프로를 방영한 사실이 전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각 행위가 적법인 이상 피고 Y2사의 행위도 적법이라고 해야 할 것이므로 ①피고Y1사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 피고의 상기 촬영행위 및 제공행위는 모두 불법행위법상 위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으며 ②「후지TV」의 본건특집프로의 방영행위가 적법이라는 것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나. 명예훼손에 관하여

(가) 본건홈페이지동화에 사실의 적시가 있다면, 그것은 「왜 증가… 어른의 절도 고오노 용의자 "범행의 순간"」이라는 텔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작성하여 본건특집프로를 방영한 것은 「후지TV」이며, 피고 Y2사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 Y2사가 본건홈페이지동화에서 상기 텔롭을 내보낸 것은 사실의 적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피고 Y2사에 의한 본건홈페이지동화의 업로드가 故 고오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후지TV」에 의한 본건특집프로의 방영에 의해 이미 故 고오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으므로, 본건홈페이지동화의 업로드에 의해 새로이 故 고오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동인에게는 손해의 발생이 없거나 또는 동인의 손해와 피고 Y2사의 상기 행위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다. 초상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하여

(가) 피고 Y2사는 본건DVD에서 故 고오노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삭제하고, 출연자나 내레이터가 故 고오노의 이름을 말하는 부분에서는 소음(消音)을 하는 한편 문자는 마스킹(masking)으로 숨겼다. 분명히 「고오노 용의자 "범행의 순간"」이라는 텔롭은 지워지지 않았으나, 당해 텔롭이 비춰진 것은 불과 한 순간이었다. 따라서 절도범으로 방영된 남성을 故 고오노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 Y2사에 의한 본건DVD의 방영 및 배포로 故 고오노의 초상권이 침해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한 손해는 「후지TV」가 본건특집프로를 방영한 시점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Y2사의 본건DVD 방영 및 배포에 의해 새로이 초상권 침해에 의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故 고오노의 손해와 피고 Y2사의 상기 행위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다) 본건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의 내용이 「누가 언제 어떠한 점포에서 무엇을 구입했으며, 구입하려고 했는지」또는 「절도를 한 전후의 영상이라는 인상을 갖게 하는 모습」이라는 정보라고 한다면, 당해 정보는 이미 본건특집프로가 방영된 시점에서 공개되었으므로 故 고오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의한 손해는 이미 그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Y2사에 의한 본건DVD의 방영 및 배포에 의해, 새로이 초상권 침해에 의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故 고오노의 손해와 피고 Y2사의 상기 행위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후지TV」가 본건특집프로를 방영함으로써 비공지성(非公知性)이 상실되었으므로 본건DVD의 내용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故 고오노의 상기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3) 故 고오노가 입은 손해의 내용 및 액수

〈원고의 주장〉

가. 故 고오노는 피고 Y1사의 전기 초상권 및 프라

이버시권 침해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엔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Y1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변호사 비용은 50만엔이다.

나. 또한 故 고오노는 피고 Y2사의 전기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엔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Y2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변호사 비용은 50만엔이다.

더욱이 피고 Y2사는 저명인사인 故 고오노가 절도를 했다는 장면의 초상을 이용하면, 일반 사인(私人)의 초상보다 사람들의 눈을 끌기 쉽다는 점에 착안하여 故 고오노의 마이너스 이미지를 자신들의 상업목적에 이용한 것으로, 이러한 양태(様態)는 극히 악질적이고 위법성이 크기 때문에 위자료의 증액 사유가 된다고 하겠다.

〈피고Y1사의 주장〉

부인(否認) 또는 다툼

〈피고Y2사의 주장〉

부인(否認) 또는 다툼

※ 원고는 피고 Y2사의 행위에 의해 故 고오노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1. 쟁점(1) (피고Y1사가, 본건 점포내에서 故 고오노를 본건감시카메라로 촬영하여 본건동화 파일을 보도기관에 제공한 것이 故 고오노의 초상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법상 위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모든 사람은 함부로 자신의 용모 등을 촬영당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촬영된 화상(畵像)을 함부로 공표당하지 않을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인격적 이익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최고재판소 1969년 12월 24일 대법정판결, 최고재판소 2005년 11월 10일 제1소법정판결). 또한 모든 사람은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생활상의 사실 또는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최고재판소 1995년 9월 5일 제3소법정판결, 2003년 3월 14일 제2소법정판결, 2003년 9월 12일 제2소법정판결). 다만 어떤 사람의 사생활상의 모습을 촬영하여 그 화상을 공표한 경우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상을 공표당하지 않을 이익과 공표해서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상기 인격적 이익 및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사회생활상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불법행위법상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를 본건에 비추어 검토하면, 본건감시카메라는, 본건 점포에 들어오는 고객의 개별적 승낙을 받지 않고 상품을 선정하거나 구입하는 모습을 무차별적으로 촬영하게 되며, 따라서 고객의 상기 인격적 이익 및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우려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 점포 내에서 손님을 촬영하고 그 화상이 보도기관에 제공되어 공표되는 행위가 불법행위법상 위법인지의 여부는, 촬영의 목적, 필요성, 방법 및 촬영된 화상의 관리방법, 제공목적, 제공의 필요성, 제공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촬영된 화상을 공표당하지 않을 이익과 공표해야 할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상기 인격적 이익 및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사회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본건감시카메라에 의한 촬영에 관하여

가. 증거에 의하면, 2007년 3월 17일 오후 4시 30분경 故 고오노가 본건 점포내에서 상품을 들고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가 허리를 굽히고 손을 윗도리 호주머니에 넣는 동작이라든가 그 후 계산대로 향하는 움직임 등 일련의 거동 및 용모가 본건감시카메라에 촬영되었음이 인정되는 바, 일반인의 감성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떠한 점포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구입했는지, 또는 구입하려고 하는지는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생활상의 사실 또는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갖게 끔 하는 영상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감성을 기준으로 할 때, 숨겨야만 할 사생활상의 사실 또는 정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밝혀지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대는 법적으로도 보호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감시카메라에 의해 故 고오노의 용모 등 초상과 관련된 인격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촬영되었을 뿐 아니라 프라이버시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도 촬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므로 피고 Y1사가 본건감시카메라로 故 고오노를 촬영한 것이 동인의 초상에 관련한 인격적 이익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불법행위법상 위법인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Y1사는 A주식회사의 가맹점(franchisee)으로서, 1999년「A秦野尾尻店」(A하타노오지리텐 · 이하「秦野尾尻店」으로 한다)을, 2005년에 본건 점포를 개점했다. 오토야마는 양 점포에 각각 책임자를 두고 자신은 이들 점포를 통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편의점을 개점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며, 피고 Y1사도 「秦野尾尻店」을 개점할 당시 프랜차이저(franchiser)인 A사로부터 감시카메라 설치를 전제로 개점 견적 등을 제시할 수 있었다.

편의점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절도 방지뿐 아니라 고객이나 종업원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며, 경찰로부터 요청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본건 점포내에는 16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설치대수가 적었으나 피고 Y1사는 경찰의 권고로 증설했다. 또한 본건 점포에서는 경찰의 권고를 받아 감시카메라 대수 증설 뿐만 아니라 화상(畵像)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경하기도 하고 카메라를 24시간 작동하기도 했다.

피고 Y1사는 본건 점포에 본건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약 500만엔을 지출했다. 본건 점포에서는 2~3주간에 1건 정도의 비율로 절도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절반 정도가 본건감시카메라의 영상을 근거로 범인이 검거되고 있다.

(나) 본건감시카메라는 고정되어 있어 특정 고객을 추적하여 촬영하는 일은 없다. 또한 피고 Y1사는 본건 점포 내외의 10개소 정도에서 감시카메라가 작동 중임을 알리는 벽보를 게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감시카메라의 대부분을 고객들이 보이는 위치에 설치해 놓고 있으며, 계산대 옆에는 감시카메라의 영상을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고 있다.

(다) 본건감시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1개월 정도 보존된 후에는 자동적으로 말소된다. 피고 Y1사에서는, 촬영한 영상의 이용, 보관, 말소 및 폐기 등에 관한 규칙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 점에 관해 프랜차이저인 A사로부터 지도를 받은 일도 없었다. 더욱이 오토야마는 「秦野尾尻店」이나 본건 점포의 종업원에 대해, 본건감시카메라의 취급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실수로 지갑을 놓고 간 고객으로부터 본건감시카메라의 영상을 보여 달라는 요청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말라는 당부도 하고 있었다. 또한 본건감시카메라의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자는, 오토야마 외에 본건 점포의 책임자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본건감시카메라의 매뉴얼은 종업원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아 종업원이 본건감시카메라의 영상을 녹화매체에 기억시켜 점포 밖으로 갖고 나가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 그런데 편의점은 보통 24시간 영업을 하며, 많은 상품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ATM(Automatic Teller Machine)을 설치하기도 하고, 공공요금의 지불을 대행하는 등 금전을 취급하는 수많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도나 강도 등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상기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본건 점포 내부를 촬영하는 목적은 절도나 강도 등의 범죄발생에 대처함과 동시에 절도 등의 범죄발생을 예방하는데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절도 등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카메라의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녹화한 후 상당한 기간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상에 의하면 피고 Y1사가 본건 점포내에 본건감시카메라를 설치, 본건 점포내의 모습을 촬영하여 이를 녹화하는 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으며,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촬영방법을 보면, 본건감시카메라는 고정되어 있어 특정고객을 추적하여 촬영하는 일은 없다. 피고 Y1사는 본건 점포 내외 10개소 정도에 감시카메라가 작동중임을 알리는 벽보를 게시하고 있고, 카메라의 대부분이 고객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계산대 옆에는 감시카메라의 영상을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본건 점포 주위에도 일용품 점포가 있어 본건감시카메라에 의해 촬영되는 것이 싫으면 다른 점포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본건 점포에 오는 고객은 본건감시카메라에 의해 촬영되는 것을 승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여지가 있어 본건감시카메라의 촬영방법은 상당성을 갖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촬영된 화상의 관리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촬영된 화상은 1개월 정도 보존된 후 자동적으로 말소되고, 오토야마는 종업원들에게 감시카메라의 취급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본건감시카메라의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사람은 오토야마외에 본건 점포의 책임자로 제한했고, 본건감시카메라의 매뉴얼이 종업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종업원이 영상을 녹화매체에 기억시켜 반출할 수 없도록 한 상황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촬영된 화상의 관리방법도 상당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원칙적으로는 촬영된 화상의 관리방법에 대한 매뉴얼 등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매뉴얼 등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화상의 관리방법에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라. 이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 Y1사가 본건감시카메라로 故 고오노를 촬영한 것은 사회생활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 아니며, 동인의 초상과 관련한 인격적 이익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법상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본건동화 파일의 제공에 관하여

가. 피고 Y1사는, 동피고가 보도기관에 제공한 본건동화파일에는 故 고오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전기 설시(說示)에 의하면, 2007년 3월 17일 故 고오노의 본건 점포내에서의 일련의 거동을 촬영한 감시카메라의 본건동화파일에 故 고오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 Y1사의

상기 주장은 채용할 수가 없다.

나. 피고 Y1사가 보도기관에 본건동화파일을 제공한 것이 故 고오노의 초상과 관련한 인격적 이익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법상 위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증거 및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오토야마는 2007년 3월 중순경 「후지TV」와 계약을 체결한 제작회사의 기자인 하루노(春野)로부터, 「후지TV」의 보도프로인 「FNN 슈퍼뉴스」에서 최근 소매점에서 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경종을 울리는 프로를 제작하고 있으니 감시카메라 영상의 제공 등 협력을 요청받고 가능한 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오토야마는 부록물의 납입개수에 대한 재고개수와 판매개수가 일치하지 않아 본건감시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동월 17일 故 고오노가 절도하는 영상을 발견했다는 등의 내용을 동월 19일 본건 점포의 책임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보고받았다. 오토야마는 종업원에게 자신도 상기 영상을 확인할 것이므로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떠들어대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오토야마는 다음날인 20일 본건 점포에 나가 상기영상을 확인하면서 故 고오노가 절도하는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 후 오토야마는 平塚(히라츠카)경찰서의 경찰관에게 상기영상을 보였는데 故 고오노의 절도죄를 입증할 증거로 충분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 오토야마가 하루노 기자에게 故 고오노의 절도영상이 촬영되었음을 전하자 하루노는 해당 동화파일을 다른 절도영상의 동화파일과 함께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 오토야마는 하루노에게 동월 22일경 몇 건의 절도장면이 촬영된 본건감시카메라의 영상과 관련한 동화파일을 제공했다. 이 동화파일 중에는 동월 17일의 본건 점포내에서의 故 고오노의 일련의 거동을 촬영한 영상과 관련한 동화파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오토야마는 故 고오노를 조사하기 전이므로 그의 영상을 신중하게 취급해 줄 것을 하루노에게 부탁했으며, 하루노는 故 고오노가 체포되지 않는 한 당해 영상을 보도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라) 본건 점포 종업원들은 동월 30일 본건 점포를 찾은 故 고오노에게 동월 17일에 본건 점포내에서 있었던 그의 행동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 故 고오노는 「잃어버렸어」, 「나도 (중략) 매입한 것 중에서 몇 개인가는 영수증이 없는 것도 있다」라는 발언만을 계속했다. 이어 오토야마가 추궁하자 故 고오노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상품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오토야마에게 사죄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토야마는 동월 30일 故 고오노가 동월 17일 본건 점포내에서 절도를 했다는 피해계를 히라츠카경찰서에 제출했다. 오토야마는 동일 본건 점포를 방문한 하루노에게 故 고오노가 변명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본건감시카메라의 영상과 관련한 동화파일을 제공했다.

(마) 故 고오노는 동년 4월 5일 이 사건과 관련한 절도죄로 체포되었다. 하루노는 동년 4월 5일 오후 5시경 오토야마에게 전화를 걸어 故 고오노가 체포되었으므로 동일의 「후지TV」의 저녁뉴스에 본건동화파일과 관련한 영상을 방영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오토야마는 이에 동의했다. 그 후 「후지TV」 이외의 보도진이 본건 점포 앞에 몰려들어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고 인근에서도 클레임이 걸려오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그래서 오토야마는 보도진의 요청을 받아들여 동일 오후 9시경 기자회견에 응했다. 이 때 오토야마는 주식회사 「TV아사히」 기자로부터 「후지TV」가 갖고 있는 본건동화파일을 다른 방송국에도 제공해 주도록 주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후지TV」에 의뢰하여 다른 방송국에도 본건동화파일과 관련된 영상을 배신하도록 했다.

다. 전기와 같이 피고 Y1사가 본건 점포에 본건감시카메라를 설치한 목적은 절도나 강도 등의 범죄발생에 대한 대처와 함께 절도 등의 범죄발생을 예방하는데 있는 바, 상기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Y1사가 「후지TV」에 본건동화파일을 제공한 목적은 상기 설치목적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Y1사가 보도기관에 본건동화파일을 제공한 것이 불법행위법상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의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상기 관점에서 검토하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Y1사가 「후지TV」에 본건동화파일을 제공한 것은 편의점의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절도의 증가에 경종을 울리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점에서 본건감시카메라의 설치목적 등에 간접적으로나마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기인정사실에 더해, 본건동화파일에 관련한 영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 Y1사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故 고오노가 본건 점포내의 상품을 절도했다고 믿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동피고가 하루노 기자에게 故 고오노가 절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라면서 본건동화파일을 제공한 것은 상기 목적에 따르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오토야마는 동월 22일경 하루노에게 故 고오노의 영상을 신중하게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본건동화파일에 관련된 영상은 故 고오노가 체포된 후 처음으로 방영되었다. 따라서 본건동화파일을 제공하는 방법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 Y1사가, 「후지TV」에서 다른 방송국에 본건동화파일에 관련한 영상을 배신하는 것을 승낙한 것도 故 고오노가 체포된 후였으며, 사건보도라는 공익에도 기여했을 뿐 아니라 보도기관들도 故 고오노가 체포된 후에 그 사실을 보도했다.

라. 이상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피고 Y1사가 본건동화파일을 보도기관에 제공하여 이를 공표하게 된 것은, 사회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故 고오노의 초상과 관련된 인격적 이익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법상의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쟁점(2)(피고 Y2사가 본건홈페이지의 동화를 인터넷상에 업로드한 행위는 故 고오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그리고 피고 Y2사가 본건DVD를 방영 및 배포한 것이 故 고오노의 초상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법상의 위법인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본건홈페이지 동화의 업로드에 관하여

전기 전제가 되는 사실(3)마(가) 기재와 같이 피고 Y2사는 2007년 4월 12일부터 동년 7월 26일까지 본건특집프로의 일부를 발췌, 편집한 본건홈페이지동화를 「2007.4 후지TV(슈퍼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라는 링크를 걸고, 자사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토록 했다.

본건홈페이지동화는 전체 길이가 1분 48초로 그 태반은 본건특집프로에서 피고 Y2사의 방범기기 소개 및 실험부분을 발췌하는 현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앞부분의 「고오노 용의자의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방범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이쪽 회사입니다」라는 리포터의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을 뿐만 아니라 화면 오른쪽 상단의 「왜 증가… 어른의 절도 고오노 용의자 "범행의 순간"」이라는 텔롭도 그대로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상기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홈페이지동화는, 상기 리포터의 발언과 텔롭의 기재에 의해 故 고오노가 절도를 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일반시청자의 보통의 주의와 시청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故 고오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Y2사가 본건홈페이지동화를 인터넷상에 업로드한 행위는 故 고오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 Y2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동피고의 불법행위는 피고 Y1사가 본건 점포내에서 故 고오노를 본건감시카메라로 촬영, 본건동화파일을 「후지TV」에 제공하여 방영하게 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들 각 행위가 적법인 이상 피고 Y2사의 행위도 적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성립여부는, 행위자마다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피고 Y1사나 「후지TV」의 행위가 적법이라고 해서 피고 Y2사의 행위가 당연히 적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Y2사의 상기 주장은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예를 들면, 「후지TV」의 본건특집프로 방영이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피고 Y2사가 본건홈페이지동화를 업로드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 Y2사는, 「왜 증가… 어른의 절도 고오노 용의자 "범행의 순간"」이라는 텔롭을 작성하여 본건특집프로를 방영한 것은 피고 Y2사가 아니고 「후지TV」이므로 동피고가 본건홈페이지동화에 상기 텔롭을 흘린 것은 사실의 적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기 텔롭을 작성하여 본건특집프로를 방영한 것이 「후지TV」라고 하더라도, 본건홈페이지동화를 작성하여 이를 업로드한 것은 피고 Y2사이므로, 본건홈페이지동화에 상기 텔롭을 올린 것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동피고의 상기 주장은 이유가 없다.

더욱이 피고 Y2사는, 본건홈페이지동화의 업로드가 故 고오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후지TV」에 의한 본건특집프로의 방영에 의해 이미 故 고오노의 사회적 평가는 저하되었으므로, 새로이 본건홈페이지동화에 의해 故 고오노의 사회적평가가 저하되지는 않았으며, 동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인의 손해와 피고 Y2사의 상기 행위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지TV」에 의한 본건특집프로의 시청자와 본건홈페이지동화의 시청자가 완전히 겹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본건홈페이지동화의 업로드에 의해 새로이 故 고오노의 사회적평가가 저하되는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Y2사의 상기 주장도 이유가 없다.

(2) 본건DVD의 방영 및 배포에 관하여

전기 전제가 되는 사실(3)마(나) 기재와 같이 피고 Y2사는 본건특집프로의 영상 및 내레이션 가운데 故 고오노가 비춰지고 있는 부분을 편집하여 여기에 자기 회사의 감시카메라의 성능과 실적에 관한 내레이션을 덧붙인 DVD(본건DVD)를 작성했다. 본건DVD의 전체 길이는 8분 10초에 달하며, 故 고오노가 본건 점포내에서 상품을 손에 들고 안쪽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허리를 굽히고 손을 윗도리에 넣는 동작이라든가 이어 계산대로 향하는 동작 등 故 고오노의 본건 점포내에서의 일련의 거동들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본건DVD에는 故 고오노의 얼굴과 텔롭의 이름 부분의 일부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기도 하고, 이름을 읽는 내레이션의 일부에 「삐-음(ピ-音)」이 섞여 나오고 있었으며, 본건특집프로 첫머리에서의 「B재판에서 주목을 끌었던 (삐-) 고오노 용의자가 편의점에서 절도한 혐의로 어제 체포되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고오

노 용의자 "범행의 순간"」이라는 텔롭도 지워져 있었다는 사실, 피고 Y2사가 2007년 7월 4일부터 3일간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본건전시회에서 피고 Y2사의 부스를 찾은 내방객들에게 40인치 화면으로 본건DVD를 방영하여 열람토록 하는 한편 본건DVD를 배포한 사실, 피고 Y2사의 세일즈맨이 영업거래처에 대해 본건DVD를 배포한 사실 등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상기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DVD에는 故 고오노가 본건 점포에서 상품을 선정한 후 이를 구입하려고 하는 모습 등이 비춰지고 있어 이를 본 사람들에게 故 고오노가 본건 점포내에서 절도를 했다는 인상까지 주는 것이었으며, 전기 설시에 의하면 피고 Y2사는 본건DVD를 작성하여 이를 방영, 배포함으로써 故 고오노의 초상과 관련한 인격적 이익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전기 전제가 되는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 Y2사는 자사 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본건DVD의 방영 및 배포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동피고에게는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또한 故 고오노의 초상과 관련한 인격적 이익 및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사회생활상 수인한도 내라고 할 사정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동 피고의 상기 행위는 불법행위법상 위법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 Y2사는, 본건DVD에서는 故 고오노의 얼굴이 모자이크로 지워졌으며, 출연자나 내레이터가 故 고오노의 이름을 밝히는 부분에서는 음성이 지워지고 문자는 마스킹(masking)으로 숨겨졌다는 사실, 그리고 「고오노 용의자 "범행의 순간"」이라는 텔롭은 지워지지 않았으나 당해 텔롭이 방영된 것은 불과 한 장면으로 순간적이었다는 사실을 들어, 절도한 남성을 故 고오노로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DVD의 영상에서는, 故 고오노의 체형, 얼굴의 윤곽, 머리스타일과 색, 연령 등을 간취(看取)할 수 있으며, 피고 Y2사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고오노 용의자 "범행의 순간"」이라는 텔롭의 일부가 지워지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B재판에서 주목을 끌었던 (삐-) 고오노용의자가 편의점에서 절도한 혐의로 어제 체포되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었으며, 「B재판에서 주목을 끌었던… 고오노」라는 정보까지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본건DVD의 영상을 본 사람들은 피촬영자가 故 고오노라고 특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 Y2사의 상기 주장은 채용할 수가 없다.

또한 피고 Y2사는, 본건DVD의 방영 및 배포에 의해 故 고오노의 초상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한 손해는「후지TV」가 본건특집프로를 방영한 시점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Y2사에 의한 본건DVD의 방영 및 배포에 의해 새로이 초상권 침해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든가 또는 故 고오노의 손해와 피고 Y2사의 상기 행위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지TV」에 의한 본건특집프로의 시청자와 본건DVD의 시청자가 완전히 겹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본건DVD의 방영 및 배포에 의해 故 고오노의 초상과 관련한 인격적 이익이 새로이 침해되는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Y2사의 상기 주장도 이유가 없다. 피고 Y2사는, 본건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의 내용이 「사람이 언제 어떠한 점포에서 무엇을 구입했는지 혹은 구입하려고 했는지」라는 정보 또는 「절도를 한 전후의 영상이라는 인상을 갖게 하는 모습」이라는 정보라고 한다면, 당해정보는 이미 본건 특집프로가 방영된 시점에서 공개된 것이므로, 故 고오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의한 손해는 이미 그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건DVD의 방영 및 배포에 의해 새로이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의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든가 또는 故 고오노의 손해와 피고 Y2사의 상기 행위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후지TV」에 의한 본건

특집프로 방영으로 비공지성(非公知性)이 상실되었고, 본건DVD의 방영 및 배포에 의해 그 방송내용은 일반인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지 않은 사항은 아니었으므로, 故 고오노의 상기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가 아니라고 피고 Y2사는 주장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후지TV」에 의한 본건특집프로의 시청자와 본건DVD의 시청자가 완전히 겹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본건DVD의 방영 및 배포에 의해 故 고오노의 프라이버시권이 새로이 침해되는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본건특집프로의 방영에 의해 본건DVD의 영상이 비공지성을 상실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명백해졌다. 따라서 피고 Y2사의 상기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쟁점(3) (故 고오노가 입은 손해의 내용 및 액수)에 관하여 판단한다.

상술한 바에 의하면 故 고오노는 피고 Y2사의 전기 명예훼손, 초상과 관련한 인격적 이익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 Y2사는, 저명인인 故 고오노의 절도장면 초상을 이용하면 일반인의 초상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쉬울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故 고오노의 마이너스 이미지를 자신의 상업목적에 이용한 면이 있었다고 추인(推認)되는 사실, 본건홈페이지동화는 인터넷에서 약 3개월 반에 걸쳐 공개되어 불특정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한 상태에 놓여 졌다는 사실, 본건DVD가 방영된 본건전시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다는 사실, 피고 Y2사는 본건전시회에서 적어도 본건DVD를 100매 가깝게 배포했으며, 영업 관계자에게도 본건DVD를 배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기 전제가 되는 사실(3).라 기재와 같이 「후지TV」가 본건동화파일을 기본으로 한 영상을 방영한 후 다른 민간방송 각사에서도 연일 본건동화파일을 기본으로, 故 고오노를 특정할 수 있는 형태로 동인의 본건 점포내에서의 거동을 반복해서 방영했다. 따라서 故 고오노의 상기 영상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 Y2사는 故 고오노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 본건홈페이지동화의 링크로부터 故 고오노의 영상을 즉각 삭제했으며, 그 후에는 당시의 URL을 직접 치지 않는 한 상기 영상을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는 사실 등도 인정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Y2사가 故 고오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지불해야 할 위자료는 100만엔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Y2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변호사 비용은 10만엔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4. 결론

이상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Y1사에 대한 청구는 다른 나머지 점에 대해 판단할 것 까지도 없이 이유가 없으며, 또한 원고의 피고 Y2사에 대한 청구는 주문 게기(揭記)의 한도에서 이유가 있다(더구나 피고 Y2사의 불법행위는 각기 일련일체의 불법행위이며, 소장(訴狀)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부대(付帶)청구의 기산일은 소장 송달일의 다음날인 2008년 5월 25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판례타임즈』No. 1343호, 153~166
■ 번역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트위터 또는 트윗픽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저작자)가 게시한 콘텐츠의 재사용을 장려하고 허용한다는 이용자와 트위터 또는 트윗픽 간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제3자인 언론사가 해당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 원 고 : Agence France Presse
- 피 고 : Daniel Morel
- 제3당사자 : Getty Images(US), Inc. 등
- 판 사 : William H. Pauley III

(미 연방지방법원 뉴욕 남부지법)

원고 Agence France Presse("AFP")는 AFP가 피고 다니엘 모렐(Daniel Morel)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구한다. 이 사건의 피고 Morel은 AFP가 저작권법 및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미국상표법(Lanham Act)을 위반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FP는 피고 Morel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미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각하해 달라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며,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Ⅰ. 기초사실

1. 아이티지진 사진

Morel은 아이티에서 20년 넘게 사진을 찍어 온 전문 사진저널리스트이며, AFP는 전세계의 신문사 등 미디어에 사진을 제공하는 프랑스계 뉴스통신사이다. Morel은 2010년 1월 12일 아이티 대지진 발생 당시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Port au Prince)에서 지진의 참사를 촬영하였고, 아이티의 통신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오후 인터넷 접속에 성공했다. Morel은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인 트위터와 트위터의 어플리케이션인 트윗픽(twitpic)에 "photomorel"이라는 아이디의 계정을 만들었다. 트위터 사용자가 올리는 게시물, 즉 '트윗'은 총 140자에 한정되지만, 트윗픽을 이용하면 사진을 업로드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트위터와 트윗픽은 미국의 서로 다른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로, 각기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트윗픽은 "트윗픽에 사진을 업로드하면 트윗픽 사이트 및 제휴 사이트에서 사진을 사용, 또는 배포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업로드된 모든 이미지 파일은 게시물을 올린 본래 소유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Morel은 트윗픽에 사진을 업로드한 후 트위터 계정에 "지진 사진 독점 공개"라는 트윗을 올리고 트윗픽 페이지를 링크시켰다. 사진 자체에는 저작권에 대한 아무런 공지가 없었으나 Morel의 트윗픽 페이지에는 사진 옆에 "Morel", "by photomorel"이라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었다. 또한 해당 트윗픽 페이지에는 "@2010 Twitpic Inc, All Rights Reserved"라고 공지되어 있었다. Morel은 인터넷에 사진을 게재하면서 지진 소식을 알리고, 저작권을 보호받으면서 사진에 대해 인정받고 보상받기를 원했다.

2. 언론의 사진 사용

Morel이 사진을 올린 후 도미니카 공화국 거주자인 리산드로 수에로(Lisandro Suero)가 해당 사진을 복사하여 자신의 트윗픽 페이지에 포스팅하고 "지진 사진 독점 공개, 원본 사진임"이라고 트윗 메시지를 올렸다. 그는 사진가도 아닐뿐더러 지진이 일어난 당시 아이티에 있지도 않았다. 또한 해당 사진이 Morel의 것이라는 점도 밝히지 않았다.

문제의 사진은 아이티 지진을 촬영한 최초의 사진으로, 미디어가 재빨리 행동에 들어갔다. 그날 저녁 미국 등 외국의 수많은 언론사들이 Morel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저작권을 사겠다고 연락해왔다. CBS에서는 기자 4명이 사진을 사겠다며 원작자임을 밝혀주겠다고 제안했다. 게다가 CNN에서는 5명이 사진을 칭찬하며 방송에 내보내게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Morel이 사진을 올리고 한 시간도 채 안 되어 AFP의 사진 편집자인 빈센트 아말비(Vincent Amalvy)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해당 사진을 링크시켰다. 한 시간 후 Amalvy는 Suero가 올린 사진에 대해 질문하면서 그의 트위터 페이지를 포스팅했다. 오후 9시 41분경 Amalvy는 Morel에게 "사진을 갖고 있습니까?"라고 묻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몇 분 후 Morel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AFP는 Suero의 트윗픽 페이지에 게시된 Morel의 아이티 지진 사진 13장을 다운로드받았다.

AFP는 "이미지 포럼"이라는 온라인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진을 판매, 배포하고 있다. AFP는 해당 사진을 이미지 포럼에 올린 후, 이미지 라이선스 업체인 Getty측에 제공했다. 쌍방의 계약에 따라 Getty사는 북미와 영국 지역에서 AFP의 사진을 독점 판매한다. Morel의 사진은 "AFP/Getty/Lisandro Suero", 즉 저작권이 AFP와 Getty사에 있으며, 원작자는 Suero라는 크레딧을 붙인 채 배포되었다. Getty사는 Morel의 사진을 CBS와 CNN 등 여타 수많은 언론사에 배포했다.

Morel은 AFP와 Getty사가 제반 절차를 어기고 Suero가 원작자인지 여부 및 사진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AFP와 Getty사가 Suero가 아이티 사진을 찍었다고 믿을만한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고, Suero가 아이티에서 잘 알려진 사진작가인 자신의 사진을 "훔쳤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월 12일 오후 5시 45분 CNN은 지진 소식을 보도하면서 Morel의 사진 7장을 방송에 내보냈다. Morel은 CNN이 자신의 트윗픽 페이지에서 사진을 다운로드받았다고 주장한다. 1월 13일 CNN의 앵커 앤더슨 쿠퍼(Anderson Cooper)는 Morel의 다른 사진도 추가로 보도했다. Morel은 CNN이 Getty사로부터 사진을 구매한 후 이를 제휴사인 Time사에 다시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1월 13일 오전 2시 06분 AFP 소속 직원이 Morel의 트위터 페이지에 "안녕하세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훌륭한 사진을 찍으셨군요. 저는 AFP에서 일합니다. 메일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Morel은 AFP가 이 시점에서, 또는 그 이전에 해당 사진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AFP가 이미지 포럼 및 각종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진을 삭제한 후 다른 제휴사에 사진 삭제를 요청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 후에 AFP의 직원들은 Morel에게 사진에 대해 문의하는 트윗을 여러 차례 올렸다.

1월 13일 오전 5시 30분경 AFP사는 원작자의 크레딧을 Suero에서 Morel로 변경하도록 내부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Getty사는 "AFP/Getty/Lisandro Suero"라는 크레딧을 표시한 사진을 각종 자선단체, 구호단체, 언론사 등에 배포하였고, AFP와 Getty사를 저작권자로 표시하였다.

1월 13일 CBS는 저녁뉴스시간에 Morel의 사진 중 4장을 허가 없이 보도하였다. 또한 웹사이트에 여러 장을 게재하였다. Morel은 CBS가 제휴사에 사진 사용을 허가해줬다고 주장한다. 해당 사진은 2010년 4월까지 CBS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었다.

3. 저작권 분쟁

Corbis, Inc("Corbis")는 Getty사의 경쟁사로서

Morel의 사진을 독점 판매하는 대행사이다. Corbis사는 Morel이 전송하는 사진에 대해 저작권을 가진다. 1월 13일 Morel은 사진을 Corbis사에 보냈고, Corbis사는 그날 오후 사진을 게재했다.

1월 14일 Corbis사는 Getty사에 메일을 보내 Morel의 사진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그 날 오후 AFP는 Morel을 원작자로 표시한 사진 8매를 삭제했다. 그러나 Suero가 원작자로 표시되거나 원작자를 표시하지 않은 사진 5매는 계속 남아있었다. 그날 Amalvy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Daniel Morel 씨를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을 사용한 것이고, 지금 사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Corbis사보다는 우리가 사진 배포에 대한 우선권을 가집니다.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도 아닐 뿐더러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나한테 전화하라고 하세요."

2010년 1월 22일 AFP는 해당 사진을 Corbis사에 전송했다. 그러나 Morel의 주장에 따르면 AFP와 Getty사는 크레딧을 변경하거나 사진을 삭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의 사진을 가져다 판매했으며, 그 결과 재정적 이득을 취득했으며, 게다가 AFP와 Getty사가 고객사를 감독하거나 권리침해에 대해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뉴욕타임스와 타임, USA Today, 베니티 페어, 보스턴 글러브, 워싱턴포스트지 등이 해당 사진을 보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010년 3월 1일 Morel의 대리인은 AFP사에 해당 사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과, 다른 고객사에도 사용 금지를 고지하도록 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또한 다른 뉴스사 및 복지단체 등에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관이 Morel의 사진을 계속하여 내보내고, 심지어 Suero를 원작자로 표시한 사진을 내보내기도 했다.

Ⅱ. 논 의

1. 법적인 관점

소 각하신청을 판단하는 데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모두 사실이어야 하며 원고에게 유리한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실관계를 제시함에 있어 피고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동안의 판례와 일반 상식에 비추어 고려하여야 한다.

소 각하신청 사건 심리에 있어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기록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장에서 언급한 기록도 모두 참고하여야 한다. 또한 언급되지 않은 기록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기록의 용어와 효력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원고에게 반드시 필요한 문서이므로 재판시 고려하여야 한다.

2. 저작권에 대한 판단

A. 직접적인 침해(direct infringement)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피해자는 (1)유효한 저작물의 소유권과 (2)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 두 가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한다 할지라도 라이선스의 실재 여부가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는 주요한 쟁점이 된다.

AFP와 다른 언론사들의 주장은 (1)해당 사진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2)Morel과 트위터 간 라이선스 동의에 따라 사진을 사용한 제3의 수혜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Morel의 주장을 기각해야 한다면서 재판부가 트위터와 트윗픽의 이용약관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을 고려하더라도

이들에게 Morel의 사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저작권자가 계약 업체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라이선스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 본인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트윗픽의 로그인 페이지는 이용자들에게 "'allow'를 클릭하면 트위터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문구는 아래와 같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콘텐츠를 게시함으로써 트윗픽은 전세계적 미디어 또는 유통사에 해당 저작물을 사용, 복제, 재생산, 수정, 출판, 전송, 게시 및 배포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참고 : 즉, 이용자의 트윗을 전 세계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콘텐츠의 소유권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트위터의 약관은 "트위터는 트위터와 제휴한 업체, 기관, 개인에게 해당 콘텐츠를 제공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의 재사용을 장려하고 허용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트위터의 약관은 캘리포니아 주법의 영향을 받고, 트윗픽은 델라웨어 주법의 영향을 받는다.

즉 트위터의 약관에 따르면, 콘텐츠를 사용할 권리를 트위터와 그 제휴사로 한정한 것이다. 또한 사진의 저작권이 "트윗픽과 그 제휴사이트"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고는 이 약관에 의한 트위터나 트윗픽의 제휴사가 아니다. 게다가 트위터가 "콘텐츠의 재사용을 장려하고 허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용자들이 저작권이 있는 포스팅을 재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AFP와 다른 언론사에 Morel의 사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

(2) 제3의 수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제3자의 수혜를 명확히 인정하는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철회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효력을 가진다. 계약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수혜자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계약 당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계약서상 계약 주체가 수익을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면 제3자는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트위터의 약관에 따르면 Morel이 자신의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주체는 트위터의 제휴사와 2차 저작권자뿐이다. 그러나 AFP 및 다른 피고들은 트위터의 제휴사 또는 2차 저작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용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게다가 트위터가 "콘텐츠의 광범위한 재사용을 권장 및 허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트윗픽 사용자가 자신의 사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 Morel이 "트위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작권을 부여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애매할뿐더러 불충분하다. 따라서 AFP와 다른 기관들이 제3의 수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B.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와 대위침해(vicarious infringement)

주된 침해자 외에도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침해 행위를 유발하거나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간접적인 침해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기여침해는 (1)침해를 조장하거나 돕는 개인적인 행위, (2)침해를 가능케 하는 기계나 물건을 제공하는 행

위이다. 대위침해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재정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행위자가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위이다. AFP와 Getty사는 저작권을 갖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자체가 없었고, 따라서 기여침해행위를 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라이선스의 존재 여부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다. 게다가 AFP와 Getty사가 해당 사진이 Morel의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면서 권리를 침해했고, 제3자에게 넘겼다는 Morel의 주장으로 볼 때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대위침해행위와 관련하여 Morel은 AFP와 Getty사가 제3자들에게 사진의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사진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대위침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두 업체가 라이선스를 넘기면서 라이선스에 대한 대금을 받았으므로 직접적인 재정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CBS와 CNN이 이로 인한 직접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점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3.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A. 저작권 관리정보(CMI)를 허위로 표시했는지 여부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은 고의로 허위 저작권 관리정보(CMI)를 제공,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상 저작권 관리정보(CMI)는 "저작물 또는 저작행위, 저작물의 전시(디지털 형태를 포함함)에 첨부되어 있는 일련의 정보"라고 명시되어 있다.

Morel은 AFP가 해당 사진에 "AFP/Getty/Daniel Morel"과 "AFP/Getty/Lisandro Suero"라는 크레딧을 붙였으므로 저작권 관리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AFP는 이 크레딧은 저작권 관리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Morel은 AFP가 CMI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침해를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Morel에 따르면 AFP의 사진 편집자가 Suero의 트윗픽 페이지에 게시된 동일한 사진에 대해 묻기 전에 이미 해당 사진을 봤으며, 편집자의 메일에 답하지 않자 Suero의 사진을 다운로드받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신이 잘 알려진 사진가이고 Suero가 사진을 직접 찍었다고 믿을만한 이유도 없었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AFP는 사진의 원작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사 없이 Suero를 원작자로 내보냈다고 주장한다.

Getty사에 대해서는, AFP가 원작자 표시를 Suero에서 자신으로 바꿔달라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Suero로 내보냈다고 주장한다. Getty사는 사진가로서의 Morel의 명성을 알고 있었고 Suero가 원작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주장을 검토해보면 충분히 이들이 사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과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된다.

B. 저작권 관리정보의 삭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은 고의로 저작권 관리정보를 삭제, 변경, 배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orel의 트윗픽 페이지에 게시되고 Suero가 복제해간 해당 사진에 저작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는 사실에는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 Morel의 트윗픽 페이지에는 이미지 옆에 "Morel", "by photomorel"이라는 연관어가 게시되어있었고, 더 나아가 트윗픽 계정을 링크시킨 Morel의 페이지에는 "daniel morel", "photomorel"이라고 게시되어 있었다.

본 법원은 저작권 관리정보가 사진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1202(B) 조항은 삭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은 저작권 관리정보를 저작물과 함께 전달되는, 즉 저작물 그 자체에 표시되어 있는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Morel의 사진을 보는 사람이 사진 다음에 표시되는 "Morel", "by photomorel"이라는 연관어가 원작자를 뜻한다는 것을 모를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게다가 본 법원은 저작권 관리정보의 범위를 '자동화된 저작권 보호 유지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좁게 해석할 수 없다고 본다.

AFP는 "daniel morel", "photomorel" 같은 표시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술적 척도"라기보다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수행한 저작권 유지체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Morel", "daniel morel", "photomorel"이라는 연관어가 법문상 저작권 관리정보의 범주에 명백히 들어간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사전에 침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Morel은 AFP, CNN, CBS가 사진을 얻기 위해 자신을 접촉했고, 허가 없이 사진을 가져갔으며, 저작권 관리정보를 바꿔서 배포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Getty사가 크레딧 변경 요청을 받은 이후에도 Suero 또는 AFP를 원작자로 표시한 사진을 계속하여 배포했다고 주장한다. Morel은 CBS와 CNN이 자신을 원작자로 표시하지 않고 내보낸 여러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따라서 Morel의 주장은 이유 있어 본안으로 계속하기로 한다.

4. 미국상표법(Lanham Act)을 위반했는지 여부

미국상표법 43(a)(1)은 "출처를 잘못 지정하거나 사실의 표시 또는 묘사가 잘못되거나 애매할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잘못 기재하거나 오인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특정인과의 제휴, 연계관계, 또는 상품, 서비스의 재정적 후원, 승인여부 등의 사실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B) 상업광고나 판촉에 있어 제품이나 서비스, 상업행위의 본질, 특성, 품질, 지리적 출처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43(a)에서 (A)의 조건을 충족하는 잘못된 표시를 했거나 (B)의 조건을 충족하는 잘못된 광고를 했을 때 문제가 된다. 43(a) 조항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생산자의 선의를 손상하는 상표 침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43(a) 조항은 그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신의 것처럼 허위로 공표하는 등의 사기통용행위(passing off)를 금지한다.

Dastar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43(a) 조항이 저작권법에서 우회적으로 인용되거나 저작권자에게 보호막을 주기 위한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상표법은 저작권의 핵심인 독창성이나 진위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서적이나 비디오 등의 의사소통을 위한 상품에 있어 '출처'란 '판매를 위해 제공된 상품의 판매자'이며, 이 상품에 내재된 아이디어나 컨셉이 아니다.

따라서 AFP와 Getty사가 상품에 거짓 표시를 하여 광고하였으므로 상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Morel의 주장은 이유없다. Morel은 사진의 크레딧이 "AFP/Getty/Daniel Morel", "AFP/Getty/Lisandro Suero"로 표시되었으므로 AFP와 Getty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Lisandro Suero가 원작자인 것처럼 이미지의 출처를 허위표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진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의사소통을 위한 상품"이

므로 상표법 43(a)(1)(A)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Morel은 본인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되고,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법적 조치를 밟을 수 있으나, 저작권 및 원작자 표시가 잘못되었는지 여부는 상표가 아닌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허위광고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43(a)(1)(B) 조항에 따르면 상업광고나 판촉을 하면서 상품의 특성, 성질, 품질, 지리적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Morel은 AFP와 Getty사가 이들이 해당 사진의 배포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고, 게다가 Suero가 원작자라고 허위 표시하였다며 허위광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두 업체는 사진의 "특성, 성질, 품질, 지리적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없다.

Ⅲ. 결론

이상의 이유로 AFP와 Getty Images, CBS, Turner Broadcasting System의 Morel에 대한 소각하 신청은 일부만 인용하기로 한다. Morel의 청구 중 CBS와 TBS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AFP, Getty, CBS, TBS가 상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각하 신청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AFP, Getty, CBS, TBS가 저작권 및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침해하였다는 주장과 AFP와 Getty사가 저작권의 기여침해와 대위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본안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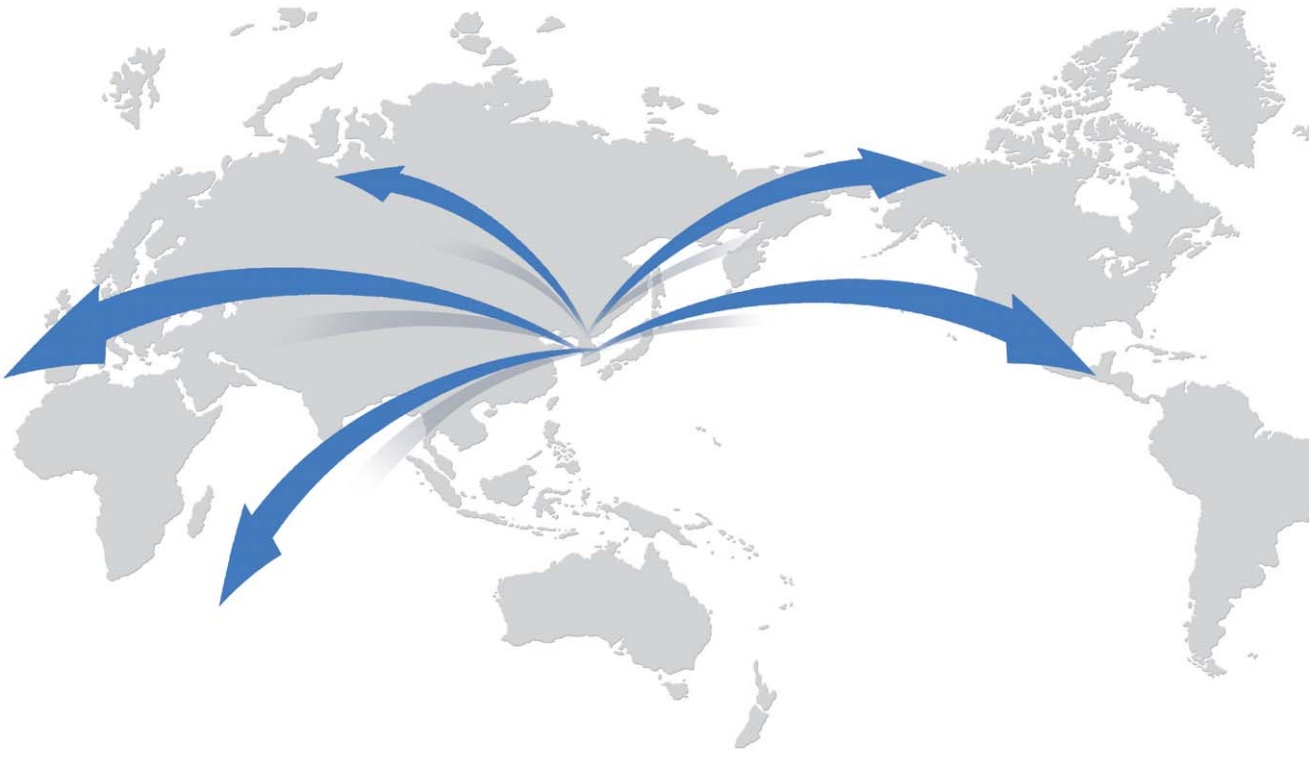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영국 사례]

언론사가 중범죄자의 신원과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특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청인 : 비공개
인용된 조항 : 7, 11조
언론사 : Staffordshire Newsletter

결정내용

신청인은 스태포드샤이어 뉴스레터(Staffordshire Newsletter)가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여 언론윤리강령 제7조(아동 성폭력)와 제11조(성폭력 피해자)를 위반하였다며 PCC(Press Complaints Commission)에 불만을 제기했다. 논의 결과 해당 보도에 범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되어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되었다.

신청내용

언론사는 아동 성폭력의 용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구속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범인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였다. 또한 피해 아동의 성별, 성적 학대가 시작되었을 무렵의 나이, 학대받은 기간 등을 명시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 아동의 할아버지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해당 기사로 인해 손자의 신원이 특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언론사가 가해자의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주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기사의 다른 세부적인 내용 또한 자신의 손자를 가리키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보도 이후 피해 아동의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누군지 모두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언론사 주장

언론사는 범죄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 신원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정이유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윤리강령 제11조와 별도로, 제7조 또한 "언론은 성폭력의 희생자 또는 목격자가 16세 이하의 아동인 경우 그 신원을 공개해서는 아니되며, 공개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를 암시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이러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언론사는 기사 내용으로 인해 범

인을 아는 독자가 피해 아동의 신원을 추정할 가능성이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언론사는 범인의 신원을 완전히 공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중에게 그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에 속하며, 사진을 공개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사진 공개 자체를 강령 위반으로 볼 여지는 없다.

한편 PCC는 해당 기사에 포함된 다른 부가적인 정보, 즉 피해아동 및 학대에 대한 내용과 담당 검사, 판사의 인터뷰 내용 등을 검토했다. 각각의 내용은 사소한 것이었으나 전체적으로 독자에게 가해자와 피해아동 간 관계를 추정할 여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PCC는 언론사가 주의 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 아동의 신원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고려하여야 마땅하다. PCC는 언론사의 고의는 없었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판단 아래 해당 신청을 인용했다.

[호주 사례]

명백하게 공익과 관련한 보도에서 자살자의 실명 공개는 자살보도와 관련한 윤리 강령 위반이 아니다.

평결번호 : No.1490
신 청 인 : David Boothman
언 론 사 : Perth Voice

결정내용

일부 인용

신청내용

지역지인 퍼스 보이스(Perth Voice)는 최근 WA부패범죄위원회에서 곧 열릴 심리의 주요 증인이었던 남성의 자살에 대해 보도했는데, 이 기사에 대해 APC(Australian Press Council)에 불만이 제기되었다.

부패범죄위원회의 심리에서는 고인이 스털링(Stirling) 시 의회의 중견 의원으로 재직 중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기사는 '부정부패 조사, 죽음으로써 중단되다' 라는 제목으로 2010년 9월 18일자로 보도되었다.

신청인인 데이빗 부스만(David Boothman) 시의회 의장은 해당 기사에서 죽은 남성의 이름이 언급된 것이 비윤리적일 뿐더러 전혀 불필요한 보도였다고 전제하면서 죽은 의원이 부정부패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가 전혀 입증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명을 공개한 언론이 퍼스 보이스(Perth Voice)뿐이며, 이후 열린 위원회 심리에서도 "죽은 이의 유족과 친구들의 심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언론사가 유족, 특히 부인과 아이들의 사생활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은 언론사가 해당 기사를 통해 다른 직원 또한 2년 반 전 의회에서 해고당한 뒤 자살한 적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고인의 죽음은 의문사로 종결되었으므로 자살이라고 단정한 것은 부정확하고 불공평하다는 보도였으며, 2년 반 전의 죽음이 이번 자살 건과 연관된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어 유족에게 심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주장

언론사는 이번 자살건과 관련, 실명을 공개한 것은 고인이 지역 공무원으로서 부정부패에 관한 조사의 주요 증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능하면 모든 진실을 독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며 다른 언론사에서 자살자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편견일 뿐이고, 이러한 (정신 건강에 관한)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긴급한 필요를 억누르는 불필요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유족과 고인의 친구, 직장 동료들은 이미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 이전에 있었던 사망 사건에 대해 언론사는 두 사람의 사망을 둘러싼 제반 사정이 유사하여 뉴스 가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에서 두 죽음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인상을 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결정이유

APC는 언론사가 WA부패범죄위원회에서 주요 증언을 할 예정이었던 고인의 실명을 공개한 것과 관련, 명백하게 공익과 관련된 보도이므로 자살보도에 대한 윤리강령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APC는 자살로 인한 유족과 친구들의 심적 고통이 보도로 인해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그러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부작용과 유족들의 피해를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서 2년 반 전에 있었던 다른 직원의 죽음에 대해 불필요하게 언급한 것은 공정성을 잃은 행위였다고 판단한다. 언론사가 자살이라고 단정지을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을뿐더러, 두 죽음을 연결 지을 만한 근거도 미약한 상황에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에 대한 신청은 인용되었다.

추가사항

신청인은 APC에 신청하기 이전에 언론사의 편집자와 대표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다. 언론사는 신청인의 의견 전문을 실으면서 이 서한을 보도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 항의서한이 공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며 반대했지만, APC는 해당 서한을 보도한 언론사의 결정이 합당했다고 판단했다.

[아일랜드 사례 1]

언론사가 사망자에 대해 선의(善意)를 가지고 취재·보도하고, 이후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했다면, 그 유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관련 윤리강령 위반이 아니다.

신청인 : Gibson

언론사 : Irish Daily Mirror

결정내용

프레스 옴부즈맨(The Press Ombudsman)은 아일리쉬 데일리 미러(Irish Daily Mirror) 2010년 7월 17일자 보도가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제롬 깁슨(Jerome Gibson)이 제기한 신청에 대해 언론사가 충분한 사후 조치를 취했음이 인정된다고 2010년 12월 9일 판단했다.

신청내용

신청인은 해당 기사가 윤리강령 제1조(진실과 정확성), 2조(사실과 의견의 구분), 3조(공정성과 정직성), 4조(권리 존중), 5조(사생활 보호), 8조(편견)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사는 신청인의 여동생의 죽음을 다룬 기사의 제목이 부적절하여 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신청인이 지적한 잘못된 사실관계

를 정정하였다. 또한 모든 취재진에게 개인에게 심적 고통과 충격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취재할 때는 사생활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윤리강령 5 · 3조를 준수하도록 고지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사과 및 정정보도가 신문의 1면에 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원래의 기사는 11면에 실렸고 언론사는 관련 정정보도를 같은 면 같은 위치에 실어주겠다고 제안했다). 신청인은 또한 언론사가 자신의 주장을 100%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언론사는 신청인에게 원하는 보도문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신청인이 거절했다.

결정이유

가족의 죽음이 유족에게 주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이러한 죽음을 보도하는 것은 어떤 보도든 유족에게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도를 아예 막을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언론사가 윤리강령 위반을 일단 인정하였다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다. 부정확한 사실관계가 보도되어 신청인의 고통이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이나 사실관계의 왜곡은 사실상 사소한 것으로 보이고, 언론사가 신청인 여동생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 선의를 가지고 취재 및 보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이 원하는 보도문을 요청한 언론사의 제의가 거절당함으로써 언론사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강령 1,2,4,5조 위반이라는 취지의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취재진에게 사생활 보호에 관한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고지한 언론사의 후속 조치는 사실상 이러한 사건사고를 보도하는 모든 언론사에 추천할 만한 조치였다.

결론적으로, 언론사가 사실관계를 보도함에 있어 공정성과 정직성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윤리강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심각한 범죄나 증오를 유발하기 위한 보도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고, 따라서 윤리강령 제3조와 제8조 위반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가사항

신청인은 옴부즈맨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은 아일랜드 신문평의회에 상정되었다. 아일랜드 신문평의회는 2011년 2월 회의에서 신청인의 이의에 대해 심사숙고하였으나, 새로운 증거나 언론사가 오류를 범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옴부즈맨의 결정을 인용하였다.

[아일랜드 사례 2]

언론사는 추측이나 루머,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신청인 : ESB
언론사 : IEvening Herald

결정내용

프레스 옴부즈맨(The Press Ombudsman)은 이브닝 헤럴드(Evening Herald)가 2010년 10월 21일 한 남성의 자살에 대해 보도하면서 자살 원인이 전기요금 미지불이라고 단정하여 윤리강령 제2조를 위반하였다며 제기된 신청에 대해 2011년 2월 24일 인용결정했다. 다른 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기각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신청내용 및 결정이유

해당 기사의 제목은 "아버지는 전기요금 650파운

드 때문에 자살했다"였다. 언론사는 고인과 가까운 사람들, 특히 미망인이 고인이 생전에 전기요금 미납을 가장 걱정해왔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또한 기사의 첫 번째 단락에서 "~라고 주장했다"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자살의 실제 원인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죽음의 원인이 몇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한 심각한 재정난이었다는 증거가 있고, 고인의 죽음이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죽음의 원인에 대한 언급이나 추측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기사의 제목은 단순히 전기요금의 미납이 죽음의 원인인 것으로 단정하여 보도하고 있다. 기사의 첫 단락에서 이것이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제목으로 보도함으로써 윤리강령 제2조를 위반한 것아 인정되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은 인용되었다.

그러나 제목이나 기사내용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윤리강령 제1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언론사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추측을 했다면 강령 제4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으나, 언론사 나름대로 ESB를 취재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강령 제4조 위반이라는 취지의 신청은 기각되었다.

추가사항

해당 언론사는 옴부즈맨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은 아일랜드 신문평의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아일랜드 신문평의회는 2011년 4월 1일 옴부즈맨의 결정을 인용하였다.

[뉴질랜드 사례]

개인의 범죄경력에 대한 보도는 당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언론사는 이를 보도함에 있어 특히 정확성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사건번호 : NO.2175
신 청 인 : Craig McConnell
언 론 사 : Timaru Herald

결정내용

신문평의회(Press Council)는 신청인 크레이그 맥코넬(Craig McConnell)이 티마루 헤럴드(Timaru Herald)의 보도에 대해 자신은 강간과 차량 절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신청한 사건에 대해 6:4로 인용 결정했다.

개요

2010년 11월 30일 티마루 헤럴드(Timaru Herald)는 27년 전 퀸즐랜드(Queensland)에서 일어난 미해결 살인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기자는 피해 여성의 부모와 신청인을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에 실었는데, 신청인은 당시 사건의 용의자였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기사는 신청인의 과거 범죄경력을 언급하면서 신청인이 두 건의 살인 및 강간, 강도, 차량절도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신청인은 이 중 강간과 차량 절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변호사가 이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보도 이전인 2010년 11월 25일 신청인의 변호사는 언론사에 서한을 보내 퀸즐랜드(Queensland) 지역 언론의 칼럼을 취재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신청내용

신청인의 변호사는 의뢰인을 강간범에 차량 절도범으로 묘사한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보도 이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책임은 언론사에 있다며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신문사의 요청을 거절했다.

또한 신청인이 기소되어 매우 놀랐다는 취지의 당시 담당 경찰관의 이메일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보도가 되었다면 담당 경찰까지도 신청인에게 혐의를 거의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독자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언론사 주장

편집인 데이빗 킹(David King)은 기사가 불공정하거나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간이나 차량 절도를 저질렀다는 부분의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점은 인정하나 이러한 혐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실수를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사실관계의 오류를 제외하면 해당 보도는 불공정하거나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정이유

미해결 살인 사건은 언제나 대중과 언론의 관심사이다. 미해결사건을 보도하면서 언론사는 죽은 여성의 가족과 경찰의 견해 뿐 아니라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의 견해까지도 고루 취재하여 보도하였다. 신문평의회(Press Council)는 언론사가 담당 경찰관의 견해를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공정성을 잃었다는 견해에 찬성하지 않는다. 다만 언론사는 신청인이 강간과 차량절도를 저질렀다고 잘못 보도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언론사는 사실관계의 오류를 인정하고 즉시 정정 및 사과보도를 게재했다. 정정보도에 대해서는 더 논하지 않기로 한다.

언론사는 보도 이전에 취재의 근거로 활용할 퀸즐랜드(Queensland) 언론사의 보도가 부정확하므로 정확히 취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받았다. 따라서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보도 이후의 정정 및 사과보도에도 불구하고 이미 원 기사가 대중에 공개되어 그 파급력이 커진 상태인데다, 원 보도를 접한 독자 모두가 이후의 정정보도를 읽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렵다.

언론사가 신속히 정정하기는 했으나, 신청인의 대리인이 취재 당시 이미 경고한 사실이 있고 해당 기사 내용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개인의 범죄경력과 관해 보도할 때는 정확성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강간범으로 묘사된 사람은 일반 대중의 눈에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지게 마련이다.

이 사건에서 언론사는 취재 당시 이미 기사의 내용에 매우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므로, 신문평의회(Press Council)는 이 사건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추가사항

한편, 위원 중 4명은 사건 기각을 주장했다. 이들 소수의견에 따르면 신청인의 변호사가 취재 내용에 부정확한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언론사에 항의할 때 더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했더라면 이러한 기사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았을 수 있으며, 해당 기사의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나 언론사가 즉시 정정함으로써 그 피해가 즉시 구제되었다는 것이다.

언론법제관련문헌

- 고민수 (2011. 5. 30). 방송통합법제에서의 미디어 개념 정립. SSK시장경제선진화사업단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주최, '방송통신산업의 융복합화에 따른 미디어법제의 동향과 쟁점' 공동학술세미나 발제문.

- 권상희 (2011. 5. 13). 스마트 미디어와 SNS, 커뮤니케이션 행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 전망. 한국언론학회주최, '2011년도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권혜진 (2011. 6. 30). 뉴스 생산과정에서 소셜 미디어의 역할 : 취재 및 유통방식의 변화.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네트워크 저널리즘 시대의 소셜 미디어의 활용과 전망' 세미나 발제문.

- 김동민 (2011. 5. 4). 언론의 본질과 기능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철학적 논의. 한국언론정보학회주최, '미디어 융합시대, 언론의 본질을 다시 생각한다' 세미나 발제문.

- 김사승 (2011. 6. 30). 소셜 뉴스의 확산과 저널리즘 지형 변화.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네트워크 저널리즘 시대의 소셜 미디어의 활용과 전망' 세미나 발제문.

- 김은미 · 김예란 · 임영호 · 김경모 (2011). 블로그 뉴스의 속성과 이용자의 반응. 『방송통신연구』, 통권 74호, 9~41.

- 김지훈 (2011. 5. 27). 디지털시대의 방송의 공익성 제고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주최, '정보화 사회와 공법적 쟁점' 공동학술대회 발제문.

- 김춘식 (2011. 5. 3). 일본의 '東北部 大震災'에 관한 신문(한국 · 일본 · 미국)과 텔레비전(한국 · 일본) 뉴스 내용분석. 한국언론진흥재단주최, '글로벌 시각에서 본 한국 언론의 재난 보도' 토론회 발제문.

- 김학수 외 4인 (2011). 『과학과 커뮤니케이션』, 1판.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 김현철 (2011. 5. 13). 존재는 미디어다 :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디어관계론. 한국언론학회주최, '2011년도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김혜미 · 이준웅 (2011). 인터넷 뉴스와 댓글의 뉴스 프레임 융합 효과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2호, 32~55.

• 문재완 (2011). 허위사실의 표현과 표현의 자유 – 한국과 미국의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39집 3호, 113~142.

• 박경신 (2011. 5. 28). 리버럴리즘의 정의론 – 드워킨을 중심으로. 한국법철학회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주최, '2011년 한국법철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제문.

• 박홍원 (2011). 편집권 독립과 언론의 자유. 『언론과학연구』, 11권 1호, 123~156.

• 변상규 (2011. 5. 19). 종편채널, 미디어렙 도입 등 광고시장 경쟁심화와 지역방송 대응 방안. 한국방송학회주최, '민영 미디어렙 및 종편채널 도입과 지역방송의 대응방안' 세미나 발제문.

• 설원태 (2011. 3. 26). 정상회담과 언론 : 한미 언론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서 본 언론의 국적. 한국언론학회 소속 국제커뮤니케이션 분과 주최, '디지털 혁명과 글로벌 공론장 : 신화와 현실' 세미나 발제문.

• 손승우 (2011. 5. 20). 페이스북과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쟁점. 한국소비자법학회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 혁신경쟁과 규제법센터주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와 이용자보호' 공동학술세미나 발제문.

• 송경재 (2011. 4. 15). 모바일 플랫폼과 포털의 협력.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주최, '인터넷의 개방성 : 현황과 과제' 워크숍 발제문.

• 안종묵 (2011). 인터넷 포털미디어의 저널리즘 특성에 관한 고찰. 『언론과학연구』, 11권 1호, 187~218.

• 양재규 (2011. 4). 법을 알고 기사쓰기 61 –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라면 미리 양해를 구해야. 『신문과 방송』, 통권 484호, 90~93.

• 양재규 (2011. 5). 법을 알고 기사쓰기 62 – '비실명 요약보도' 로 공익적 목적 달성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야. 『신문과 방송』, 통권 485호, 107~111.

• 양재규 (2011. 6). 법을 알고 기사쓰기 63 – 보도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 사용하고 출처를 꼭 밝혀야. 『신문과 방송』, 통권 486호, 98~101.

• 윤석민 (2011). 『한국사회 소통의 위기와 미디어』, 1판. 서울: 나남출판사.

• 윤성옥 (2011. 5. 26). 방송통신융합시대 방송심의제도 평가와 과제. 한양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주최, '우리나라 방송통신심의제도의 현실과 쟁점' 학술 심포지움 발제문.

• 이미나 (2011. 5. 13). 신문 기사 제공 방식의 차이에 따른 기사 회상과 뉴스 가치 인식의 차이 : 종이신문과 스마트폰 신문의 비교. 한국언론학회주최, '2011년도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이민영 (2011. 4. 15). 인터넷 이용자의 담론 형성과 미네르바 사건.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주최, '인터넷의 개방성 : 현황과 과제' 워크숍 발제문.

• 이승선 (2011).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방송통신연구』, 통권 74호, 64~98.

• 이승선 (2011. 6. 9). 미디어의 진화와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방안. 한국언론법학회주최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방송광고제도의 현황과 전망' 학술대회 발제문.

• 이완수 (2011. 5. 4). 매체융합시대 저널리즘의 변동성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주최, '미디어 융합시대, 언론의 본질을 다시 생각한다' 세미나 발제문.

• 이원재 · 이봉현 (2011. 5. 4). 미디어 기업의 사회책임 경영. 한국언론정보학회주최, '미디어 융합시대, 언론의 본질을 다시 생각한다' 세미나 발제문.

• 이재진 · 이승선 (2011. 3. 24). 언론법제 연구의 최근 동향 분석 : 2009-2010. 한국언론법학회주최, '언론법의 최근 동향의 분석' 학술세미나 발제문.

• 이종관 (2011. 6. 9). 미디어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방안. 한국언론법학회주최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방송광고제도의 현황과 전망' 학술대회 발제문.

• 이종원 (2011. 5. 3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방송 관련 법제의 문제점. SSK시장경제선진화사업단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주최, '방송통신산업의 융복합화에 따른 미디어 법제의 동향과 쟁점' 공동학술세미나 발제문.

• 이진로 (2011. 5. 13). 종합편성채널 시대와 지역신문. 한국언론학회주최, '2011년도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이현주 (2011. 3. 26). 뉴미디어 혁명과 뉴스 이용 양상의 변화 : 국가 간 뉴스 소비행태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회 소속 국제커뮤니케이션 분과주최, '디지털 혁명과 글로벌 공론장 : 신화와 현실' 세미나 발제문.

• 장병희 (2011.6. 30). 네트워크 저널리즘의 발전과 소셜 미디어의 전망.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네트워크 저널리즘 시대의 소셜 미디어의 활용과 전망' 세미나 발제문.

• 정성욱 (2011. 5. 4). 공론장의 새로운 구조변동과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한국언론정보학회주최, '미디어 융합시대, 언론의 본질을 다시 생각한다' 세미나 발제문.

• 정필운 (2011. 6. 9). 스마트 시대의 미디어 광고제도의 전망. 한국언론법학회주최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방송광고제도의 현황과 전망' 학술대회 발제문.

• 조소영 (2011. 5. 27). 표현의 자유의 현실과 법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주최, '정보화 사회와 공법적 쟁점' 공동학술대회 발제문.

• 조연하 (2011. 5. 26). 통신심의의 실제 : 심의규정 위반 판단요소를 중심으로. 한양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주최, '우리나라 방송통신 심의제도의 현실과 쟁점' 학술 심포지움 발제문.

• 주은수 (2011. 5. 13). 한국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 방안 : 실전마케팅 사례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주최, '2011년도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주정민 (2011. 5. 19). 종편채널과 지역방송의 비대칭 규제 현황 및 규제체계 개선방안. 한국방송학회주최, '민영 미디어렙 및 종편채널 도입과 지역방송의 대응방안' 세미나 발제문.

• 지성우 (2011. 4. 7). 재난방송의 올바른 역할과 책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주최, '재난관련방송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 최선정 (2011. 4. 22). 미네르바 신드롬과 탈 정보화된 정보사회.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2011년도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홍성구 (2011). '아레오파지티카'에 나타난 공화주의와 언론자유. 『한국언론학보』, 55권 2호, 178~201.

• 홍종배 (2011. 5. 13). 스마트 미디어와 SNS, 커뮤니케이션 혁명의 도구인가? : 비즈니스적 진단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주최, '2011년도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황성기 (2011. 3. 24). 2010년 언론관련 판례 동향. 한국언론법학회주최, '언론법의 최근 동향의 분석' 학술세미나 발제문.

• 황유선 (2011. 5. 13). SNS 매개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참여. 한국언론학회주최, '2011년도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안내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02) 397 – 3114 **언론분쟁상담** 02) 397 – 3000, 3010, 3100, 3110 **팩스** 02) 397 – 3089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전화** 051) 759 – 7083~4	**팩스** 051) 759 – 7093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053) 763 – 0020~1	**팩스** 053) 763 – 0242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전화** 062) 676 – 0360~1	**팩스** 062) 676 – 0362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042) 525 – 0778~9	**팩스** 042) 525 – 0768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8층 **전화** 031) 211 – 9022, 9027	**팩스** 031) 211 – 0223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전화** 033) 255 – 2878~9	**팩스** 033) 255 – 2872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변호사빌딩 404호 **전화** 043) 286 – 8081, 8083	**팩스** 043) 286 – 8084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전화** 063) 288 – 0010, 0981	**팩스** 063) 288 – 0980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전화** 055) 263 – 1780, 1787	**팩스** 055) 263 – 1769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전화** 064) 722 – 3328, 3352	**팩스** 064) 726 – 3201